
2020년 친환경농업과 사업시행 지침



전라남도
Jeolla Namdo

목 차

I. 2020년 친환경농업 추진방향	1
1. 2019년 주요성과	2
2. 2020년 중점 추진과제	4
3. 2020년 달라지는 지침 내용	6
II. 분야별 사업추진 지침	12

친환경정책

①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6
②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지원	20
③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용자 지원계획	24
④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	46
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시범)	71

친환경관리

⑥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96
⑦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104
⑧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	110
⑨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	115

10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25
11	유기질비료 지원	139
12	토양개량제 지원	165
13	친환경퇴비 생산시설현대화 사업	184
14	친환경 농자재(유기농업자재) 지원	201

유기농육성

15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	231
16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244
17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259
18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272
19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278
20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318

III. 시군별 사업내역 - - - - - 345

I . 2020 친환경농업 추진방향

2020년 친환경농업 추진방향

목표 및 중점방향

(목 표) 『유기농을 선도하는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실현

(중점방향) 친환경농산물 인증품목 다양화 및 유기농 인증 확대

시책 추진 방향

- ① 유기농 중심의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② 과수·채소 등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 ③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추진
- ④ 체험·관광 연계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융복합산업 확산
- 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유통기반 확충
- ⑥ 친환경농가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 ⑦ 안정적 판로확보 및 소비자 신뢰구축



□ (인증내실화) 유기농 중심의 인증품목 다양화 추진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부동의 전국 1위 유지 및 친환경농업 1번지 위상 공고
 - 전국 점유율 57%(전년 55% 대비 2% 상승) 및 유기농면적 53% 달성

◇ 2019년도 친환경 인증실적 : 46천ha(전년대비 3천ha 증) - 전국 57%

• 유기농 : 15천ha(전년대비 4천ha 증), 품목다양화 : 14천ha(전년대비 2천ha 증)

-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과수·채소 중심의 인증품목 다양화 추진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인증단계, 품목별 차등지원) : 43천ha, 380억원

- 친환경 과수·채소 면적 확대를 위한 품목별 전문단지·비가림 시설 지원

-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 6개소, 30억원, 비가림시설 : 3.2ha, 7억원

□ (블루농수산) 체험·관광과 연계한 유기농업 확산

-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농촌관광과 연계한 유기농업 복합타운 조성

-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운 조성('19~'22) : 1개소(구례), 180억원

- 마을단위 유기농 성공모델 구축을 위한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

- 유기농 생태마을의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가공 체험시설 지원(2개소, 10억원)

□ (소득보전)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마련

- 친환경농자재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관리 및 개선·보호

- 토양개량제 무상공급 : 101천톤, 139억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39억원

- 유기질비료(퇴비 등) : 502천톤, 256억원, 친환경농자재 : 8,508ha, 56억원

- 친환경 실천농가 직불금 및 육성기금 지원으로 경영 안정 도모

- 친환경농업 직불금 : 20천ha 120억원, 유가무농약 지속 직불금 : 18천ha 43억원

-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용자 : 70억원(용자한도 농가 1억원, 법인 5억원)

-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위해 농자재 생산시설 및 무제초제 농법지원

-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 3개소(6억원), 왕우렁이 공급 : 65천ha, 78억원

- 친환경인증을 획득한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 21천건, 137억원
- 자연재해 대비 유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 6,274ha, 6.5억원

□ (기반조성) 친환경농업 생산·유통 기반확충

- 규모화된 단지를 친환경농업 지구로 조성하여 생산·유통시설 등 공동생산 기반 구축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구조성) 사업 : 7개소, 67억원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 2개소, 10억원
- 안정적인 친환경 벼 생산을 위한 포트육묘 이양기 지원 : 20대, 14억원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사업 추진을 통한 친환경농업 공익적 기능 제고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사업 : 1개소, 7.5억원('19. ~ '23.)

□ (경쟁력 강화) 안정적 판로확보 및 홍보강화

- 광역단위 친환경 생산·유통 산지조직 육성사업 추진 : '18 ~ '19년(2년)
 - 광역단위 친환경 생산·유통 산지조직 육성사업 : 10억원
 - 지역농협 생산자 조직(공선·공동출하회) 육성 : 5개 시군 18개 조직
- 안정적인 판로구축을 위한 친환경 물류센터 운영 및 친환경농산물 홍보
 -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활성화 지원 : 1개소, 50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홍보 및 유기농 무역박람회 참가(28업체, 84백만원)
- 소비수요에 부응하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의식교육·검증체계 구축
 - 친환경농업 실천교육(친환경교육관) 및 친환경인증농가 의무교육(12천명)
 - 친환경명예감시원(140명) 운영,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2천건, 560백만원)

《'19년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실적》

- '19년 친환경비료평가 '최우수상' 2년 연속 수상 : 국고 인센티브 7억원 확보
- '19년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대상 수상(여성신문사) : 친환경 쌀 부문
- '20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6개소 공모선정 : 6개소, 49억원
- '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선정 : 4,127명(5시군), 19.8억원
- '20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선정 : 4개소, 26억원('20 ~ '24)

2 2020년 중점 추진계획

블루농수산과 연계한 체험·관광 중심의 유기농업 확산과 소비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인증품목 다양화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I 추진 방향

- 친환경농업 구조를 무농약에서 유기농업 중심으로 ‘틀’ 을 전환하고, 과수채소 중심의 품목다양화 확대로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 제4차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 도입에 따른 농가경영 안정·소득증대, 소비자 신뢰확보, 농업환경 보전을 중점 추진
- 블루농수산과 연계한 체험·관광 중심의 유기농업 융복합산업 육성 및 소비선순환 구축 등 판로확대를 위한 신규 소비처 확대·발굴

II 인증 목표

- '20년 인증목표 : 45,700ha * 도 경지면적 291천ha의 15.7%
- 인증단계 : 유기농 15,500ha, 무농약 30,200ha
 - ※ (유기농면적) '17년) 7,936ha → '18년) 11,458 → '19년) 14,500 → '20년) 15,500
- 인증품목 : 과수 등 벼 이외 14,600ha(32%), 벼 31,100ha(68%)
 - ※ (벼 이외 품목점유율) '17년) 26% → '18년) 27% → '19년) 29% → '20년) 32%

2019년 추진실적

- 인증면적 : 45,500ha(전국 인증면적 81,000ha의 57%)
 - 유기농 14,500ha(인증면적의 32%), 무농약 31,000ha(인증면적의 68%)
- 품 목 별 : 벼 31,900ha(71%), 과수·채소 등 13,600ha(29%)

Ⅲ | **중점 추진과제**

유기농 중심의 융복합 산업화 및 품목다양화 추진

- 교육체험, 농촌관광과 연계한 유기농업 복합타운 조성 : 1개소, 180억원
- 유기농중심 마을관광 육성을 위한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 2개소, 10억원
- 유기농 확대·품목 다양화를 위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43천ha, 350억원
- 과수채소인증 확대를 위한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 4개소, 20억원
- 관행 과수농가의 친환경전환을 위한 비가림하우스 지원 : 2.5ha, 5.6억원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마련 및 생산·유통시설 확충

-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한 친환경비료 지원 : 631천톤, 458억원
- 무제초제 농법실현을 위한 논 제초 왕우렁이 공급 : 65천ha, 78억원
- 농업생태환경 보전·복원을 위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 5개소, 3.5억원
- 친환경단지의 공동생산관리를 위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 6개소, 49억원
- 친환경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지원 : 2개소, 10억원

친환경농가 소득보전과 경영안정

- 친환경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 22천ha, 148억원
- 친환경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원 : 18천ha, 43억원
-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 18천건, 117억원
- 유기농가의 재해부담 경감을 위해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 6,500ha, 6.5억원

판로확대를 위한 신규수요처 발굴 및 소비자 신뢰구축

- 판로확대를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시범) : 4,127명, 19.8억원
- 잔류농약 검사로 소비수요에 부응한 안전농산물 생산 : 2천건, 6억원
- 친환경농산물 우수성 홍보를 위한 유기농 무역박람회 참가 : 28단체, 0.8억원
- 친환경명예감시원 제도운영(140명) 및 친환경 인증사업자 의무교육(15천명)

3

2020년 달라지는 지침 내용



사업명	기존 지침	지침 개정	개정 사유
유기농가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	5. 사업계획 • 사업량 : 6,274ha	5. 사업계획 • 사업량 : 6,500ha	도 유기인증 면적 중 보험가입 가능품목 기준 (‘19년 62품목 + ‘20년 5)
	6. 세부 운영방안 • 품목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기에 신청 • 가입신청 시 농가 자부담 을 도와 시군에서 지원 - 사업비 지원은 사업완료 시점에 품목별로 차등 지원하고 정산하여야 함.	6. 세부 운영방안 • 품목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기에 사업신청 • 사업신청 시 농가 자부담 을 도와 시군에서 지원 - 사업비 지원내역은 매분 기 말에 품목별로 분류 하고 보고하여야 함.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문구조정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 우선지원 8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안내 - ‘19년도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 인증비 우선지원 - ‘20년도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미납부 농가 또는 단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 8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안내 <삭제>	친환경농산물 의무 자조금 납부 확대

사업명	기존 지침	지침 개정	개정 사유
유기농약 유무지속 지속불	<p>나.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무농약 벼 인증 <u>6년차</u> 이후인 농지 <p>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 6회차 이상 및 무농약 4회차 이상 인증 농가에 정부지원 친환경 농업직불금 50%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최초 무농약 벼 인증 받은 후 유기로 인증상향 없이 <u>6년차</u> 이후인 농지는 지원 제외 <p>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 기간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무농약 벼 <u>6년차</u> 이후 지원 제외 	<p>나.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무농약 벼 인증 <u>5년차</u> 이후인 농지 <p>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 6회차 이상 및 무농약 4회차 이상 인증 농가에 정부지원 친환경 농업직불금 50%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최초 무농약 벼 인증 받은 후 유기로 인증상향 <u>없는</u> 농가는 <u>4년차 1회만 지원</u> <p>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 기간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무농약 벼는 <u>4년차 1회만 지급</u> 	<p>인증품목 다양화를 위해 무농약 벼 농지는 4년차 1회만 지원</p>
유기 유비지 질료원	<p>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정액지원) * <u>품질등급이 좋은 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해 우대지원하고,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과 등급이 낮은 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한 우대 지원은 금지</u> 	<p>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정액지원) <u><삭제></u> 	<p>지역단위 자원 순환 촉진, 비료업체간 과잉 경쟁 억제 등을 위해 해당 시·군 또는 도 단위 권역 내 비료 생산 업체에 대한 우대지원 허용</p>
토개 토개지 양제한	<p>3.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산 및 석회질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검정결과 논에도 석회(폐화석 포함)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 가능함 <p><u><신설></u></p>	<p>3.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산 및 석회질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검정결과 논에도 석회(폐화석 포함)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 가능함 ** <u>예산여건을 감안하여 석회포화도 60%미만 간척 농지에 '부산석고'를 지원할 수 있음(시범사업에 한함)</u> 	<p>간척지 토양개량 효과에 대한 실증을 위하여 시범사업 추진</p> <p>※ 부산석고가 토양의 물리성 및 화학성을 개량(투수성 개선으로 제염 촉진)하여 간척지의 농경지로서의 기능 향상</p>

사업명	기존 지침	지침 개정	개정 사유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4. 사업추진 라. 사업비 지원 ○ 인증단계별 지원한도	4. 사업추진 라. 사업비 지원 ○ 인증단계별 지원한도 <전환기 삭제>	인증 단계 구분이 불명확하여 행정력이 소모됨
	○ 지원 한도(ha) - 과 수 : 유기 1,600천원 - 채 소 : 유기 1,400천원 - 벼 등 : 유기 1,200천원 무농약 700천원	○ 지원 한도(ha) - 과 수 : 유기 1,800천원 - 채 소 : 유기 1,600천원 - 벼 등 : 유기 1,200천원 무농약 500천원	인증품목 다양화를 위해 과수, 채소 차등지원 강화
	○ 농자재 구매시 준수사항 - 농자재는 농법에 따라 단지 참여농가 의견을 수렴하여 선택하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차원에서 도내 생산업체 제품 <u>가급적 우선 사용</u>	○ 농자재 구매시 준수사항 - 농자재는 농법에 따라 단지 참여농가 의견을 수렴하여 선택하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차원에서 도내 생산업체 제품 <u>50% 이상 사용</u>	도내산 우수 친환경 농자재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산비 절감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시설, 장비 등 지원 - 생산시설: 육묘장... - 가공시설: 세척기... - 유통시설: 저온저장고...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교육·체험 시설, 장비 등 지원 - 생산시설: 육묘장... - 가공시설: 세척기... - 유통시설: 저온저장고... - 교육·체험 시설: 농업인 교육장, 소비자 체험장 등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유통 시 농업인 교육, 소비자·학생 체험 운영 등 실적이 반영되므로 교육·체험 시설 지원 신설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나. 지원 대상(조건) ○ 신청당시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된 마을 중 최근 5년 이내에 유기농 생태마을 지원내역이 없는 마을	나. 지원 대상(조건) ○ 신청당시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된 마을 <u>또는</u> 최근 5년 이내에 유기농 생태마을 지원내역이 없는 마을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
	바. 대상마을 추천 ○ 시군별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된 마을 중 적합한 마을 선정 추천	바. 대상마을 추천 ○ 지정 당시 마을 명칭 또는 주민이 참여·동의한 농업회사 법인	추천 대상을 명확히 함

사업명	기존 지침	지침 개정	개정 사유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 하우스 시설 지원	<u>라. 지원조건</u> ○ 지원기준 - 도비 30%, 시군비 40% 자부담 30%	<u>라. 지원조건</u> ○ 지원기준 - <u>도비 20%, 시군비 50%</u> 자부담 30%	유사사업간 형평성을 맞춰(영세농가 소형 하우스 설치사업) 재원비율 변경
	<u>마.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u> 1)사업비 집행 및 정산 2) 사후관리	<u>마.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u> 1) 사업비 집행 및 정산 2) <u>친환경인증 유지기간</u> 3) 사후관리	기존에 인증유지 관련 내용이 상세히 기제 되어 있지 않았음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지원	○ 사업명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육묘장 조성 지원	○ 사업명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지원	사업명을 간략화 하고 친환경육묘장 조성은 사업내용에 포함 추진
	○ 재원비율 - 도비 15% - 시군비 45% - 자담 40%	○ 재원비율 - 도비 21% - 시군비 49% - 자담 30%	사업비 재원비율을 조정하여 자부담 완화

□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업 신청 공통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사항,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 동의 사항, 개인정보의 제공동의 사항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붙임 서식을 사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 동의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 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II. 분야별 사업지침

《친환경 정책분야》



1. 목 적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유기농가의 자부담분 지원이라는 경제적인 지원을 통하여 관행농업 또는 무농약 인증 농가의 유기농 상향인증 촉진과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 확대와 유기농업 정착 유도

2. 지원범위

- 유기농 인증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자부담분(20%)을 추가 지원(보험료 100% 지원)

3. 추진방침

-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무농약 농산물인증 단계에 있는 농가의 유기농 상향 인증 유도와 유기농산물 인증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작물재해보험료'의 자부담 지원
- 가입대상 및 품목은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지침에 준하고, 재해피해 발생시 '재해보험 기준약관'을 적용,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

4.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전라남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10조(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
- 전라남도친환경농업육성기금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5. 사업계획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도비(30%)	시군비(70%)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6,500ha	650	195	455

6. 세부 운영방안

가. 사업개요

- 가입품목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67종) 중 유기인증 품목
- 지원대상 : 유기 인증을 받은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지
- 사업비 : 650백만원(도비 195, 시군비 455)
- 보상기준 : 농작물재해보험 보상기준에 따름

나. 사업추진 방법

- 품목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기에 사업신청 * 신청 시 유기인증 증빙서류 첨부
- 사업신청 시 농가 자부담을 도와 시군에서 지원
 - 사업비 지원내역은 매분기 말에 품목별로 분류하고 보고하여야 함
 - 최종 교부결정에 따른 부족액은 시군비로 확보·지원
 - 시군에서는 품목별 유기인증 실적을 감안하여 자체 시행지침을 마련, 예산범위 내 품목별로 지원 단가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사업정산은 '농작물재해보험' 정산 시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지원한 내역 별도 정산
 - ※ 각 시군은 지역·단위농협과 연계하여 업무효율성 제고토록 추진

7. 사업비 집행 및 보고

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정산)에 만전

나.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상황 보고서식

- 가입실적 보고
 - 매분기 익월 5일 / * 자부담에 대한 지원내역 포함작성

품목	농가수	가입면적 (ha)	사업비 (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기타	

- 지원결과 및 정산보고 : 익년도 1. 15일 까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도비 집행 잔액
	사업량		예산액(원)				사업량		집행액(원)				
	농가	면적	계	도비	시군비	기타	농가	면적	계	도비	시군비	기타	
	호	ha					호	ha					

[별첨 1]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 성명(단체명) : _____ / 농가수 : _____
- 대표자 : _____ (생년월일 _____), 연락처 : _____
- 주 소 : _____

운영상황

- 보험가입 품목 : _____
- 유기 인증면적 : _____
- 유기 인증번호 : _____
- 연간 예상생산량 : _____ kg/10a
- 계약 재배량 : _____

붙 임 1. 유기인증 증빙서류 1부.

2. 소속농가별 가입 명부(단체) 1부. 끝.

※ 인증 증빙서류는 농가별 인증면적이 명시되어야 함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자부담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 . .

신청자 성명 (인)

○○시장·군수 귀하

2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지원

1. 목 적

-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 수도권·대도시 등 국내홍보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친환경농산물 이미지 제고
- 도시 소비자에 대한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친환경 실천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신뢰성 확보로 소비자 구매력 향상

2. 추진방침

- 친환경농업 실천 생산자 단체, 유통업체 등에 수도권 등 전시·홍보 행사 지원
- 전시·홍보 부스 운영 시 부스비용(부스 임차료, 물품 대여비 등)
- 도내 생산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소비자 홍보로 지역농산물 판매 촉진
-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부스 운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

3. 추진기간 : 연중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 등)

4. 사업계획

구 분	사업량	개소당 (백만원)	사 업 비(백만원)		
			계	도비(50%)	시군비(50%)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지원	28부스	3	84	42	42

5.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자 시행 : 친환경농업 추진 농업인 단체 및 유통업체

-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친환경농업인연합회, 영농법인, 작목반 등)
- 시군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가공·유통하는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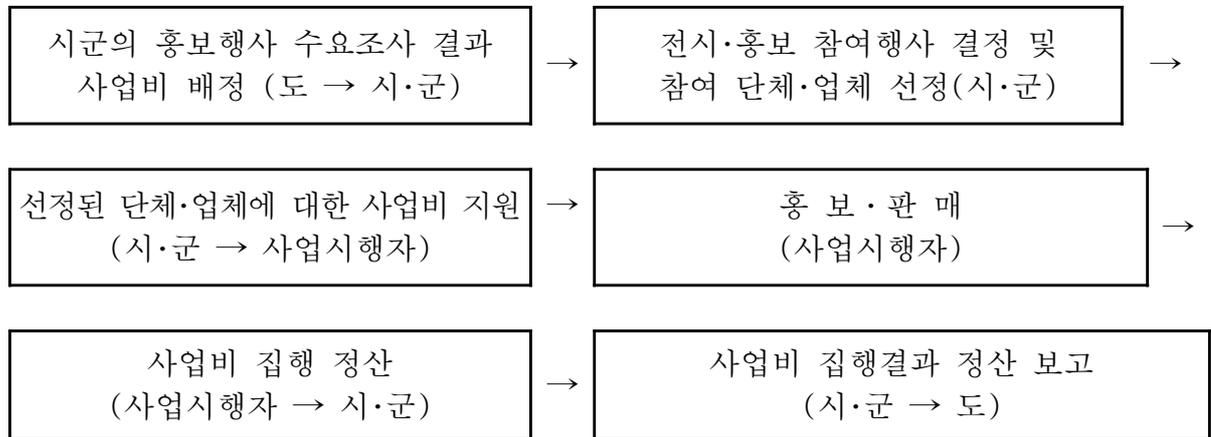
나. 사업자 선정

- 시장·군수가 친환경농업 실천 생산자 단체(시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작목반, 영농법인, 영농회사 등), 시군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가공·유통하는 우수 업체

다. 지원 내용

- 부스 1개소당 보조금 지원 : 3,000천원(도비 50%, 시군비 50%)
-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관 부스 임차료, 운송비
 - 각종 친환경농산물 홍보·전시회 부스 임차료·비품 대여비
 - 전시·홍보관 운영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운반비
- 전시·홍보 행사 시 각종 홍보물 제작비용
 - 친환경농산물 홍보를 위한 프랑카드, 홍보 팜플렛 제작
 - * 보조금은 전시·홍보 부스 운영 및 기타 행사추진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 전시·홍보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라. 사업시행 체계



마. 세부 추진사항

- 도에서는 시군의 전시·홍보 행사 참여 수요조사 실시 : 전년도 9월
 - 시군에서는 다음연도 행사 참여 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매년 제출
- 수요조사 결과와 이전에 홍보 부스 운영 실적을 참고하여 시군에 사업비를 배정 및 가내시 : 전년도 11월
- 도에서 전시·홍보행사 안내 및 시군별 행사 참여부스 통보 : 매년 상반기
- 행사 참여 대상 시군은 지역 친환경농산물 생산 등을 참고하여 참가 단체 또는 업체 선정
- 행사 참가 단체 또는 업체에서는 시장·군수로부터 부스임차료 등 전시·홍보 부스 운영비를 지원받아 사업추진

- 사업시행자는 행사가 끝나는 즉시 시장·군수에게 사업비 집행결과를 정산 하여야 함
- 전시·홍보는 판매위주의 행사 추진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농산물이 대도시 소비자 등에게 널리 홍보되어 구매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둠
- 시군에서는 전시·홍보 부스 설치 운영 참가 단체 및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 관리하여 판매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추진
- 전시·홍보부스 운영 시 대도시 소비처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한 소비처는 상시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6. 사업비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가.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시군에서 행사참여 추진 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관련규정 등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소요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집행

나. 사업비 정산

- 사업시행자는 사업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집행 정산하고 시장·군수는 사업비 정산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 제출

7. 행정 사항

- 당해년도 도, 시군 참가 전시·홍보행사 결정 통보 : 3월~4월
-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부스 운영 : 4월~11월
- 다음연도 사업 수요조사(별지 제1호 서식) : 9월 20일까지
- 정산 보고(별제 제2호 서식) : 12월 31일까지(행사종료 후 30일 이내)
- 전시·홍보 운영실적 및 소비처 관리실적(별지 제3호 서식) : 12월 31일까지 (행사종료 후 30일 이내)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홍보·전시 운영 수요조사

(단위 : 회, 개소)

시 군	계		수도권 행사		기타지역 행사		대상 품목
	참여횟수	참여부스	참여횟수	참여부스	참여횟수	참여부스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 보고

(단위 : 원)

사업 참가 단체	참여 행사명	사업 예산 및 집행 내역						도비 집행 잔액 (A-B)
		예산액			집행액			
		계	도비(A)	시군비	계	도비(B)	시군비	

[별지 제3호 서식]

전시·홍보 실적 및 소비처 관리

(단위 : 회, 천원)

전시·홍보관 운영				친환경농산물 판매실적		대량 소비처 발굴		
수도권		기타지역		수도권행사 판매액 (천원)	기타지역 판매액 (천원)	단체명	공급 품목	월판매액 (천원)
운영 횟수	부스 (개소)	운영 횟수	부스 (개소)					



친환경농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용자 지원

1.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 대한 용자사업 추진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과정에서 위험요인 해소, 저리자금 지원 등 경제적 어려움 해소
- 친환경 농산물의 가공, 유통, 수출을 위한 유통·시설자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고부가가치 창출
- 친환경 농업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친환경농자재의 개발과 생산시설자금의 지원으로 농자재의 안정적 공급 및 생산기반 확충
- 대출취급기관이 신용 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 대출 후 회수 까지 책임을 지는 체제로 운영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

2. 사업개요

가. 용자금액 : 70억원

나. 사업기간 : 2020. 1. 1. ~ 12. 31.(1년)

다. 용자기관 :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시군지부)

라. 용자 신청자격

- 도내 1년 이상 거주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 관련 법인
 - ※ 법인 : 농업인 5명 이상이 결성한 생산자단체(법인체), 친환경농산물의 가공·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관련업체 및 단체 등
-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입점자 및 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매입하는 유통업체

마. 용자신청 제외자

- 용자신청 자격자 중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불부합자

(본인이 금융기관 확인 - 서식 1)

- 신용불량, 연체, 담보부족 등

※ 대출담보 부족으로 인한 용자사업 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 담보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바. 대상사업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과 관련된 사업

사. 지원자금

- 시설자금 : 친환경농산물생산·가공·유통·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신규시설 설치 및 기존시설 확충 사업(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포함) 등

- 운영자금 : 시설사업 외에 직접 친환경농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 (판매장 임차료, 포장디자인개발, 원료구입 및 구매자금, 친환경 농자재 생산자금 등)

※ 운영자금은 생산자단체와 농업법인체를 우선 지원

아. 대출이율 : 연리 1%(연체이율 10%)

자. 용자한도(총 사업비중 자부담 10%이상 확보)

- 개 인 : 1억원 이내
-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 (업체당) : 5억원 이내
-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 5억원 이내
-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가맹점 입점자 임차료(개소당) : 10억원 이내
- 도와 협약 수도권 친환경농산물 물류기지 건립 및 임대 : 10억원 이상

차. 지원조건

- 시설자금 :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단, 소득발생이 늦은 과수 등의 사업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거치 일시상환,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및 가맹점 사업자는 최장 10년 이내로 하되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필요 시 1년까지 상환 유예 가능)

※ 친환경농산물 물류기지 건립 및 임대 사업자는 최장 10년 이내이며,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카. 융자금 지원

○ 시설자금

- 중도금 :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시설자금은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기성 확인서(서식 7)에 의거 금융기관의 규정에 적합한 요건 충족 후 지원
- 완공금 : 시장·군수의 사업완료 확인서(서식 9)에 의거 금융기관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 후 지원

○ 운영자금

- 사업 실시 전에 신청할 경우는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서(서식 8) 등을 확인한 후 금융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사업 완료 후에 신청할 경우는 사업완공확인서(서식 9)를 제출받아 읍·면·동에서 직인날인 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
- ※ 단, 사업 실시 전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사업종료 즉시 정산을 하여야 함

3. 지원 대상자 선정

가. 현지조사

- 시장·군수는 융자 신청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현지조사 실시
 - 현지조사는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서식 4, 4-1, 4-2)에 따라 사업내용과 융자 신청액 등 타당성 검토
 - 현지조사는 반드시 시군 또는 읍면 담당공무원과 금융기관 직원 합동으로 「현지 확인반」을 편성하여 실시
- ※ 융자대상별로 지원조건이 다르므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친환경 관련 생산·가공·유통·수출 등 분야별 관련실과 협조를 받아 육성기금 추진 주무부서에서 총괄하여 사업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선정 평가표(서식4, 4-1, 4-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시군 자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또는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도에 보고(서식 5)
- 지원대상자가 중도포기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담보능력, 사업추진의지 등을 재검토 확정

- 도에서는 시군의 사업신청액과 친환경농업 육성 기여도(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 등)를 감안 사업계획 용자금 범위 내에서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자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배정
 - 단, 사업의 파급효과가 크고 도가 직접 기획한 사업의 경우 우선 배정
 - 용자지원 대상자 확정사항을 본인에게 알려 조기에 사업 착수토록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도 그 사유를 설명하여 민원발생 예방

(1) 우선지원 대상사업

- 친환경농산물 소비 및 판매활성화 사업
- 친환경농산물 수출기반 조성 및 수출증대사업 등

(2) 우선지원 대상자

- 친환경농업육성(인증면적 및 매출규모) 기여도가 높은 자 우선
- 신규신청자는 기 지원자 보다 우선
- 기 지원자 중에서 선정할 경우 지원받은 연도가 오래되거나, 지원받은 금액이 적은 자 우선
 - ※ 용자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포기 시 차년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3) 사업계획서 접수 시 사업포기인정서 징구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사업개시 계획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용자사업을 포기한다는 포기인정서(서식 11)를 포함 제출
- 사업개시 계획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 미착수 시는 사업포기 간주

4. 용자계획 공고(홍보) 및 신청접수

가. 공 고(홍보)

- 장 소 : 시군, 읍면동, 농협 게시판
 - ※ 홍보 : 반상회보, 마을방송, 유선방송,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 활용
- 내 용 : 2019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용자계획
 - 신청기간, 접수처, 신청자격, 지원한도액, 구비서류 등

나.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19. 12. 5. ~ 2020. 1. 14.
-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 ※ 사업자의 사업장이 관외일 경우 가급적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서 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별첨 서식 1.2.3, 읍면동·시군 비치)
 - 읍면 또는 시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전입일 등은 신청서 접수시 담당직원이 확인, 가급적 신청서류 간소화
- 접수 시 유의사항 : 용자 신청자격 해당여부 확인 (주소 등)
 - ※ 사업계획서 접수 시 용자사업 포기인정서 포함 접수
 - ※ 무자격자의 신청서 반려 시 반드시 사유를 설명하여 민원 예방

다. 용자신청결과 조치

- 읍면동 : 신청자격 여부 등을 검토 후, 총괄집계표와 신청서를 시군에 2020. 1. 14.까지 제출
- 시·군 :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서 취합,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신용도 조회) 검토 및 현지확인 후 별첨 신청내역(서식 5)을 도에 2019. 1. 20.까지 제출

5. 사후관리

가. 사업계획의 변경

- 지원대상자 확정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를 경유·검토 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변경
 - ※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용자금 지급불가

나. 지원대상자의 지위 승계

- 지원대상자의 사망 사유로 지위를 승계(부부, 부자 등)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사실 확인 후 도지사 승인

다. 용자금 회수 조치

- 용자금 상환완료 전 사업자가 용자사업 목적을 포기하거나 他 시도로 진출한 경우
- 용자금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사업추진 기관별 업무담당】

기 관 별	내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상황 총괄 지도·감독 ○ 도 시책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시군 사업비 배정 ○ 시군별 소요자금 배정 및 금융기관에 용자금 대여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지원 대상자 추천 및 도에 신청 ○ 사업자별 사업추진 지도 및 사업장 관리 ○ 개인별 관리카드 비치·관리 및 사후관리 ○ 자금배정 신청 및 용자금 집행현황 보고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지원 신청서 접수 ○ 용자금 대출신청용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서 및 사업완료확인서 발급
용자취급 금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관리 및 용자 실행 ○ 용자금 대출현황 보고 및 용자 원리금 상환

6. 용자사업 업무추진 체계

항 목	시 한	내 용
① 사업신청서 접수	전년도 12. 5. ~ 1. 14.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bottom: 5px;">사업희망자(단체) → 읍면동·시군</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의 적정성 확인 ○ 용자신청 자격 해당여부 확인 ※ 무자격자 신청 시 사유 설명 반려
② 현지조사 및 담보능력 등 확인	1. 14. ~ 1. 20.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bottom: 5px;">시군단위 : 행정+지도+농협</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표에 의한 현지실사 평가(서식4, 4-1, 4-2) ○ 신용도 및 담보능력 확인
③ 용자사업 신청상황 집계보고	1. 20.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bottom: 5px;">시군 → 도</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분야·자금종류별 등 집계보고(서식5) - 용자사업 우선순위(서식 5-1), 용자사업 신청서 사본(서식 1) 첨부 ※ ②항의 조사결과 부적격자 제외
④ 사업자별 용자금 한도액통보	2월 말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bottom: 5px;">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 시군·농협</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금액·친환경농업기여도 등 감안 용자한도액 통보
⑥ 자금배정 신청	사업완료 30일전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bottom: 5px;">시군 → 도</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시군지부에서 실행가능한 용자금액을 확인 후 자금배정 신청(서식 6)
⑦ 자금배정	시군신청 후 (매월 1회)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bottom: 5px;">도 → 기금관리부서·시군·농협</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신청에 의거 매월 1회 자금배정 조치
⑧ 용자실행	사업완료 후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bottom: 5px;">용자사업자 → 농협</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완료 후 시장·군수의 사업완료확인서를 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용자신청 및 실행

7. 행정사항

가. 사업장 및 용자 대출 관리

(1) 시·군

-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문제점(사업포기 등) 발생 시 그 결과를 즉시 도에 통보하여 용자 미 실행액 최소화
- 용자 대행기관이 자금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 강화
-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용자사업비 집행 명세(서식 10)를 제출받아 보관

(2) 읍·면·동

- 운영자금 사업자 중 사업완공 전에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 확인서(서식 8)'에 의거 대출을 실행한 경우는 사업 완료 후 사업자로부터 대출자금 사용내역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서 비치
 - 사용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정사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고 사업추진 다음연도부터 10년간 친환경 농업육성기금 사업신청이 불가함을 안내해야 함
 -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단을 작성·관리하여 제제기간 동안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

(3) 용자취급 금융기관

- 용자금을 신속하게 대출하여 친환경농업인의 자금난 해소
- 원칙적으로 12월말까지 사업 완료된 사업자에게 용자실행 * 필요 시 중도대출

나. 사업장 및 용자 대출 관리

- 자금배정 신청 시 매월 20일까지 도에 신청서(서식 6) 제출
- 용자실행률 제고를 위해 매분기 마지막 달까지 추진실적 보고서(서식 13) 제출
- 금융기관은 매월 말 용자실적을 다음달 3일까지 도에 제출

다. 사업비 정산

- 금융기관은 도에 '20. 1. 31.까지 '19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용자사업 정산보고(서식 12)
- 금융기관은 당해 연도 말일까지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남은 잔액을 다음 연도 1월까지 도에 반환 조치

2020 전라남도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용자신청서

①신청자	주 소				전 화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	
	친환경관련 종사기간	년 월		신청 분야	생산(), 가공(), 유통(), 농자재()		
②취급품목				연매출	백만원	전 년 도 매 출 액	백만원
③사업명							
④기용자 연 도	년	기용자 자금명			기용자 기 관	국가 () 도 () 시군 ()	기용자 금 액 백만원
⑤신 청 내 역	용자 금액	백만원		자금 종류	시설 () 운영 ()	상 환 기간	2년거치 일시상환 ()
	자부담	백만원					3년거치 5년 상환 ()
							3년거치 7년 상환 ()
							10년거치 일시상환 ()
⑥첨 부 서 류	사업계획서 1부.				⑦대출희망 금융기관	농협(), 기타()	
⑧신용불량, 연체등록		여, 부 (서명)			확인일자		
<p>전라남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불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불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불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서명·날인)</p> <p>○ ○ 시 장·군 수 귀하</p>							

- ※ 1.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과 대표자 이름, 법인등록번호 기재
 2. ②는 유통업체만 기재하고, ③, ④번란은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
 3. 대출희망 금융기관은 도와 용자취급 및 대여약정 체결은 한 농협 선택
 4. ⑧은 신용불량, 연체자 등록 등 용자금 신청가능여부 파악을 위해 금융기관 담당자 날인

사 업 계 획 서

영농현황

성 명		신청분야	생산 · 가공 · 유통 · 수출	
주 업 종		연간소득액		
농 지 규 모	전 평, 답 평, 과수원 평, 하우스 평, 기타			
친환경농산물배재	○ 재배 : ha(유기농산물 , 무농약 , 저농약)			
친환경농산물품목별취급량		연간매출액		

사업계획

사 업 명				
규 모				
총 사 업 비	만원(자기자본 , 육성기금융자 , 기타차입금)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사 업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			
연 간 소 득 액	만원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소 요 처	금 액	자금구분	금 액
		만원	자 기 자 본	만원
			육 성 기 금	만원
			차 입 금	만원

- ※ 1.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취급량 및 연간매출액은 유통업체만 기재
 2. 농지규모는 상세히 기재

사 업 계 획 서

법인 현황

법 인 명		법 인 대 표 자	
주 사 업 내 용		설 립 일	년 월 일
자 산 규 모		참 여 농 가 수	명
사 업 규 모		연 간 매 출 액	만원

사업계획

사 업 명				
규 모				
총 사 업 비	만원(육성기금 , 자기자본 , 기타)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사 업 내 용				
연 간 매 출 액	만원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소 요 처	금 액	자금구분	금 액
		만원	자기자본	만원
			육성기금	
			차 입 금	

[서식 4]

시군 검토의견서

신청자 주소 및 이름		지원사업명	
-------------	--	-------	--

항 목	검 토 의 견	평 점
사 업 자 의 친 환 경 농 산 물 재 배 및 취 급 실 태		
지 원 대 상 사 업 의 장 래 전 망		
사 업 자 의 신 용 도		
도·시군 시책사업과 관 련 성		
종 합 의 견(약술)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개인 - 3천만원 이상, 단체 - 5천만원 이상)

사업자 주소 및 이름		지원사업명	
-------------	--	-------	--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평점
총 계 (700점)		
① 사업자의 추진의지 (50점)	○ 강함 50 보통 30 미약 20	
②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취급규모 (50점)	○ 대 50 중 30 소 20 ※ 시군 자체기준 설정	
③ 해당 사업관련 전문성(100점)	○ 친환경농산물 취급(영농) 경력 · 5년이상 50 · 3년~5년미만 30 · 3년미만 20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친환경단체 가입 등 확인 ○ 해당 사업관련 자격증 소지 50	
④ 사업성(200점)	○ 사업계획의 충실도 · 상 50 · 중 25 · 하 10 ○ 해당사업의 경기전망 · 상 50 · 중 25 · 하 10 ○ 부지확보등 사업추진 용이성 · 상 50 · 중 25 · 하 10 ○ 원료조달 및 생산·판매능력 · 상 50 · 중 25 · 하 10	
	농업기술센터 소속 직원 의견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평점
⑤ 사업자 신용도 (2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보제공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 100 · 중 50 · 하 30 ○ 사업자금 조달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 70 · 중 50 · 하 30 ○ 부채규모(신청접수일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40 · 1000만원미만 20 · 1000만원이상 10 ○ 해당사업 투자관련 자기자본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이상 40 · 50%이상 20 · 30%이상 10 	
	농협시군지부 의견	
⑥ 도·시군 추진 시책사업 관련성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 50 중 30 하 20 	

이와 같이 조사 평가함.

년 월 일

조사평가자

○○시군 ○○○○과 직급 성명 (인)

[서식 5]

2020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용자사업 신청내역

(단위 : 백만원)

순위	신청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자금종류	분야	비고 (신규, 기존)
	주소	성명			계	용자	자담			

[서식 6]

2020 ()월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자금배정 신청

시군	용자사업자		용자금액 (천원)	자금종류	상환조건
	주소	성명			

- 첨부 : 농협의 용자실행가능액 증빙서류 1부.
(사업자 담보능력 등 용자실행 가능액을 농협시군지부 확인후 제출)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용자사업비 집행 명세

세부시설 (사업) 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기 타
총 계							
○○○○	소 계 ○○○○ ○○○○ ○○○○						

[작성요령]

- 다음 중 해당하는 사업비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사본을 붙임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영농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기존 시설물 구입 시 감정평가서 첨부
 - 연간사업비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직접노무비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외의 자(지원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제외)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때에는 당해증빙에 기재된 금액 중 시장·군수가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자재수불부, 작업일지 등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정산담당 공무원은 위 세부내용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사업현장에서 지원대상자 입회하여 대조·확인
- 세부시설(사업)명은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구분

[서식 12]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정산서

사업 정산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	계 획		용자사업 정산내역				사업포기		비고
			용자금 집행		미집행				
	건수	사업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상환기간별

(단위 : 백만원)

계		2년거치 일시상환		2년거치 5년상환		3년거치 7년상환		10년거치 일시상환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용자미실행 사유

(단위 : 백만원)

계		담보부족, 신용불량		일부미용자 (일부용자후)		사정변경 (대출포기)		기 타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서식 13]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용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분기)

- 2020. 00. 00.현재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용자금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시군명	용자 계획(A)		용자금 배정액		용자 실행(B)		미배정 사업비	용 자 실행률 (A/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사업대상자별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성 명 (법인)	용자 계획	용자금 배정액	사업 내용	추진 상황					미추진 사유
				착공 여부	점점기준일 추진 상황	완공 여부	용자 여부	용 자 실행액	

※ 용자 실행액은 금융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용자를 실행한 금액

문제점 및 앞으로 계획

-
-

4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1. 목 적

-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종합적인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 및 친환경농업 확산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3. 추진기간 : 5개년(1년차, 2020. ~ 2024, 2년차, 2019~ 2023)

4. 사업계획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5개소	350,000	175,000	52,500	122,500
1년차	1개소	150,000	75,000	22,500	52,500
2년차	4개소	200,000	100,000	30,000	70,000

※ (1년차) 함평군, (2년차) 순천시, 담양군, 강진군, 장성군

5. 사업내용

-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토양·용수·생태·경관 등 분야별 “개인” 또는 “공동”의 농업환경보전 활동 시행

분 야	활동취지 및 세부활동분야
토 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지) 양분관리, 농약저감 등 저투입 농법 유도, 비점오염원 관리 등 ▪ (세부분야) 양분관리, 침식방지, 농약 저감 활동 등
용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지) 수질개선 및 비점오염원 관리 등 ▪ (세부분야) 오염된 하천 및 저수지 청소, 사용량 절감 활동 등
대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지) 온실가스 감축 및 축산악취 저감 ▪ (세부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운 최소화, 축산악취 저감 활동 등
경 관/생 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지) 농촌경관 및 정주여건 개선, 어메니티 증진 등 ▪ (세부분야) 농촌경관 개선 활동, 생활환경 개선 활동 등
유 산/생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지) 농경문화 보전, 생물다양성 제고 등 생태계 보전 ▪ (세부분야) 전통 농경문화 보전 및 둠벙 조성 등 생태계 기반 조성 활동

- (연차별 추진내용) 1년차에 주민교육, 환경진단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고, 2~5년차엔 개인 및 공동활동 이행 및 평가 등 실시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교육·컨설팅 ▶ 주민·행정 협의회 구성 ▶ 현장지원센터 설치, 총괄코디 위촉 등 ▶ 농업환경 조사·진단 ▶ 시행계획(2~5년차)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이행 ▶ 추진 실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이행 ▶ 추진 실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이행 ▶ 추진 실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이행 ▶ 추진 실적 평가

6. 사업시행 및 대상

- 사업시행 : 시장 / 군수
- 사업대상 : 사업지내 농업인, 일반주민
 - * (사업대상지) 행정리 또는 법정리 단위 마을, (규모) 20인 이상의 농업인, 주민 등

7. 지원기준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도비 15, 시군비 35)
- 지원기간 : 5년/사업지
- 사업지당/연차별 지원한도(단위 : 백만원)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총사업비
지원액	50	150	150	150	150	650

- 지원자금 용도
 - 주민 활동 이행비 :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중 개인별 활동과 공동활동 이행 시 활동별 단가에 따라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비용
 - * 개인활동 분야 지원 한도 : 200만원/년/개인
 - 사업관리·운영비 : 농업환경진단, 마을주민 대상 교육·컨설팅,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비용
 - * 편성가능 비중 : (1년차) 100%, (2~5년차) 30% 이내
- ※ 지원제외 :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각종 직불제, 친환경 농자재, 지역개발 사업 등 타 사업을 통해 기 지원 받는 활동비, 각종 장비 및 시설 등 자산 취득비, 건물 임차비용 등

참고

분야별 농업환경보전 활동

1] 개인활동 : 3개 분야 / 6개 단위과제 / 17개 세부활동

분야	단위과제	세부활동	지급단가	
토양	1.적정 양분 투입	①비료 살포시 토양검정을 받고 비료사용처방서 준수	2~5만원/10a	
		②완효성 비료 사용하기	2~5만원/10a	
		③퇴비(가축분뇨 유래) 사용기준 준수	2~5만원/10a	
		④액비(가축분뇨 유래) 사용기준 준수	2~5만원/10a	
	2.외부 양분 투입 감축	①농사 후 남은 농업부산물 잘라 논·밭에 환원	4~7만원/10a	
		②휴경기 녹비작물 재배 및 토양환원	6~7만원/10a	
	3.토양침식 및 양분유출 방지	①벼짚 등 농업부산물로 경사진 밭 덮기	6~10만원/10a	
		②경사진 밭 돌레에 빗물이 돌아가는 이랑 만들기	4~6만원/10a	
		③경사진 밭 끝에 초생대 설치하기	4~6만원/10a	
		④경사진 밭 끝에 침사구 설치하기	5~6만원/10a	
	생태	1.농약사용 저감	①천적으로 해충 방지하기	5~6만원/10a
			②제초제 없이 잡초 제거하기	5~7만원/10a
③과수원에서 초생 재배하기			5~7만원/10a	
④태양열로 토양 소독하기			5~7만원/10a	
⑤시설하우스에 방충망 설치하기			5~7만원/10a	
대기	1.온실가스 감축	①경운 최소화	3~5만원/10a	
	2.축산악취 저감	①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미생물 제제 사용하기	50만원/농가	

② 공동활동 : 5개 분야 / 6개 단위과제 / 14개 세부활동

분야	단위과제	세부활동	지급단가
용수	1.농업용수 수질 개선	①오염된 하천·저수지 청소 및 수생식물 식재	1만원/시간/인
	2.양분유출 방지	①논 배수물꼬 설치 및 물관리	1만원/시간/인
생활	1.생활환경 개선 * 농촌비점 발생 최소화	①영농폐기물 공동수거 및 분리배출	1만원/시간/인
		②생활폐기물 공동수거 및 분리배출	1만원/시간/인
생태	1.농업생태계 보호	①생태계에 유해한 생물 제거	1만원/시간/인
		②둠벙(생태 물 웅덩이) 조성 및 관리	1만원/시간/인
		③농경지 이용 멸종위기종 조류 먹이공급	별도협의
경관	1.농촌경관 개선	①공동공간 관리 및 청소	1만원/시간/인
		②공동공간에 꽃과 나무 심기	1만원/시간/인
		③빈집 및 불량시설 경관 정비	1만원/시간/인
유산	1.농업유산 보전	①농경의례 및 공동체문화 전승	1만원/시간/인
		②전통적 농업기술의 유지 및 계승	1만원/시간/인
		③전통적 토지이용 경관의 보전	1만원/시간/인
		④전통적 수리관개시설의 활용 및 보전	1만원/시간/인

8. 사업시행 절차

가. 사업기반 구축 (사업 1년차)

① 현장지원 기반 마련

□ (현장지원조직) 시·군은 해당 사업대상지에서 시행되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신설(1~3월)

* '사업관리·운영비'로 현장지원조직 운영

○ (역할) 시·군에서 추진하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 주민 간 가교역할 등 수행

< 주요 역할 >

○ 사업시행계획 수립 前

- (교육·컨설팅) 농업인·주민 대상으로 사업 추진배경, 해외사례, 사업추진 절차 및 주요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 실시

*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주민역량 강화 차원에서 마을대표 면담, 주민 현장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 추진

- (의견수렴) 지역 맞춤형 사업시행계획 수립, 지역특화활동 발굴 등을 위해 농업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 추진

* 주요 농업환경자원, 개선이 필요한 농업환경, 참여희망 활동프로그램 등

- (농업환경 조사·진단) 시·군과 함께 분야별 농업환경조사 실시

* 시·군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농업환경조사, 필요시 수질·생태계 분야 등의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분석 의뢰

○ 사업시행계획 수립

- 시·군과 함께 사업개요, 농업환경 조사·진단 결과 및 2~5년차 농업환경보전 활동 추진계획 등 사업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계획을 최종 확정 전 사업 참여 농업인·주민 대상 의견조회 및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

○ 사업시행계획 수립 後

- 시·군과 농업인·주민 간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 체결 지원

- 농업인·주민이 사업시행계획을 원활히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공동 활동별 세부 내역 및 실천방법 등 교육·컨설팅

○ (구성) 농업인·주민 스스로 농업환경 보전활동을 실천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 할 수 있는 환경관리 및 컨설팅 분야 전문가 최소 3명 이상*

* 팀장급 1명, 팀원급 2~3명 내외

○ (운영) 시·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민간전문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가능

* 관련 법령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하되 역량 있는 전문단체가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저가 입찰 방식은 지양**하고 **협상에 의한 입찰 방식 등으로 계약 체결**

□ (사업총괄코디) 시·군은 해당 사업 참여 농업인·주민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계획 등을 총괄·조정하는 총괄코디 위촉(3~4월)

○ (역할) 현장지원조직과 함께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사업방향 제시, 마을환경 진단 및 사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검토·조정 등

○ (자격) 환경, 경관, 문화, 사회, 농학(토양·용수) 등 농업환경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해당 지자체 실정에 밝고,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우선 위촉

○ (운영) 시·군이 직접 총괄코디 선정·위촉(임기 6개월~1년), 총괄코디에게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자문료 지급**

*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 총괄코디가 현장방문 및 자료검토 등을 할 경우 시·군이 직접 지급하거나, 시·군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현장지원조직을 통해 지급, (지원한도) 30만원/월

□ (현장지원센터) 시·군은 현장지원조직과 사업총괄코디가 사업대상지에서 업무수행, 소규모 회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설치(1~3월)

○ (설치) 시·군은 현장지원센터를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지 내 공공시설 등에 설치 하되, 공간이 없을 경우 사업대상지 밖 공공시설에 설치

* (설치대상 시설) 마을회관, 농식품부 농촌개발 관련 사업으로 지원된 각종 공공시설, 읍·면사무소 및 시·군청 관련 시설 등

○ (운영) 시·군은 시설관리자와 현장지원센터 입주 가능 여부 협의, 시설관리자가 승인한 경우 사업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 설치·운영

* 공공시설을 이용하므로 임대료 지원 불가, 사무용품(노트북·프린트 등)은 시·군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현장지원조직이 자체 조달

② 주민역량 기반 마련 ※ 사업 2~5년차에도 운영

- (주민역량 강화) 시·군은 주민협의회 구성을 지원하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관련 교육 등을 추진하여 주민 역량 강화
 - 시·군은 현장지원조직 등과 함께 사업 참여 농업인·주민 대상 현장 교육·컨설팅 과정을 기획하고 실행
- (주민협의회) 시·군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농업인·주민 이해증진, 의견수렴 등을 위해 주민협의회 구성(1~3월)
 - (역할)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수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참여토록 유도, 사업에 대한 이견·갈등 조정 등
 - (구성) 의견수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주민으로 구성(회장 1명, 간사 1명 호선으로 선출, 임기 6개월~1년)
- * 지역 여건에 맞도록 품목별, 영농 형태별, 연령별로 고루 구성(10명 내외)
 - (운영) 시·군 담당자, 회장 또는 회원 등이 요청할 경우 개최, 사업 관련 교육, 의견수렴 및 각종 활동 실행방안 등 논의

③ 행정지원 기반 마련 ※ 사업 2~5년차에도 운영

- (행정전담조직) 시·도와 시·군에서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행정전담조직 확보(1월)
 - (역할) 사업대상지 농업인·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 의견수렴, 농업 환경조사,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 이행·점검 및 예산집행 등
 - (구성) 시·도는 농업 관련 부서 내 2명 이상(5급 1명, 6급 이하 1명), 시·군은 농업 관련 부서 내 2명 이상(6급 1명, 7급 이하 1명)
 - (기타) 시·도와 시·군은 업무 연속성을 위해 사업기간 중 행정 전담조직 내 실무담당자의 순환 근무 지양, 각종 인센티브* 부여 검토
- * 승진심사 가점, 성과급 우대, 해외연수기회 제공 등
- (행정협의기구) 시·군에서는 지자체 내 유관부서 등과 협력 및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부단체장을 의장으로 행정협의회 구성(1~3월)
 - (역할) 농업환경 조사·진단,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등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필요 시 관련 사항을 상정·협의
 - (구성) 부단체장,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추진 부서 및 연계·협력이 필요한 유관기관* 관계자, 총괄코디, 현장지원조직 팀장 등

- * 시·군 환경-생활-문화-건축 등 관련 부서, 농업기술센터 내 토양·수질 조사 부서 및 시·군 소재 농어촌공사 지사 관계자 등
- (운영) 사업시행 과정에서 유관기관 등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본 사업부서장이 부단체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개최
- * 협의회 참석대상은 원칙적으로 부서장, 참석이 어려울 경우 팀장 등으로 여건에 맞게 조정 가능, 협의회 간사는 사업추진부서장이 수행

나.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 1년차)

① 교육·컨설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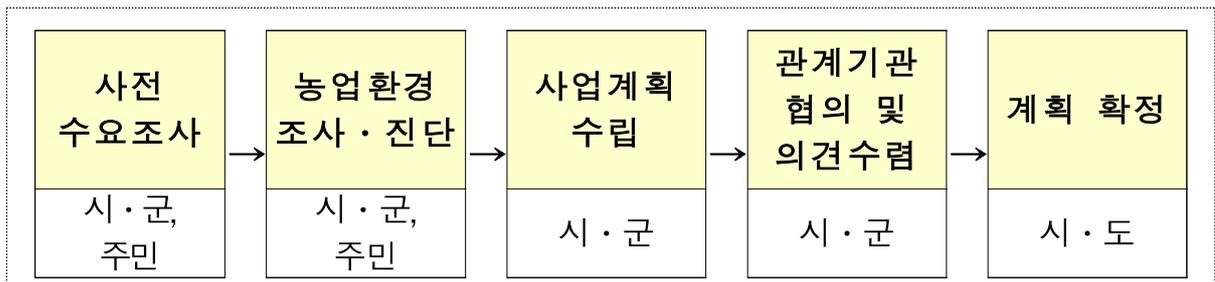
- (사업시행자) 농식품부는 지자체 및 현장지원조직 관계자와 총괄코디를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 농식품부는 시·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사업취지 및 추진방안 등에 대해 교육(1월)
 - *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 형태의 집합 교육 실시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지에서 활동하는 현장지원조직 관계자와 총괄코디를 대상으로 사업개요, 사업추진 시 중점 고려사항 등 교육(2~4월)
 - * 관계 공무원 대상 교육 형태와 유사하게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
- (사업대상자) 시·군은 현장지원조직과 함께 본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 시·군은 현장지원조직과 함께 주민협의회 회장 등과 협의하여 농업인·주민 대상 현장 교육·컨설팅 계획 수립(2~3월)
 - * 교육·컨설팅 일정과 주요내용은 사업대상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마을회관 게시 등)
 - 시·군은 현장지원조직과 함께 사업 참여 농업인·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목적, 의의,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등 교육(2~3월)
 - * 마을회관 등을 이용하여 사업 참여 주민 전체 대상 워크숍 실시
- 시·군은 필요시 현장지원조직, 주민협의회 관계자 등과 선진지* 현장 견학 실시(3~4월)
 - *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19년도 사업대상지 중에서 결정
 - 시·군은 농업인·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시행계획안을 제안*하고 현장지원조직과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컨설팅** 실시(4월~)

- * 농업환경 현황 파악 및 개선사항 발굴, 개별·공동 농업환경보전 활동 방안 등
- ** 컨설팅 효과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적정 규모의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

② 사업시행계획 수립

□ 계획수립 개요

- (기본원칙) 「친환경농어업법」 제1조(목적)에 부합하도록 수립
-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수립절차



○ 주요내용

- 사업시행계획의 목표, 사업시행 지역의 공간적 위치, 면적
- 사업시행지역 현황 진단
 - 사업지 인구, 가구수 등 일반현황, 경지별 면적 및 가구별 영농방식 등 농업현황
- 사업시행지역 농업환경 현황 조사 및 진단
 - 토양, 용수, 생태, 생활환경, 생태계, 농업 관련 문화유산 등 조사
 - 농업환경 현황 진단 및 농촌경관농업유산농업생태 관련 자원 발굴
- 사업시행지역 농업환경보전 방향 및 전략 수립
 - 사업시행계획 핵심 목표 설정 및 콘텐츠 발굴 등
 - 사업시행 대상(경작지, 하천, 생태계, 경관 등) 지정
 - 개인·공동 분야 환경보전 프로그램 운영 및 시행계획 수립
- 사업 추진체계, 운영 계획 및 사업추진실적 평가 등

□ (주민수요 조사) 시·군은 현장지원조직과 함께 농업인·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4~6월)

- 농업인·주민 대상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 필요 농업환경, 농업환경 자원, 개인별 참여 희망 활동 및 지역 특화활동 등 발굴

□ (농업환경 조사) 시·군은 현장지원조직과 함께 사업대상 마을의 분야별 농업
환경 관련 데이터 확보 및 실태 조사(4~6월)

《 농업환경 분야별 주요 조사내용 》

분 야	조사내용
토 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특정 필지(논, 밭, 시설, 과수원) ▪ (조사요소) 농경지의 화학성·물리성 등 최근 5년간의 조사 데이터 -(화학성) pH, EC, 유기물, 유효인산, 친환성양이온(Ca, K, Mg), 유효규산 -(물리성) 심토 용적밀도, 작토심(논), 지하수위(밭), 심토기상률(시설, 과수원)
용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천, 지하수, 저수지 ▪ (조사요소) TOC, T-N, T-P, SS(하천·저수지), NO₃-N(지하수) 등 최근 5년간의 수질 조사 데이터
대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사업대상 마을 권역 대기 환경 ▪ (조사요소) 농경지 온실가스 배출 및 축산악취 실태 등
경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사업대상 마을에 있는 농촌경관 조사 및 자원 발굴 ▪ (조사요소) 문화유산(유형) 발굴, 마을 공동공간·빈집·불량시설 실태 등 농촌 경관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
생 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사업대상 마을에 있는 생활환경 실태 ▪ (조사요소) 영농·생활폐기물 처리공간, 주민 생활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 등
유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사업대상 마을에 있는 농업유산* 조사 및 자원 발굴 * 농경유산(유형), 전통농법(무형), 농경문화(농경 유래 축제, 제례 등) ▪ (조사요소)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그 외 마을별 전통 농업유산자원 조사·발굴 * 근거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활용)
생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사업대상 마을 권역 농업생태 현황 ▪ (조사요소) 마을 권역 및 논 등 농경지 주변 생물 서식 실태, 생태교란 생물 서식 현황, 생태계 서식처 현황, 재래종·토종 품종 재배현황 등 * 생물은 동물과 식물 포괄

< 농업환경 조사 방법 >

◆ 토양 : 시·군은 사업대상 마을의 토양 화학성·물리성 조사

- (조사협조기관) 시·군 농업기술센터
- (조사대상) 사업대상 마을 내 개별 농경지(논, 밭, 시설, 과수원 구분)
- (조사요소) 농경지의 화학성, 물리성 요소
 - * 화학성 : pH, EC, 유기물, 유효인산, 친환성양이온(Ca, K, Mg), 유효규산
 - * 물리성 : 심토 용적밀도(모든 필지), 작토심(논), 지하수위(밭), 심토기상률(시설, 과수원)
- (조사절차) 특정필지 지정 → 최근 5년간 조사 데이터 확보* → 당해년도 데이터는 직접 조사(조사 시기 가급적 동일하게 할 것)
 - * 농진청 ‘농업환경변동조사사업’에 따라 조사되거나, 지자체가 직접 조사한 데이터 등을 ‘휴토람 시스템’ 등을 통해 확보

◆ 용수 : 시·군은 사업대상 마을에서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천, 지하수, 저수지의 수질을 조사

- (조사협조기관) 시·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역 농어촌공사 *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 가능
- (조사대상) 사업대상 마을 내 하천, 지하수, 저수지
- (조사요소) 농업용수의 수질
 - * (하천·저수지) TOC, T-N, T-P, SS, (지하수) NO₃-N
- (조사절차) 특정 용수원 지정 → 최근 5년간 조사 데이터 확보* → 당해년도 데이터는 직접 조사(조사 시기 가급적 동일하게 할 것)
 - * 농진청 ‘농업환경변동조사사업’에 따라 조사되거나, 지자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조사한 데이터 등의 자료 활용

◆ 대기 : 시·군은 사업대상 마을 권역에 온실가스 발생량 등 조사

- 환경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대상 마을의 온실가스 발생량 추정
 - * 국립농업과학원에 자문을 구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

◆ 경관 : 시·군은 사업대상 마을의 농촌경관 조사 및 자원 발굴

- (조사기관) 시·군, 사업 참여 농업인·주민
- (조사대상) 문화유산(유형), 마을 공동공간, 빈집·불량시설 등
- (조사절차) 시·군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관 관련 자원 실태 등을 구두로 파악 → 시·군은 주민협의체 관계자와 현장 조사

◆ 생활 : 시·군은 사업대상 마을의 생활환경 실태 조사

- (조사기관) 시·군, 사업 참여 농업인·주민
- (조사대상) 영농·생활폐기물 처리공간, 마을길, 주민 생활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
- (조사절차) 시·군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실태 등을 구두로 파악 → 시·군은 주민협의체 관계자와 현장 조사

◆ 유산 : 시·군은 사업대상 마을의 농업유산* 조사 및 자원 발굴

* 농경유산(유형), 전통농법(무형), 농경문화(농경 유래 축제 및 제례 등)

- (조사기관) 시·군, 사업 참여 농업인·주민
- (조사대상)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그 외 마을별 전통 농업유산자원
- (조사절차) 시·군은 각종 문헌과 마을 주민들로부터 농업유산 자원 파악 → 시·군은 주민협의체 관계자와 현장 조사

◆ 생태 : 시·군은 사업대상 마을의 생태환경 실태 조사 및 자원 발굴

- (조사기관) 시·군, 외부 전문기관
- (조사대상) 농경지 주변 생물서식 현황, 생태교란 생물 서식 현황, 생태계 서식처 현황, 재래종·토종 품종 재배현황 등
- (조사절차) 시·군은 같은 시·군 환경부서에 의뢰하여 사업대상 마을 권역의 환경관련 법적 지위* 파악 → 시·군과 외부 전문기관은 각종 문헌과 마을 주민들로부터 생물서식 및 생태자원 현황 파악 → 시·군과 외부 전문기관 현장 조사(필요시 주민협의회 관계자 동행)

* (예시)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자연보호구역, 특정오염 중점 관리지역 등

□ (계획수립) 시·군은 현장지원조직과 함께 주민 수요조사 및 농업환경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시행계획안 수립(7~11월)

- (목표 설정) 주민 수요와 농업환경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대상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목표 제시
- (콘텐츠 발굴)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대상 마을의 특성과 주민 수요조사 결과 등을 감안하고, 각종 자원 등을 활용하여 토양·용수·생태 등 분야별 농업환경 보전·개선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발굴

< 콘텐츠 주요내용 >

- 본 사업가이드라인 “분야별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참고하여 특정지역에 추진할 분야별 “단위과제” 제시
 - 예시1) 농업환경 조사결과 000번지 논 양분 과다 > (위치) 000번지 논, (형태) 개인, (분야) 토양, (단위과제) 적정 양분투입
 - 예시2) 농업환경 조사결과 마을 000에 생태계 교란 식물 서식 > (위치) 마을 000번지 일원, (형태) 공동, (분야) 생태, (단위과제) 농업생태계 보호

- (이행 계획) 성과 달성이 용이하고, 농업인·주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분야별 세부활동으로 상세화*

* 농업환경보전 세부활동 내용, 활동 이행 일정, 지급단가, 이행증빙 방법 등

- (타 부서사업) 시·군의 다른 부서에서 해당 사업대상 마을에 추진할 예정인 사업이나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명시

-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해당 사업대상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이 건을 “행정협의회”에 상정하여 협조 요청

* 환경부서(영농폐기물 수거, 생태보전, 수질개선 등), 문화부서(문화유산 및 농경유산 보전 지원 등), 건축부서(빈집 정비 등)

** 중앙부처 지원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

- 해당 사업대상 마을에 타 부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구체적인 사업내용, 예산규모, 추진일정 및 사업주체 등을 사업시행계획에 명시

- (모니터링 방안) 본 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토양·용수·생태 등 농업환경 분야 모니터링 계획 마련
- * 각 분야별 농업환경 조사 기관(시·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역 농어촌공사, 외부 전문기관 등) 명시 및 조사 일정·방식 등 제시
-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시·군은 현장지원조직과 함께 사업 참여 농업인·주민 대상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실시(10월)
 - 사업타당성* 등에 대해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과 협의
 - * 농업환경조사 결과와 농업환경보전 활동과의 연관 적합성 등 사업계획 효과성과 실현가능성 등
 - 농식품부를 대상으로는 사업시행계획안 사전설명 실시
 - * 사업취지 및 사업가이드라인 요건 준수 여부 등 확인
- (계획심의 및 확정) 시·군은 사업시행계획안을 시·도에 제출, 시·도는 농업환경위원회*에 이를 상정·심의**(11월)
 - * ‘사업신청 가이드라인’ 상의 ‘시·도 농업환경위원회’와 동일
 - ** 회의는 시·군에서 사업시행계획안 발표, 위원회에서는 이를 논의
- 시·도 농업환경위원회는 수정사항 권고 및 사업시행계획 승인, 시·군은 수정사항 반영 및 사업시행계획 확정
- (협약체결)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후 시·군은 사업 참여 농업인·주민들과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협약 체결(12월)
 - * (장소) 마을 회관 등 마을 공동 공간, (참석) (지자체측) 시장 또는 군수(부재시 부단체장), (마을측) 주민대표 또는 주민협의회 회장, 사업 참여 농업인·주민
- (결과제출) 시·군은 확정된 사업시행계획과 협약체결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이를 농식품부에 제출(12월)

③ 예산집행 및 점검

- (예산집행) 시·도는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하고, 시·군은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 현장지원조직에 관련 예산 집행
 - (예산교부) 시·도는 농식품부에 상반기 1회(3월, 전체 국비의 50% 이상), 하반기 1회(7월, 나머지 국비 전액) 보조금 교부 신청
 - 농식품부는 시·도가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경우 교부결정 후 해당 시·도에 예산 교부, 시·도는 교부받은 국비를 시·군에 교부
 - (예산실집행) 시·군은 용역과 관련 된 예산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현장지원조직에게 예산 지급(상·하반기 각 1회씩)

- (이행점검) 농식품부, 시·도, 시·군은 사업이행 상황 점검
 - 시·군은 사업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7월, 11월)
 - * 현장지원조직·주민협의회·행정협의회 신설, 농업인·주민 대상 교육·컨설팅, 농업환경 조사·진단, 사업시행계획 수립 추진 상황 등
 - **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 : 7월초, 하반기 이행상황 점검 : 11월말
 - 시·도는 시·군의 사업이행 상황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7월, 12월)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이행 점검결과를 통해 사업이행 상황 서면점검 실시(7~12월)

다. 사업이행 및 점검 (사업 2~5년차)

① 현장지원 기반 마련

- (현장지원조직) 시·군은 해당 사업대상지에서 시행되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신설(1~2월)
 - * '사업관리·운영비'로 현장지원조직 운영
 - (역할) 시·군에서 추진하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 주민 간 가교역할 등 수행

< 주요 역할 >

○ 교육·컨설팅

- 사업 참여 농업인·주민들을 대상으로 당해년도 사업시행계획 교육
- 개인 및 공동 활동 프로그램 이행 요령 및 활동 증빙방법 등 컨설팅

○ 농업환경보전활동 이행 지원

- 시·군과 함께 개인·공동 활동 일정 관리 및 이행 유도
- 시·군과 함께 주민 이행증빙 확인, 개인·공동 활동 이행 기록 관리
- 현장 제안 농업환경보전 활동 프로그램 발굴 지원

○ 농업환경 조사·진단 지원

- 시·군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농업환경조사, 필요시 수질·생태계 분야 등의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분석 의뢰

○ 사업시행계획 변경 지원

-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군과 함께 타당성 검토, 농업인·주민 의견수렴 및 계획 변경안 제시 등 지원

- (구성) 농업인·주민 스스로 농업환경 보전활동을 실천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 할 수 있는 환경관리 및 컨설팅 분야 전문가 최소 3명 내외*

* 팀장급 1명, 팀원급 1~2명 내외

- (운영) 시·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민간전문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가능

* 관련 법령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하되 역량 있는 전문단체가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저가 입찰 방식은 지양하고 협상에 의한 입찰 방식 등으로 계약 체결**

- (사업총괄코디) 시·군은 해당 사업 참여 농업인·주민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 이행 등을 총괄·조정하는 총괄코디 위촉(1~2월)

- (역할) 현장지원조직과 함께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사업방향 제시, 마을환경 진단 및 사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검토·조정 등

- (자격) 환경, 경관, 문화, 사회, 농학(토양·용수) 등 농업환경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해당 지자체 실정에 밝고,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우선 위촉

- (운영) 시·군이 직접 총괄코디 선정·위촉(임기 6개월~1년), 총괄코디에게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자문료 지급**

- *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 ** 총괄코디가 현장방문 및 자료검토 등을 할 경우 시·군이 직접 지급하거나, 시·군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현장지원조직을 통해 지급, (지원한도) 30만원/월
- (현장지원센터) 시·군은 현장지원조직과 사업총괄코디가 사업대상지에서 업무수행, 소규모 회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설치(1월)
- * 사업 1년차에 설치하는 ‘현장지원센터’와 동일
 - (설치) 시·군은 현장지원센터를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지 내 공공시설 등에 설치 하되, 공간이 없을 경우 사업대상지 밖 공공시설에 설치
 - * (설치대상 시설) 마을회관, 농식품부 농촌개발 관련 사업으로 지원된 각종 공공시설, 읍·면사무소 및 시·군청 관련 시설 등
 - (운영) 시·군은 시설관리자와 현장지원센터 입주 가능 여부 협의, 시설관리자가 승인한 경우 사업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 설치·운영
 - * 공공시설을 이용하므로 임대료 지원 불가, 사무용품(노트북·프린트 등)은 시·군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현장지원조직이 자체 조달

② 사업이행

- (교육·컨설팅) 농식품부와 사업 2~5년차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와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이행 등에 관한 교육과 컨설팅 실시
- (사업시행자) 농식품부는 사업 2~5년차 사업대상지를 관리하고 있는 시·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과 사업대상지별 현장지원조직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이행 시 중점 고려사항 등 교육(1~2월)
 - *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 형태의 집합 교육 실시
 - (사업대상자) 시·군은 현장지원조직과 함께 본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이행에 관한 교육 실시(2월)
 - * 마을회관 등을 이용하여 사업 참여 주민 전체 대상 워크숍 실시
 - 시·군과 현장지원조직은 사업 참여 농업인과 주민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당해년도 사업시행계획, 개인·공동 활동 이행요령, 활동 기록 및 증빙 방법 등 컨설팅(2월~)

□ (사업이행) 시·군과 사업 참여 농업인·주민들은 기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개인·공동 활동 등을 차질 없이 이행(2~12월)

○ (개인활동) 사업 참여 농업인·주민들은 활동 내용을 기록하고, 활동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보관 또는 시·군에 현장 확인 요청**

* 사진, 영수증, 시비처방서, 필요시 잔류농약 검사 등

** 개인 활동 중 본 사업가이드라인 상의 “분야별 농업환경보전 활동”에서 증빙방법이 ‘현장확인’인 경우 시·군에 관련 조치 요청

○ (공동활동) 공동활동 추진 대표자*는 활동 내용을 기록하고, 활동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보관 또는 시·군에 현장 확인 요청***

* 주민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지정한 사업 참여 농업인·주민 중 1인

** 사진, 영수증 등

*** 개인 활동 중 본 사업가이드라인 상의 “분야별 농업환경보전 활동”에서 증빙방법이 ‘현장확인’인 경우 시·군에 관련 조치 요청

③ 예산집행 및 점검

□ (예산집행) 시·도는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시·군은 개인·공동 활동을 이행한 농업인·주민들에게 관련 예산 집행

○ (예산교부) 시·도는 농식품부에 상반기 1회(1월, 전체 국비의 50% 이상), 하반기 1회(7월, 나머지 국비 전액) 보조금 교부 신청

- 농식품부는 시·도가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경우 교부결정 후 해당 시·도에 예산 교부, 시·도는 교부받은 국비를 시·군에 교부

○ (예산실집행) 주민협의회 회장은 시·군에 예산 지급을 요청하고, 시·군은 해당 농업인·주민들에게 예산 지급

- 주민협의회 회장은 개인·공동 활동을 기록한 자료와 활동 증빙 자료 등을 취합하여 시·군에 예산 지급 요청

- 시·군은 주민협의회 회장이 제출한 개인·공동 활동 이행결과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특정 시기*에 해당 활동 이행자**에게 자금 지급

* 매년 분기말 :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 지급대상자 : (개인활동비) 활동에 참여한 개별 농업인·주민, (공동활동비) 활동에 참여한 개별 농업인·주민, (공동활동 시 구매한 자재비 등) 본 사업가이드라인에 따른 공동활동 추진 대표자

- 시·군은 사업 참여 농업인·주민들에게 자금 지급 시 본 사업가이드라인 상의 “농업환경보전 활동” 지급단가 기준 적용

□ (이행점검) 농식품부, 시·도, 시·군은 사업이행 상황 점검

○ 시·군은 사업이행 상황*을 점검(양식 별지3)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7월, 11월)

*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참여 농업인·주민들 활동 이행 상황 등

**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 : 7월초, 하반기 이행상황 점검 : 11월말

○ 시·도는 시·군의 사업이행 상황 점검결과를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7월, 12월)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이행 점검결과를 통해 사업이행 상황을 서면 점검 하거나, 시·도와 공동으로 현장점검 실시(7~12월)

□ (농업환경조사) 시·군은 현장지원조직과 함께 사업성과 분석 등을 위해 사업 시행계획 이행 점검 관련 농업환경 분야 모니터링 실시

※ 전제사항

① 사업 2년차부터 동 계획 이행 점검 관련 농업환경 분야 조사

* 사업 1년차에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 2년차부터 사업시행계획 이행

② 사업이행 실적 분석·평가는 사업 2년차부터 매년 말(12월) 실시

③ 농업환경 분야 중 토양·용수·생태의 경우 자연적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사 결과의 비교성 제고 차원에서 조사 시기가 전년도와 동일 필요

* 사업 1년차에 실시되는 토양·용수·생태 조사는 4~6월 경 시행

④ 농업환경 분야 중 경관·생활·유산의 경우 물리적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기의 제약을 받지 않고 관련 활동 프로그램 이행 실적 점검 가능

* 특정 활동(정비, 청소, 배치, 이동, 행사 개최 등) 이행 여부 확인

○ (토양·용수·생태)

- (대상) 당해년도에 실시된 토양·용수·생태 관련 활동 대상지

- (시기) 조사 특수성*을 감안하여 매년 4~6월에 조사·분석, 당해년도 이행 점검 관련 농업환경 분야 조사는 차년도에 진행**하여 분석

* 위 전제사항 ③번 참고

** 당해년도 이행결과 점검 불가, 사업 2년차 성과는 사업 3년차 특정 시기에 조사·분석 가

《 분야별 주요 조사내용 》

분 야	조사 대상 및 내용
토 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사업시행계획서 상의 당해년도 활동 필지(논, 밭, 시설, 과수원) ▪ (조사내용) 해당 필지 화학성 및 전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 - (화학성) pH, EC, 유기물, 유효인산, 친환성양이온(Ca, K, Mg), 유효규산
용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천, 지하수, 저수지 ▪ (조사내용) 해당 농업용수 수질 및 전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 - (수질지표) TOC, T-N, T-P, SS(하천·저수지), NO₃-N(지하수)
생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사업대상 마을 권역 농업생태 현황 ▪ (조사내용) 농업생태 현황 및 전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 - (생태지표) 마을 권역 및 논 등 농경지 주변 생물 서식 실태, 생태 교란 생물 서식 현황, 생태계 서식처 현황 등(생물은 동물과 식물 포괄)

○ (경관·생활·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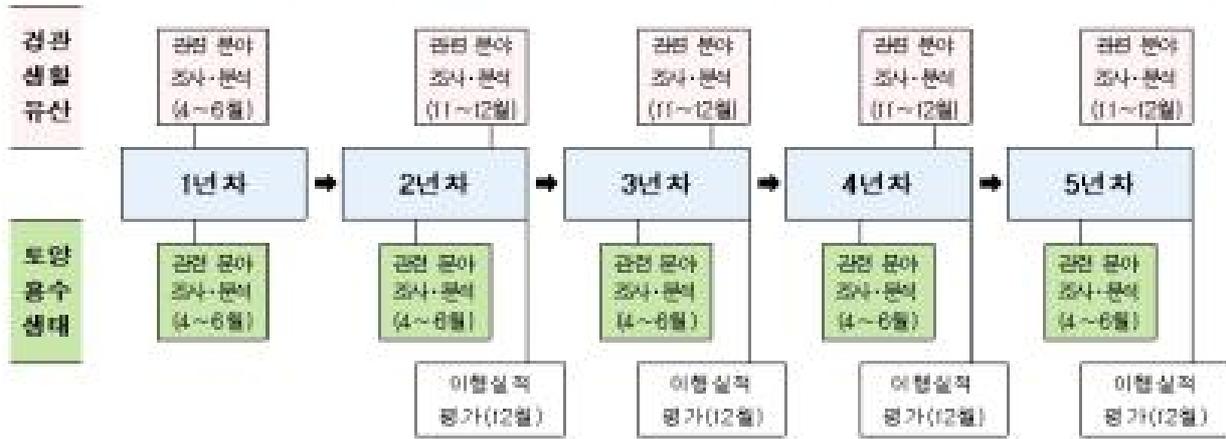
- (대상) 당해년도에 실시된 경관·생활·유산 관련 활동 대상지
- (시기) 당해년도 관련 활동 실적에 대해 11~12월에 조사·분석

《 분야별 주요 조사내용 》

분 야	조사내용
경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사업시행계획서 상의 당해년도 활동 공간 ▪ (조사내용) 해당 공간 활동 결과 및 사업 1년차 시기와 비교 - (요소) 문화유산(유형), 마을 공동공간·빈집·불량시설 등 농촌 경관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
생 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사업시행계획서 상의 당해연도 활동 공간 ▪ (조사내용) 해당 공간 활동 결과 및 사업 1년차 시기와 비교 - (요소) 영농·생활폐기물 처리공간, 주민 생활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
유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사업시행계획서 상의 당해연도 활동 공간 및 대상 ▪ (조사내용) 해당 공간 및 대상에 대한 활동 결과 및 사업 1년차 시기와 비교 - (요소) 농경유산(유형), 전통농법(무형), 농경문화(농경 유래 축제, 제례 등)

< 분야별/연차별 모니터링 일정 >

- 경관·생활·유산 : 당해연도 말에 활동 실적 조사·분석 가능
- 토양·용수·생태 : 활동 실적 조사·분석 시 1년의 시간차 발생
 - (2년차) 당해연도 조사·분석 불가, (3년차) 2년차 활동 실적 조사·분석, (4년차) 3년차 활동 실적 조사·분석, (5년차) 4년차 활동 실적 조사·분석
 - * 5년차 활동 실적은 사업이 종료된 다음 해에 조사·분석 필요



④ 연간 사업이행 실적 평가

□ (연간실적평가) 시·군은 현장지원조직과 사업 참여 농업인·주민들, 관련 기관* 관계자와 함께 매년 말 사업이행 추진실적 평가회** 개최(12월)

* 농업환경 모니터링 조사와 관련이 있는 기관(시·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역 농어촌공사, 기타 외부 전문기관 등)

** 마을회관 등을 이용하여 사업 참여 주민 전체 대상 워크숍 실시

- 시·군은 현장지원조직과 주민협의회와 협의하여 사업이행 추진실적 평가회 개최 일자 확정
- 시·군은 동 평가회를 통해 사업 참여 농업인·주민들과 사업이행 실적 및 농업 환경 모니터링 조사 결과 등을 확인하고 개선방안 논의
 - 시·군은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논의자료를 작성하고,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대안) 제시
 - 사업 참여 농업인·주민들은 시·군과 현장지원조직과 함께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논의

※ 본 평가회는 사업대상지의 사업주체(시·군, 현장지원조직, 사업참여 농업인·주민들)들이 1년간의 사업이행 실적과 성과를 돌아보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

⇒ 다른 사업주체를 비난하거나, 농식품부에 특정지원을 요구하는 등 평가회 개최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내용 논의 자제

< 논의자료 주요목차 >

- ① 당해년도 사업이행계획 및 개인·공동 활동 별 이행 실적
- ②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된 토양·용수·생태 등 분야별 농업환경 모니터링 조사 결과
- ③ 사업이행에 따른 농업환경 분야 추진성과
- ④ 분야별 농업환경 조사 결과 및 사업이행 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문제점
- ⑤ ④번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대안)

□ (자료제출) 시·군은 연간 사업이행 추진설적 평가 자료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사업대상지별 자료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제출(12월)

⑤ 사업시행계획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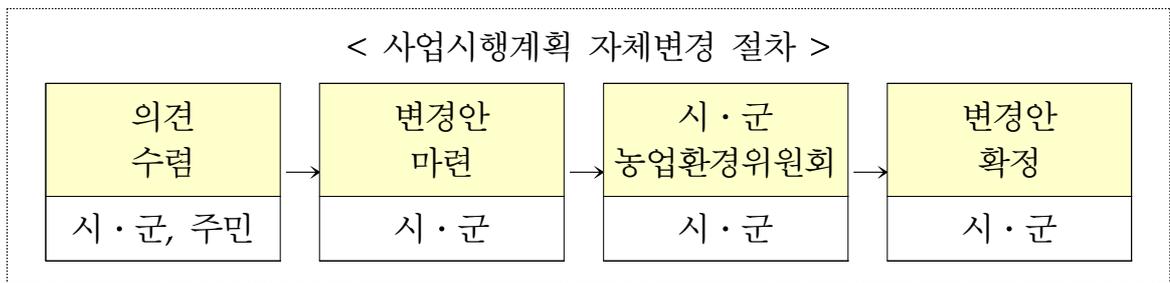
< 관계기관 협의 대상 변경요건 >

- ① 개인활동
 - 사업시행 농경지 총 면적의 30% 이상이 증감되거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 사업참여자의 수가 30% 이상 증감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 특정 분야 활동* 전체가 사업시행계획에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경우
 - * 토양 / 용수 / 대기 / 경관 / 생활 / 유산 / 생태
- ② 공동활동
 - 사업참여자의 수가 30% 이상 증감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 특정 분야 활동* 전체가 사업시행계획에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경우
 - * 토양 / 용수 / 대기 / 경관 / 생활 / 유산 / 생태

□ (자체변경) 관계기관 협의 대상 변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군이 현장지원조직과 사업 참여 농업인·주민들과 자체적으로 변경

- 시·군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사업 참여 농업인·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계획 변경 추진
- 시·군은 현장지원조직과 함께 사업 참여 농업인·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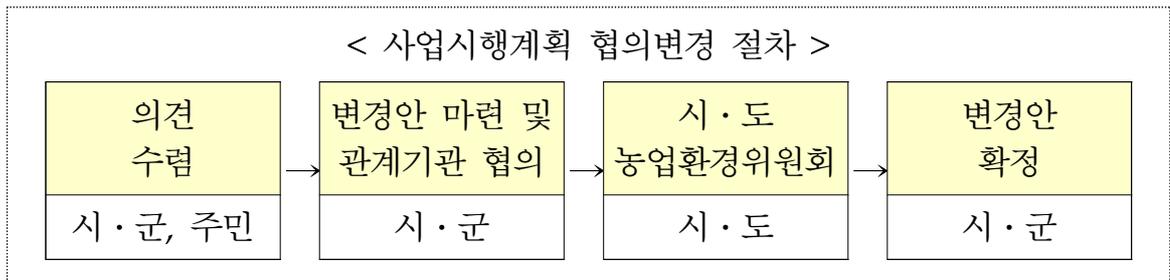
- 시·군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시·군 농업환경위원회*에 상정·심의
- * 본 사업가이드라인 상의 ‘시·군 농업환경위원회’와 동일
- ** 회의는 시·군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발표, 위원회에서는 이를 논의
- 시·군 농업환경위원회는 수정사항 권고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승인, 시·군은 수정사항 반영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확정
- 시·군은 확정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이를 농식품부에 제출



□ (협의변경) 관계기관 협의 대상 변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시·도 농업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시·군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사업 참여 농업인·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계획 변경 추진
- 시·군은 현장지원조직과 함께 사업 참여 농업인·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마련
- 시·군은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 사업시행계획 변경 타당성 등에 대해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과 협의
- * 농업환경조사 결과와 농업환경보전 활동과의 연관 적합성 등 사업계획 효과성과 실현가능성 등
 - 농식품부를 대상으로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사전설명 실시
- * 사업취지 및 사업가이드라인 요건 준수 여부 등 확인
- 시·군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시·도에 제출, 시·도는 농업환경위원회*에 이를 상정·심의**
- * 본 사업가이드라인 상의 ‘시·도 농업환경위원회’와 동일
- ** 회의는 시·군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발표, 위원회에서는 이를 논의

- 시·도 농업환경위원회는 수정사항 권고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승인, 시·군은 수정사항 반영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확정
- 시·군은 확정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이를 농식품부에 제출



라. 현장 제안 농업환경보전 활동 프로그램 발굴·시행

◇ (현장 제안 프로그램) 현장의 지역적·환경적·참여 구성원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 참여 농업인·주민들이 직접 제안·시행하는 프로그램

* 사업 2년차에 농업인·주민 대상 컨설팅, 3년차부터 제안·심사 및 시행

□ (컨설팅) 시·군과 현장지원조직은 사업 2년차 대상지의 농업인·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업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지원

- 시·군과 현장지원조직은 공급자 중심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농업인·주민들이 공급자이자 수요자로서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관련 활동을 발굴할 수 있도록 컨설팅

□ (프로그램 제안) 지역 특화형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 대상지의 주민협의회는 시·군 및 현장지원조직과 협의

- 주민협의회는 현장 제안 활동안*을 마련한 후 시·군에 제출하고, 시·군은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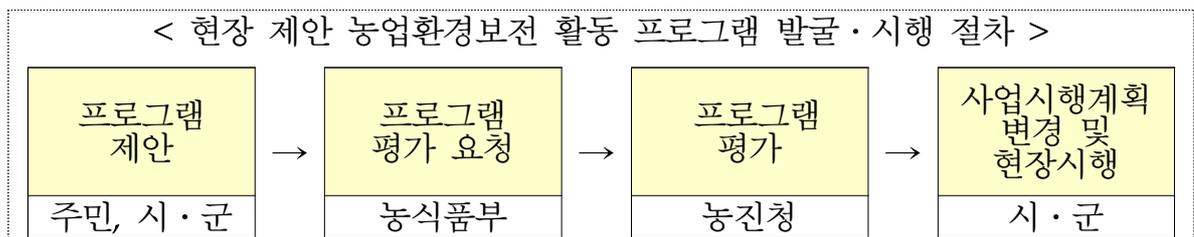
* 1)변경대상 활동내역 2)활동목적, 3)개인/공동활동 구분, 4)활동 분야/단위과제 구분, 5)세부활동 내용, 6)활동효과, 7)활동단가 및 산출근거, 8)활동 증빙방법 등

□ (프로그램 평가) 농식품부는 현장 제안 활동안에 대해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과 협의하여 평가

- 농식품부는 현장 제안 활동안 타당성 등과 관련하여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에 평가 요청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은 다양한 지표* 등을 토대로 현장 시행 가능성 등 검토
 - * 1)타 활동 중복 여부, 2)해당 사업대상지 농업환경조사 결과와의 연관 적합성, 3)활동 내용의 현장 시행 가능성, 4)활동효과 타당성, 5)활동단가 적정성 등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은 중간 검토결과를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현장 제안 활동안에 대한 현장 시행 가능성 등 실무 논의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업환경보전 활동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제안 활동안 상정·심의
 - * 농업환경보전 활동 프로그램 정비 절차 상의 심의위원회와 동일
- 농업환경보전 활동 프로그램 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자료를 심의한 후 관련 활동안 현장 시행 가능 여부 및 수정사항 등 권고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은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통보하고 농식품부는 이를 시·도를 거쳐 해당 시·군에 통보

□ (현장 시행) '시행가능' 결과를 통보 받은 시·군은 농식품부에서 통보한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장 제안 활동안을 확정하고 시행

- 시·군은 현장지원조직 및 주민협의회와 협의하여 기존 현장 제안 활동안에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
 - * 기존 사업시행계획 상의 활동 일부를 삭제하고 현장 제안 활동으로 대체(활동비 규모, 활동 시기 등을 검토하여 대체 가능 활동 사전 발굴)하되,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 이행 불요, 단, 사업시행계획 변경 전 시·도와 사전 실무협의 필요
- 시·군은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이를 농식품부에 제출
- ※ 추진 성과가 우수한 현장제안 활동에 대해서는 정식 농업환경보전 활동 프로그램으로 채택 검토



5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시범)



1. 목 적

-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제고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3. 추진기간 : 2020. 1. ~ 12.

4. 사업계획(시범)

구 분	사업량	건당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4,127명	480	1,981,085	792,433	792,433	396,219

※ 시범지역 : 5개 시군(순천시, 나주시, 해남군, 장성군, 신안군)

5. 사업추진 요령

가. 지원 자격 및 요건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임산부 또는 그 밖의 임신 및 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

- '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산부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출산 후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함.

* 출생신고일이 '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도 포함

** 12월의 경우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이후의 신청은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본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

나. 지원 품목 등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축산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기식품 등**
 - 임산부의 필요와 기호를 반영하여 품목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하거나, 이미 구성된 꾸러미 상품, 정기 공급 프로그램 등도 이용 가능
 -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 생산·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지원 가능
-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한하여 지원

다. 지원 방식

- 시범사업 지역 내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12개월간)
 - **(시범지역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지자체를 공모 및 심의를 통해 광역시·도 2개소, 시·군·구 12개소 선정
 - **(공급업체 선정)**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자체 공모 및 심의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작 및 공급 능력을 갖춘 유통업체 선정
 - * 선정된 공급업체는 12월까지 생산자 확보, 주문시스템 보완, 포장재 제작 등 준비
 - **(지원 신청)** 신청서 및 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읍·면·동 주민 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자격 확인을 거쳐 고유번호 부여
 - **(주문 및 배송)** 임산부는 인터넷 몰을 이용하여 원하는 상품을 주문 후 결제,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을 제작하여 임산부에게까지 지체 없이 배송
 - **(정산)** 지자체는 공급실적을 월말 기준으로 정산하고 공급업체에 비용 지급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지침 시달, 꾸러미 상품 유형 등 협의

시범지역/공급업체 선정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가능한 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대상지역 내 친환경 산지유통 조직 및 업체 중 공급업체 선정

지원대상자 접수
산부인과로부터 임신확인서(임신부), 출생증명서(산모)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지자체(시·군·구)로 제출

지원자격 확인
복지부에서 보유하는 임신·출생 및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지원자격 여부 확인

친환경농산물 공급
임산부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상품을 선택하면, 공급업체는 상품을 제작하여 임산부에게 현물로 배송, 불만사항 처리

사업비 정산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소요된 예산을 지자체에 신청하여 정산

- 시범지역 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 윤리적 소비, 바른 식생활 등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추진

라. 지원 조건

- 재원: 농특회계
- 예산규모: 9,060백만원(국비)
 - * 친환경농산물 공급 8,640, 주문 시스템 구축 300, 교육·홍보 120
 - 지원형태: 국비 40%, 지방비 40%*, 수혜자 부담 20%
 - * 지방비 분담은 광역시·도 30%, 시·군·구 70%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한도: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12개월, 24회 이내)
 - * 1회 공급 한도: 20,000원 이상 60,000원 이하(6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 지원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와 제7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와 제10조

6. 운영원칙

【 기본 원칙 】

- ◆ 실제 사업 시행주체인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합리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여 정책의 일관성 유지
- ◆ 시범사업의 취지를 살려 본 사업과 가장 유사하게 설계·추진하되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진단하여 향후 사업 확대에 대비
- ◆ 친환경농산물을 처음 접하는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는 보람 있는 경험'이 각인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추진

가. 지원 '명칭' 및 지원한도

- (명칭) '꾸러미'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로 명명
- (지원한도) 1인당 연간(12개월) 총사업비 기준으로 480,000원 이내 지원,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나. 공급 제품 관리

- (공급제품)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일부), 가공식품

- (품목구성) 지역 내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등으로 구성하되, 지역 내 공급이 어려운 품목은 전국 단위 연계를 통해 공급
- (생산지역) 국내산으로 하되, 제품준비와 운송물류 등의 기술적 문제가 없는 범위 내 지역 친환경농산물*(로컬푸드) 공급 권장
 - * 해당 시·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으로 하되, 공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도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공급 권장, 다만 해당 시·도에서 공급이 어려운 경우 다른 시·도에서 공급

다. 공급 제품의 품질관리

- 임산부의 기호와 정서에 맞게 제철과일·채소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하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배송 및 품질 관리
- 식품위생안전에 대한 관리는 생산단계부터 보관·포장, 배송 등 전체 과정에서 시행 ▶ 지자체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주기적 식품위생 안전 점검 실시

라. 식생활교육 등과 연계

- 예산 범위 내에서 친환경농업의 가치, 윤리적 소비 등 교육 병행 → 필요 시 식생활 교육 또는 비만예방프로그램 등과 연계 추진

7. 공급준비

가. 시범지역 선정

-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광역시·도 1~2개소, 나머지 광역시·도 중 시·군 10여 개소 선정
 - * 시·도 단위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지자체, 시·군 단위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지자체를 별도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상위 점수 순으로 선정
- (공모신청)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시·도 단위 또는 시·군 단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10.25.)
 - * 사업신청서, 수혜대상 현황, 인증 현황,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공급 능력, 시범사업 세부 시행방안, 예산 자립도 등 재정 상황 등
 - 시·도는 지역여건, 예산상황, 시·군별 참여의사 등을 고려하여 시·도 단위 또는 시·군 단위 참여 결정
- (선정심의) 심의위원회*의 서면 및 대면 평가 결과 상위 점수를 획득한 지자체(시·도/시·군)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및 통보(10월말)
 - * 친환경농업계,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7~10명으로 구성

나. 공급업체 선정

- (선정신청)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유통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
 - * 사업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유통 실적(학교급식, 꾸러미 등), 작업장 보유 및 관리 현황, 주문·판매시스템, 생산자조직과의 연계 등
- (선정심의) 지자체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및 현장 평가 결과 상위 점수를 획득한 산지유통조직, 유통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
 - (심의위원회) 지자체는 지역의 생산자·소비자 단체, 유통공사 지역본부, 유통공사에서 추천한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 (서면평가) 지자체는 작업장 인증 여부(친환경농산물 취급자, GAP, HACCP), 시설·장비 현황, 제작 능력, 유통조직 규모, 유사사업 경험, 등을 서면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현장평가) 심의위원회는 실제 시범사업 시행 역량이 충분한지 사업계획서, 발표 및 면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파악하여 현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 유통업체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자체, 지역주민(생산자·소비자단체)이 참여하는 협의체(10인 이내) 구성
- (공급계약) 지자체는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유통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농식품부에 보고

다. 시행 준비

- (주문시스템) 유통공사의 통합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합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공급업체의 자체 또는 연계 쇼핑몰 또는 공급업체 관내의 지자체가 운영하는 쇼핑몰 등 활용
 - 지자체와 공급업체는 사업 시행 전까지 주문 시스템 보완, 포장재 제작 등 사업에 필요한 준비 완료
 - 유통공사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범사업 기간 중 도입을 추진하되, 수혜자 자격 검증, 상품의 주문 및 결제, 사업비 정산 기능을 갖추어야 함.
- (포장재 등) 공급업체는 사업 시행 전까지 필요한 포장재를 제작 완료
 - 유통공사는 적절한 포장재 규격, 디자인, 공통로고 등을 정하여 제품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

- (홍보·교육) 유통공사는 시범사업 효과 확대를 위해 홍보 및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함께 추진
 - 필요 시 전문업체를 통해 수혜자의 기호에 맞는 꾸러미 상품 개발, 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 등 실시

8. 공급절차

가. 지원 신청 및 접수

- (지원대상)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기간(약 22개월)에 해당하는 임신부(임신부+출산부) 중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한 자
 -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 본 시범사업에서는 '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신 또는 출산한 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출산 후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 가능
 - * 예) 2019년 12월에 출산하고 12월에 출생신고한 자 → 지원 불가
 2019년 12월에 출산하고 2020년 1월에 출생신고한 자 → 2021년 1월까지 지원 가능
 2020년 2월에 출산하고 3월 10일에 신청한 자 → 2021년 3월 9일까지 지원 가능
 2020년 4월에 임신을 확인하고 6월 20일에 신청한 자 → 2021년 6월 19일까지 지원 가능
 2020년 1월 1일에 출산하고 2021년 1월 1일에 신청한 자 → 신청자격 소멸
- '20년 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그 이후의 신청은 '21년 사업으로 간주하여 관리
 - * 2020년 11월에 임신을 확인하고 12월 20일에 신청한 자 → 2021년 예산으로 지원
-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 상태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 2020년 3월에 임신을 확인하고 4월에 신청했으나 7월에 유산한 자 → 2021년 3월까지 지원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신부
 - *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본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
- ② 출산 후 12개월이 지날 때까지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임신부
- ③ 친환경농산물 지원 중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 상태가 중단되었으나 지원 기간 중에 다시 임신한 경우 남은 기간 동안에 한하여 지원

- (지원신청) 신청서(서식#1) 및 구비서류를 읍·면·동에 연중 서면으로 제출
 - 접수기관은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통해 임신·출산 여부를 확인 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 * 총 16자리: 연도(00) - 시·도(00) - 시·군·구(000) - 읍·면·동(000) - 식별번호(00000) - 지원 횟수(0)
 - ※ 신청 시스템 개발 진도에 따라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 신청 병행 실시
 - 신청서는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해당 시·군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지원기간 중 주민등록지 또는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초 접수한 시·군에서 지원
- (수혜대상검증) 시·군·구(읍·면·동) 및 보건소, 공급업체 등이 협조하여 수혜 자격 여부 검증
 -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현황을 공급업체에 제공하여 공급업체가 임신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 시·군·구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등의 수혜 여부를 시·군·구(읍·면·동)에 제공하여 자격검증 추진
 - 농식품부(유통공사)는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임신·출산 정보 등과 비교·검증하여 수혜 대상의 적격성 추가 확인

나. 꾸러미 상품 주문 및 배송

【 지원한도 】

- 임신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신청한 날로부터 12개월간 지원
 - 배송 횟수는 월 2회(연 24회)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수혜자의 기호 및 주문에 따라 조정 가능
 - * 1회 공급 한도: 20,000원 이상 60,000원 이하
 - 뒤늦게 신청한 임신부 등은 시·군별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기간 단축 가능
 - 임신부 1인당 총 지원금액에 물류(배송)비, 공급업체 수수료 등이 포함

【 농산물 주문 및 결제 】

- (회원가입) 임신부는 읍·면·동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와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공급업체는 임신부의 회원가입 내용과, 시·군·구(읍·면·동)에서 제공한 신청서 접수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구입권한 등을 조정

○ **(주문)** 임산부가 품목을 ①자유롭게 선택하여 꾸러미를 구성하거나 ②이미 구성된 꾸러미, ③공급 프로그램 선택 가능

- ① (선택형) 임산부가 그때그때 필요한 품목을 가상의 장바구니에 담아 주문
- ② (완성형) 이미 완성된 꾸러미를 임산부가 가격대, 품목 등을 고려하여 선택
 - * 예) 임산부 과일 꾸러미, 임산부 채소 꾸러미, 임산부 기력 보충 세트, 임산부에게 좋은 흑임자 죽 만들기 세트, 임산부 몸보신 삼계탕 만들기 세트
- ③ (프로그램형) 한번에 3~12개월치 친환경농산물 공급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별도의 주문 없이 배송 받는 방식
 - * 예) ○○○박사가 원하는 임산부 건강식(12개월), 출산 후 붓기에 좋은 산모 영양 프로그램(6개월), 우리 아기 이유식 첫걸음(3개월)

○ **(결제)** 인터넷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모든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결제하되 수혜자 부담액은 결제 시마다 분할 납부하는 방식을 권장

*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전자지불, 휴대폰소액결제 등

- 업무여건상 수혜자 부담액을 분할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일괄 납부 허용

【 꾸러미 상품 제작 】

○ **(제작기준)** 공급업체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형·완성형·프로그램형 꾸러미를 구성하여 공급 추진

- 가격대는 2만원 이상 6만원 이하로 하되, 완성형·프로그램형 꾸러미의 경우 사업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5,000원 단위로 제작 권장
- 지자체는 가능한 범위에서 해당 지역 내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구매 장려, 필요 시 지역 특산물 등 필수 구성 품목 지정이 가능
- 출산을 전후하여 유기수산물 인증을 받은 미역 등 증정 권장
- 꾸러미 구성 상품의 가격은 유통공사가 조사·발표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매가격을 참고하여 지자체와 공급업체가 협의하여 결정

○ **(농산물 확보)** 농산물 원물은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조직, 생산자단체 등에서 생산한 농산물 사용을 우선 권장

○ **(가공)**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HACCP 지정 등 적정한 품질·위생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전처리(선별, 세척, 1차 가공 등) 실시

- 공급업체 자체 전처리가 어려울 경우 전처리가 가능한 전문업체를 통해 공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아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함.

○ **(포장)**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위생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포장

- 포장재는 외부와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야 하며,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 소재, 회수 가능한 용기 및 주머니 등 활용 권장

【 배송 】

- 공급업체는 직접 배송 또는 계약한 택배업체 등을 통해 꾸러미 제품을 지체 없이 거주지 또는 수혜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
 - 배송업체는 공급업체가 지정하고 지자체가 동의한 택배업체 등을 활용하되, 배송 중에도 위생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공동주택 등 인구밀집지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거주지 외의 중간 배송지를 지정할 수 있음.
 - 임산부가 수혜기간 동안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임산부가 원하는 실제 거주지로 배송할 수 있음.

다. 품질관리

- 지자체는 공급업체의 농산물 이력관리 및 품질·위생관리 수준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
 - 지자체는 농관원, 유통공사, 농진청(농업기술센터), 지역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안전성 관리* 추진
 - * 취약 시기 및 품목을 고려하여 생산자별로 연 1회 이상 안전성 검사 추진
- 유통공사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공급업체를 정기·수시 점검하고 특히 공급 계약 시 약속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 확인 및 조치
 -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HACCP사업장 지정 등의 행정처분, 품질 및 위생 기준, 친환경 포장재 사용, 지역 농산물 우선 사용 등

라. 공급비용 정산

- 지자체는 공급업체의 친환경농산물 공급실적을 월말 기준으로 정산하고 월별로 공급업체에 비용 지급
 - 공급업체는 매달 5일까지 전월의 공급실적을 시·군에 알리고 시·군은 매달 10일까지 공급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되, 경우에 따라 지급 시기를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향후 통합 주문 시스템이 개발될 경우 유통공사는 전산상의 주문 및 공급 실적을 바탕으로 공급비용을 정산하여 시·군에 제공

마. 홍보 및 교육

- 유통공사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되, 필요 시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조기에 선정하여 추진
 - (홍보) 시범사업 도입 초기 신청률 제고를 위해 임산부가 자주 접하는 매체(임산부 관련 포털사이트, 맘카페 등) 대상 중점 홍보 추진
 - (교육) 친환경농산물을 처음 접하는 임산부가 향후 적극적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의 가치 등 순회교육 추진
- * 유통공사는 유기농문화센터 등 전문기관 통해 강사진을 구성, 시·도는 시범지역(시·군) 별로 일정을 수립하여 분기 1회 이상 교육

바. 제재 및 보고

- 공급업체의 농산물 이력추적, 위생 및 안전 관리 등 관리 미흡, 공급계약 시 준수사항 위반 등 발생 시 **공급계약을 중단**하거나 향후 참여 대상에서 배제
- 친환경농산물에 잔류농약 검출 등 인증기준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의뢰

사. 성과측정

- (지표①)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신청률
 - 조사시기: 시범사업 기간 종료 후('20.12월~'21.1월)
 - 조사방법: 시스템 추출, 지자체 자료 수집
 - 조사항목: 시범지역 내 전체 임산부(추정치) 대비 사업 신청 임산부 비율
- (지표②)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 조사시기: 수혜자별 지원 기간 종료 시
 - 조사방법: 인터넷 설문조사
 - 조사항목: 구성된 품목의 선호도, 농산물의 품질 및 신선도, 배송의 신속성, 사업 프로세스의 합리성, 사업의 필요성 평가
 - * 리커트 5점 척도(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아. 사업 평가 및 환류

- (사업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한 지원금액, 지원방식, 품목별 선호도 등을 분석하여 본 사업 도입 여부 검토
 - 예산 투입 대비 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병행

- (환류) 본 사업 도입 또는 시범사업 기간 연장 시 '20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는 사업비 배정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 (포상) 시범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 우수 공급업체 등에 대해 장관표창 수여

9. 사업추진 체계

가. 시범지역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범지역 선정 계획 수립 및 선정심의회 개최 등 총괄
 - 1차 서면평가, 친환경농업인 및 소비자 단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를 통해 2차 대면 평가 실시
 - 상위 점수를 획득한 **광역시·도 2개소**, 나머지 광역시·도 중 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군 **2~3개**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지방자치단체

-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시·도 단위 시·군 단위로 사업계획서* 제출
 - * 사업신청서, 수혜대상 현황, 인증 현황,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공급 능력, 시범사업 세부시행방안, 예산 자립도 등 재정 상황 등 포함
 - 시·도는 지역여건, 예산상황, 시·군별 참여의사 등을 고려하여 시·도 단위 또는 시·군 단위 참여 결정

나. 공급업체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선정 계획 수립 및 통보

지방자치단체

- 시·도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및 현장 평가 결과 상위 점수를 획득한 산지유통조직, 유통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하고,
 - * 지역 생산자·소비자 단체, 유통공사 지역본부, 유통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시·군은 시·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유통업체와 공급계약 체결

공급업체

-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유통업체는 신청서(서식#5호)*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 사업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유통 실적(학교급식, 꾸러미 등), 작업장 보유 및 관리 현황, 주문·판매시스템, 생산자조직과의 연계 등

다. 시행 준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시스템) 공급업체 통합 주문 시스템을 개발에 착수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 추진
- (포장재) 포장재 규격, 디자인, 공통로고 등 제시
- (홍보·교육) 시범사업 효과 확대를 위해 홍보 및 교육 계획 수립
 - 전문업체를 통해 꾸러미 상품 개발, 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 등 추진
- 임산부에게 고유번호 부여에 필요한 카드 등을 제작하여 시범사업 전까지 시·군에 배부

공급업체

- (시스템) 사업 시행 전까지 주문 시스템 구축
 - 공급업체의 자체 쇼핑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등 가능
- (상품 제작 준비) 선별, 포장 등 상품 제작을 위한 작업장 및 시설 준비, 상품 구성 및 가격
- (포장재) 사업 시행 전까지 필요한 포장재 제작 완료

지방자치단체

- 시스템, 상품구성, 포장재 등 공급업체의 준비상황 점검
 - 필요 시 지자체 쇼핑몰 보완 추진
- 유통공사와 협조하여 홍보물 제작 등 추진

라. 지원 신청 및 접수

수혜자

- 신청서(서식#1) 및 구비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연중 제출
 -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지방자치단체

- 읍·면·동은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통해 임신·출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 내용과 공급업체 인터넷 쇼핑몰의 가입 내용을 교차 확인
 - * 총 16자리: 연도(00) - 시·도(00) - 시·군·구(000) - 읍·면·동(000) - 식별번호(00000) - 지원 횟수(0)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유통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임신·출산 정보 등과 검증하여 수혜 대상의 적격성 확인
 - 통합 시스템 조기 도입 시 수혜자격을 자동으로 연계·검증하는 방안 검토

마. 꾸러미 상품 주문 및 배송

수혜자

- 발급받은 고유번호와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수혜자 부담액 납부 후 원하는 품목 또는 꾸러미 상품을 선택하여 결제

공급업체

-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형·완성형·프로그램형 꾸러미를 구성하여 공급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HACCP 지정 등 **적정한 품질·위생관리 체계를** 준수하여 선별, 세척, 1차 가공 등 실시
 - 포장은 친환경농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위생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되, 친환경적인 방법 지향
 - 위생 및 신선도를 유지한 채로 배송업체 등을 통해 배송

바. 품질관리

지자체

- 공급업체의 농산물 이력관리 및 품질·위생관리 수준을 수시로 **모니터링**
 - 농관원, 유통공사, 지역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안전성 관리
 - 정기적으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
 - 공급업체의 농산물 이력관리 미흡 또는 친환경농산물에 잔류농약 검출 등 인증기준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의뢰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자체와 협조, 공급계약 시 준수사항, 위생 및 안전성 등 정기·수시 점검

사. 공급비용 정산

공급업체

- 매달 5일까지 전월 공급실적과 함께 보조금 청구서(서식#2)를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은 매달 10일까지 공급업체에 비용을 지급

지방자치단체

- 공급업체의 친환경농산물 공급실적을 월말 기준으로 정산하고 월별로 공급업체에 비용 지급

아. 홍보 및 교육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되, 필요 시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조기에 선정하여 위탁 추진
 - 시범사업 도입 초기 신청률 제고를 위해 중점 홍보 추진
 - 임산부가 향후 적극적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의 가치 등 교육

【 기관별 역할 】

	농식품부	지자체(시/도)	공급업체	유통공사
사업준비 (18~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분계획 수립 세부시행지침 수립 시범지역 선정 해비타당성 조사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용역 추진 국회 예산심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 의견수렴 시범사업 참여 신청 공급업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의회 운영 시행계획 수립 사업담당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 제출 주문시스템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업체 선정 심의 관산시스템 구축 교육/홍보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업체 선정 포장재, 홍보물 제작
신청접수 (20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혜자격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혜자격 검증
농산물 공급 (20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사업 예타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업체 및 생산 농장 관리 감독 안전성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용경농산물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체 공급실적 관리 공급업체 점검 물량인원 관리
정산 (20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 집행(매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실적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산 및 집행 증명
교육홍보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홍보 운영 계획오도, 기고 추진 성과분석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체교육 추진 교육/홍보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홍보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회교육 추진 홍보 콘텐츠 제작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제공·이용동의서 포함)						
임산부	이름		주소		연락처 (휴대폰)	
	생년월일		임신·출산	해당되는 사항만 작성 * 임신확인일: * 출산예정일: * 출산일:	e-mail	
자녀	이름	[] 미출생	생년월일	2020년 월 일 (출생신고일 :)		
농협물 ID		※ 농협물 ID가 없는 경우 신규가입 후 작성				
꾸러미 사업 신청 내역		- 신청액: 48만원(국비 192,000원, 지방비 192,000원, 자부담 96,000원) ※ 꾸러미 종류 및 배송 시기는 공급업체와 협의 예정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해당 읍·면·동, 시·군, 도, 시·군에서 지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업체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및 사업 추진 및 보조사업 성과분석 등을 위함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전화번호, 이름, e-mail, 연령, 임신 및 출산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0. 01. ~ 2024. 12. <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 대상자는 본 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 활용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신청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p style="text-align: right;">[] 동의 [] 동의안함</p> <p style="text-align: center;">2020. .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 또는 서명)</p> <p style="text-align: right;">읍·면·동장 귀하</p>						
※ 위임인(신청인)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보조금 교부 신청, 청구, 정산 등 관련 사항을 수임인(공급업체명)에 위임하며, 위 정보는 본 시범사업의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정산 자료로 활용할 것임을 확인함. <p style="text-align: center;">2020. . . .</p> <p style="text-align: center;">위임인(신청인) (인 또는 서명)</p> <p style="text-align: right;">○○시장(군수) 귀하</p>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시군 거주자 여부: 여(), 부() ※ 신청일 기준 ■ 임신·출산확인서, 출생신고 확인 결과: 적정(), 부적정()					직 성명	(인)

시·도명(0/4분기)

시군별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집 행 잔 액						
	사업량 (명/회)	사 업 비					사업량 (명/회)	사 업 비				사업량 (명/회)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집행잔액 발생 사유

□ 서면 평가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지표
	필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 자체 인터넷 쇼핑몰(또는 지자체 쇼핑몰) 구축 및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사업 도입 전까지 구축 및 보완하여 주문·결제, 정산 등이 가능해야 함.
시설장비 현황 (25)	작업장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전용 작업장 보유(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을 위한 전용 작업장을 보유한 경우: 5점 - 일반농산물과 함께 사용하나 혼입,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이행하는 경우: 2점 ○ GAP 또는 HACCP 시설 지정(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P시설, HACCP 지정을 동시에 받은 경우: 10점 - GAP시설, HACCP 중 한 가지만 지정받은 경우: 5점 - GAP, HACCP 모두 지정받지 않음: 0점
	공급능력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이 100㎡ 이상인 경우 : 5점 -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 4점 -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이 20㎡이상 50㎡미만인 경우 : 3점 -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이 20㎡미만인 경우 : 2점 -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이 없는 경우 : 0점 ○ 꾸러미 전용 작업자(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꾸러미 작업자를 5명 이상 확보 : 5점 - 꾸러미 작업자를 3명 ~ 4명 확보 : 4점 - 꾸러미 작업자를 1명 ~ 2명 확보 : 3점 - 꾸러미 작업자가 없는 경우 : 0점
사업조직 역량 (50)	참여 유통조직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이 지역 내 생산·유통단체를 폭넓게 아우르고 있는가?(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산지조직 등에 참여한 단체가 10개 이상: 10점 - 친환경산지조직 등에 참여한 단체가 5개 이상: 6점 - 친환경산지조직 등에 참여한 단체가 5개 미만: 3점 -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이 없음: 0점
	참여농가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계약 등을 통해 참여하는 인증농가 수(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농가 이상: 5점 - 80농가 이상, 100농가 미만: 4점 - 60농가 이상, 80농가 미만: 3점 - 40농가 이상, 60농가 미만: 2점 - 40농가 미만: 0점 ○ 참여하는 인증농가의 인증면적(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ha 이상: 5점 - 250ha 이상, 300ha 미만: 4점 - 200ha 이상, 250ha 미만: 3점 - 150ha 이상, 200ha 미만: 2점 - 100ha 이상, 150ha 미만: 1점 - 100ha 미만: 0점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지표
	친환경농산물 유통 경력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유통 경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유통경력 있음 : 5점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유통경력 없음 : 0점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유통 경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 유통경력 있음 : 5점 - 학교급식 유통경력 없음 : 0점 ○ 친환경농산물 유통 역량(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액 100억원 이상: 5점 - 전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4점 - 전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액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3점 - 전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액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2점 - 전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액 30억원 미만 : 1점
	인터넷몰 운영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인터넷 쇼핑몰 운영 및 관리(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인터넷 쇼핑몰을 정상 운영 중: 10점 - 인터넷 쇼핑몰이 있으나 정상 운영되지 않음: 5점 - 인터넷 쇼핑몰이 없음: 0점
관리실태 (25)	저온위생관리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온물류집배송장, 냉장창고, 배송차량, 포장재 등 위생 및 신선도 관리가 충분한가?(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유통단계에서 저온 등을 통해 위생적 관리: 10점 - 일부 단계에서 저온 등을 통해 위생적 관리: 5점 - 해당 없음: 0점
	불만사항·사고처리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만사항 발생 시 항시 대응·처리 체계(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 매뉴얼을 관리·운영하고 있음: 5점 - 대응 매뉴얼이 없음: 0점 ○ 식품사고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가입: 5점 - 미가입: 0점 ○ 불만사항 등을 관리하는 전담인력 배치(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자 있음: 5점 - 전담자 없음: 0점
	시·도 자체기준 (가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형 꾸러미 공급이 가능한 경우: 5점(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쇼핑몰 구축 내용으로 입증 ○ 꾸러미 배송 체계 갖춘 경우: 5점(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 전 지역 자가배송 체계 구축 또는 택배업체와 배송비 단가 할인 계약에 한함. ○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전 처리(세척, 절단 등) 가능: 5점(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한 시설(전처리, 조각과일 등 신선편이식품)을 설치한 업체
	제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 ○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업체

□ 현장 평가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지표
사업계획 적정성 (20)	계획타당성 (10)	○ 시행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광역시·도 단위로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사업이해도 (10)	○ 지자체의 시범사업 추진 체계 등에 대한 이해도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목적과 추진체계, 지자체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시설·장비 적정성 (40)	생산능력 (20)	○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의 꾸러미 상품 생산 능력 - 관할지역 내 임산부의 수요를 고려할 때 충분한 물량을 제작·공급할 수 있는가? ※ 일간 적정작업능력 = 임산부(명)×배송횟수(월 2회)÷작업일(20일)×3
	주문시스템 (20)	○ 친환경농산물 주문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보완 여부 - 친환경농산물을 인터넷 및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인터넷몰, 결제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가? - 시범사업 참여에 필요한 경우 인터넷몰을 구축·보완할 수 있는가?
공급업체 역량 (40)	품질·위생관리 (10)	○ 품질 및 위생 관리의 적정성 - 콜드체인 시스템, 적절한 위생 및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력추적관리 (10)	○ 이력추적 관리의 적정성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등이 준수해야 할 이력추적관리 실태를 표본심사(10건 내외)로 확인
	불만처리 (10)	○ 소비자 불만사항 발생 시 처리 및 대처 능력 - 클레임 처리 전담 및 담당자, 대응 매뉴얼 등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가?
	유사사업경험 (10)	○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 경험 - 임산부·산모,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한 경험이 있는가?

※ 5단계 평가: 매우 우수(20/10), 우수(16/8), 보통(12/6), 미흡(8/4), 매우 미흡(4/2)

【 심의위원 의견 】

소속

직위

이름

(서명)

《친환경 관리분야》



1. 목 적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을 통해 농가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친환경농산물 지속생산 유도
- 명예감시원에게 현장 순회지도 활동비 등을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토록 하여 소비자 신뢰 제고

2.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24년)」

3.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100%)	도비(20%)	시군비(70%)	자담(10%)
인증비용 지원 명예감시원 활동비	18,000건 140명	11,700,000	2,340,000	8,190,000	1,170,000

※ 명예감시원 활동비는 농관원 위촉인원 증감에 따라 자율 조정 가능

4. 사업추진

가. 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0. 1월~12월(1년간)

-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연중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단체) 중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
 - 2020년도에 조성하는 친환경농업단지 및 개별농가 단위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단지대표(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로 선정
 - * 단, 관외 경작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사업대상자 확정 : '20. 12월 이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내 민간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에 의거 확정(인증기관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21. 1. 15.까지

다. 사업시행체계



- ① 사업계획수립시달, 사업추진
- ②, ③ 자료 확인(수질·토양·농약검사 등 분석여부 확인)
- ④ 사업신청, 추진상황보고, 사업비정산

5. 세부사업 추진요령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내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단지)
- 친환경농업실천 농가(단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인증 수수료, 심사원 출장비, 심사관리비, 토양검사, 수질 및 잔류농약검사 비용 지원
- 인증 갱신신청 농가(단지) 분석비용, 영농일지 제작비 지원
 - 시군 예산형편에 따라 인증에 따른 생산과정 관리, 측량비, 사후관리 비용, 친환경 유기식품 인증비용 지원 가능

2) 명예감시원 활동비

- 친환경농업단지 등 친환경농업 실천 필지에 대한 인증기준 준수과정을 주기적으로 순회지도 및 감시토록 하고 활동비 지원
 - 시군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 출장소)과 협의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계획 수립

○ 활동내용

- 재배작물의 생육상태, 제초제 사용여부, 농약·화학비료 및 사용금지 자재 사용여부, 냉해·우박·병해충 피해발생 여부 등 순회 감시활동 전개
- 주기적으로 도·시군단위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친환경농업 관련 전문교육·행사에 우선 참여기회 제공

나. 지원방법

- 인증비용 지원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인증을 받은 농가(단지)
 - 신규 인증단지(농가), 인증면적 확대 및 인증단계 상향 단지(농가) 등에 지원
 - 농가보다 단지단위 인증신청으로 비용절감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
- 명예감시원 활동비 : 시군별 명예감시원의 활동상황에 따라 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의 협조를 받아 활동사항 확인 후 지원

다. 지원기준

1) 인증비용 지원

- 지원비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 심사 시 필요한 실 소요비용
- 지원기준 : 도비 20%, 시군비 등 80%
- 인증단계별 유효기간 준수 : 유기·무농약 1년

2) 명예감시원 활동비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준수과정 순회지도 및 감시활동비
- 지원기준 : 도비 20%, 시군비 80%
 - 활동일수 : 1인당 연간 30일 이내
 - 지원금액 : 1인 1일당 50천원
 - * 활동일수 및 활동비 지원은 시군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6.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 시장·군수 책임하에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관리

- 인증비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적법하게 획득한 농가에 직접 지원
 - * 인증기관에 직접집행 불가
- 명예감시원 활동비용은 활동상황, 활동일지 등을 확인 후 개별통장에 입금

7. 행정사항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신청내역 보고 : 2020. 9. 30.(별지 제4호 서식)
- 인증비용 지원 및 정산결과 보고 : 2021. 1. 15.(별지 제4호 서식)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미납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내 민간인증기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단지 또는 농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농가(조직)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인 증 내 역	인증구분		유기, 무농약		인증품목		외 품목					
	인증면적		m ²		인증유효기간		~					
	인증번호				인증일자							
	인증농가수				인증기관							
인증 수수료 납부내역	계		신청비		심사원 출장비		심 사 관리비		검 사 비			
	원								농약		토양	수질
입 금 계 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p>구비서류 1. 인증비 납부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완납 증빙서류(계좌이체통장 사본, 무통장입금표 등) 1부. 2. 인증비 세부내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3. 필지별 내역 포함된 인증서(전·후) 사본 각 1부.</p> <p>상기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2020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주소 : 조직명 : 대표자(성명)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00 시장·군수 귀하</p>												

[별지 제3호 서식]

인증비 세부내역서

인증농가(조직) 주소 :

성명(대표자) :

인증비 세부내역

구 분	비 용(원)	비 고
계		
○ 인증신청비		
○ 인증심사원 출장비		인원 : 명
○ 심사관리비		
○ 검사비용		검사기관명 :
- 농약잔류		
- 토양		
- 수질(용수)		
- 기타 검사		

인증비 세부내역이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인증기관의 장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1.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신청내역 : 2020. 9. 30.

사업량 (건수)	지원실적				사 업 비(천원)				
	농가수	면 적			필지수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유기	무농약					
		ha			필지				

2. 인증비용 지원 및 정산결과 : 2021. 1. 15.

- 인증비용 지원 내역

사업량 (건수)	농가수	면 적(ha)			필지수
		계	유기	무농약	
					필지

-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량(건수)			예 산 액(원)				집 행 액(원)				도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3.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 및 정산결과 : 2021. 1. 15.

인원 (명)	활동실적 (일)		예산액(원)			집행액(원)		
	1인당	연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7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정부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액의 차액을 유기 지속 직불금으로 지원 (6회차부터)하여 유기농업 지속 실천 유도
- 정부의 무농약 직불금 지원 중단에 따른 자체 지원(4회차부터)을 통해 친환경 농업 지속 실천 및 유기농 상향인증 유도

나. 지원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제16조~제23조

다.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18천ha	4,285,000 (100%)	857,000 (20%)	3,428,000 (80%)

2.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 호의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나. 지원대상

- 2020년 사업기간(1월~12월)중 친환경농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필지(토양관리가 이루어지는 원목 재배 형태 버섯재배는 지급대상에 포함)
 - 임야인 경우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
 - 친환경 무농약 벼 인증 5년차 이후인 농지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유기농 6회차 이상, 무농약 4회차 이상 인증 농가에 정부지원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50% 지원
 - * 단, 최초 무농약 벼 인증을 받은 후 유기로 인증 상향 없는 농가는 4년차 1회만 지급

라. 지원형태

- 재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80%
- 지급단가(ha당)
 - 유기농 : 논 350천원, 밭 (과수) 700, (채소·특작·기타) 650
 - 무농약 : 논 250천원, 밭 (과수) 600, (채소·특작·기타) 550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5.0ha
 - * 동일 농가 경영체에서 2명 이상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경영체당 지급 한도(5.0ha)를 초과하여 지속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지급 기간 및 방법
 -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 받은 필지에 대해 6년차부터 매년 지급
 - 무농약농산물을 생산하여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 받은 필지에 대해 4년차부터 매년 지급 * 단, 무농약 벼는 4년차 1회만 지급

바.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 및 인증서 사본을 관할 읍·면·동에 제출(단, 유기 지속 직불금은 정부의 유기 지속 직불금 신청서로 대체)
- 신청기간 : '20. 3. 1. ~ 3. 31.
- 대상자 선정 : 유기인증 농가는 정부의 유기 지속 직불금 대상자와 동일하며, 무농약인증 농가는 사업신청자 중 적격자를 선정

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 시장·군수는 논, 밭 등 품목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유기농·무농약 실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 : '20. 11월 ~ 12월
- 사업종료(회계연도 종료) 시 사업비 집행실적(정산)을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보고 : '21. 1. 15.

아. 사후관리

-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연도 내(1. 1. ~ 12. 31.) 인증취소, 인증만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 기타 세부적인 사업 추진사항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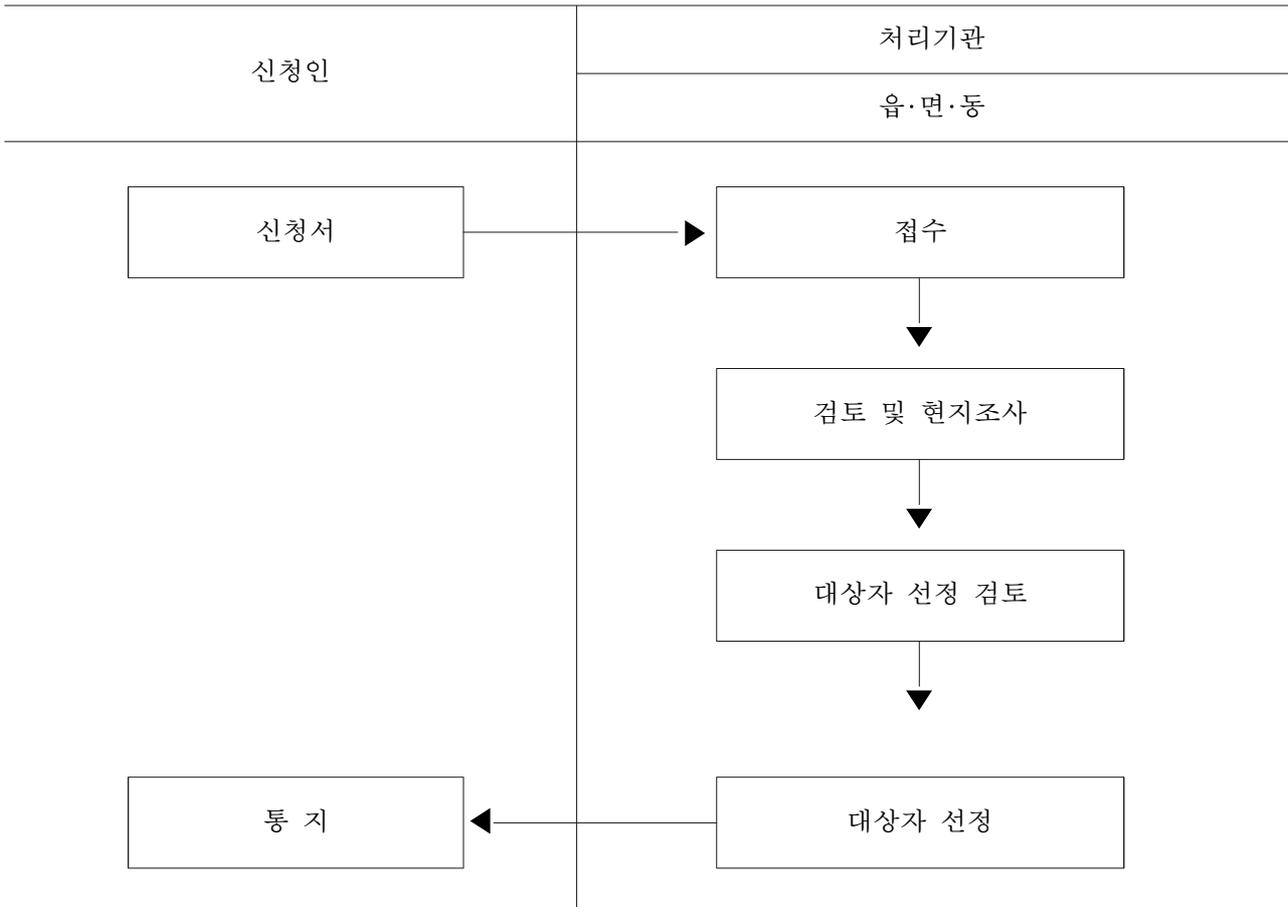
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60일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② 인증현황	인증구분							인증번호		인증기관		
③ 신청농지 현황												
구분 (논·밭)	인증 종류	품 목		농지소재지				지목 (공부상)	재배 면적 (m)	쌀소득 직불제 대상여부 (○, x)	농업 경영체 등록여부 (○, x)	과거 지급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합계												
④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p>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 및 2020년도 전라남도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금 사업지침에 따라 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불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불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불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p>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읍면동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없음		

작성 방법

- ① 신청인 : 보조금 신청인(법인 포함)의 인적사항을 기재
 -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생년월일 동시 기재
- ② 인증현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현황을 기재
- ③ 신청농지 현황
 - 논·밭 구분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밭
 - 인증종류 : 유기, 무농약 중 하나를 기재
 - 품목별 분류 : (대분류)곡류, 채소, 과수, 기타 중 하나를 (소분류)는 인증서 상 품목명 기재
 - 쌀소득직불제 대상여부 : 당해연도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대상 농지 여부를 기재
 - 농업경영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여부를 기재
- ④ 입금계좌 : 보조금을 수령할 신청 농업인(법인)의 계좌를 기재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집행실적(정산) 보고

(단위 : 호, ha, 원)

구분	농가수	면적	사 업 비						도비 집행 잔액
			예 산 액			집 행 액			
			계	도비	군비	계	도비	군비	
합 계									
유 기									
무농약									



1. 목 적

- 무농약 이상 인증확대에 따른 안전성 검증체계 확립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 친환경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철저로 소비수요에 부응한 안전농산물 생산

2.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24년)」

3. 사업계획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계(100%)	도비(30%)	시군비(70%)
잔류농약검사지원 퇴비 품질검사	2,000건 210점	560,000	168,000	392,000

4. 사업추진

가. 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0. 1월~12월(1년간)

- 사업추진 : 연중
 - 시군 친환경농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 상시 운영
 - * 인증단지(농가)에 대하여 연중 부정기적으로 친환경 실천상황 점검 강화
 - 명예감시원, 단지대표 등이 현장지도 점검
 - 신고·의심된 필지에 대해 친환경농산물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농약 검사 실시
 - 불량퇴비 유통 근절을 위한 수시단속 및 시군 교차단속 실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에 의거 확정 (인증기관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잔류농약 검사 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민간전문분석기관,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등
- * 퇴비검사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또는 비료 시험연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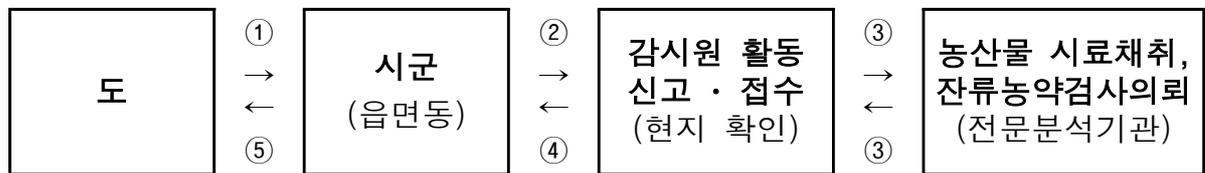
○ 사후관리

- 잔류농약검사 결과 정상으로 판명된 필지의 농산물 판촉 지원
- 부적격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
- 공정규격에 정해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초과한 퇴비는 비료관리법에 의거 조치

○ 추진상황 보고 : 2회(9월말 기준, 12월말 기준) - 다음달 5일까지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 '21. 1. 15.

다. 사업시행체계



- ① 사업계획 수립 대내외 홍보 ② 사업추진(신고 접수, 현지확인)
- ③ 의심·신고 접수필지 농산물 시료채취 잔류농약 검사의뢰
- ④ 인증취소 통보 및 보조지원 중단, 사후관리, 추진상황 보고
- ⑤ 추진상황 보고, 사업비정산, 결과분석

라. 검사대상

- 잔류농약 분석용 시료채취는 시·군 담당자, 민간인증기관 등이 합동으로 실시
- 시군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단지와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농약사용이 의심되는 필지의 농산물
- 명예감시원 등의 현장지도 과정에서 적발되어 농가와 분쟁이 발생한 필지의 농산물
- 수요가 많은 수도권지역 급식업체에 납품하는 농가(품목)을 사전에 파악, 생산단계 및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실시 후 적격품만 출하
- 도, 시군에서 잔류농약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퇴비 검사는 도내 유통·공급되고 있는 제품 중 검사가 필요한 경우

마. 지원방법

○ 잔류농약검사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 필요한 검사비용

- 지원단가 : 250~280천원/건(도비 30%, 시군비 70%)

* 잔류농약검사 증가 등으로 배정사업비를 초과한 경우 시군 자체예산(또는 농가부담)으로 추진

○ 퇴비(비료)검사

- 사업량 : 시군별 연 10~15점

- 지원내용 : 비료 품질검사에 필요한 검사 실 소요비용

- 지원단가 : 200~300천원/점(도비 30%, 시군비 70%)

바.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 시장·군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비료 시험연구기관 등) 분석기관에 직접 집행

- 잔류농약검사 결과 농약검출로 친환경농업단지 참여농가와 생산농산물 유통에 피해를 초래한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비용 지원배제 등 페널티 부여

※ 경우에 따라 농업인이 잔류농약검사를 의뢰한 경우 농업인에게 보조금 집행 가능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결과 도에 보고

5. 행정사항

가. 추진상황 보고 : 2회(9월말 기준, 12월말 기준) - 다음달 5일까지 보고

나.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 '21. 1. 15.

다. 사후관리

○ 잔류농약 검사결과 농약검출 시에는 그 내역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 등에 통보하여 처분 요청

○ 퇴비 검사 후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비료 관련법에 따라 조치

[보고 서식]

1. 잔류농약검사 실적 및 조치사항 : 2회(9월말, 12월말)

- 잔류농약검사 실적

사업량 (건수)	검 사 실 적								검사기관명
	신 고 (명예감시원 외)		적 발 (명예감시원)		의 심 (행정기관)		기 타 (해당농가)		
	정상	부적합	정상	부적합	정상	부적합	정상	부적합	

- 부적합 조치사항

위 반 자			위 반 상 황			조치사항
성 명	주 소	연락처	품목	위반내용	위반일자	

2. 퇴비(비료) 검사실적 및 조치사항 : 2회(9월말, 12월말)

- 퇴비(비료)검사 실적

구 분	사업량 (건수)	검사일자	검 사 실 적			비 고
			계	적 합	부적합	
합 계						
교차단속검사						
수시검사						

- 부적합 조치사항

구 분	위 반 자			위 반 상 황		조치사항
	성 명	주 소	연락처	품목	위 반 내 용	

3. 사업비 정산실적 보고 : 2021. 1. 15.

(단위 : 건수, 천원)

세 부 사업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도 비 집 행 잔 액
	계 획	실 적	%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잔 류 농 약 검 사										
퇴 비 검 사										



1. 목 적

- 저비용 무제초제 농업 실현으로 농업환경 보전 및 친환경 전남 이미지 제고
- 친환경 벼재배 농가와 관행 벼재배 농가의 제초비용 등 생산비 절감에 기여

2.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24년)」

3. 사업계획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계(100%)	도비(10%)	시군비(80%)	자담(10%)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	65천ha	7,800,000	780,000	6,240,000	780,000

4. 사업추진

가. 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0. 1월~ 12월(1년간)

다. 사업비 지원

- 사업계획 : 65천ha
- 사업비 : 7,800백만원 / 도비 780(10%), 시군비 6,240(80%), 자담 780(10%)
- 지원내용 : 왕우렁이 구입비(ha당 12kg) 지원

- 10a당 왕우렁이 공급(지원) 기준
 - 공 급 량 : 1.2kg(1,200마리 내외)
 - 지원단가 : 12,000원(kg당 10,000원 기준)
 - 시군 여건에 따라 성패(중간 크기 이상) 왕우렁이를 공급하거나 공급량, 지원비율, 지원단가 등은 자율 적용하여 지원 가능(시군 자체 지원계획 수립)
- 벼 관행재배 농경지 왕우렁이 보급으로 무제초제농법 실천
 - 친환경농업단지 기준을 적용 시군별로 자체계획에 따라 추진
 - 제초제 대비 왕우렁이 비용절감 효과(50%) 등 저비용 홍보 강화

라. 사업추진요령

1) 우량 왕우렁이 안정적 공급

- 단지 참여농가 의견을 반영하여 전남우렁이생산자협의회 등과 협의하여 가급적 책임운영모델 운영주체 또는 단지별로 직접계약(공동구입)으로 비용 절감
 - 계약 시 농가별로 공급 시기를 명시하여 적기 공급 추진
- 공급량은 10a당 1~1.2kg 기준으로 공급하되, 원거리 수송 시 왕우렁이 폐사, 잡초 방제효과 제고 등을 감안 道내 업체산 왕우렁이 공급
 - 공급업체간 과열경쟁 방지 및 기술지도 강화 등을 위해 시군여건에 맞게 사업추진

2) 왕우렁이 공급 확인

- 왕우렁이 공급업체에서 단지(농가)별로 왕우렁이 공급 후 공급확인서를 단지 대표(농가) 등에게 제출
 - 공급확인서 작성 시 (사)전남우렁이생산자협의회로부터 道내산 여부 확인
 - 단지대표는 왕우렁이 검수 및 농가별 적기 입식 지도
- 공급업체에서 발급한 단지별 공급확인서에 따라 행정, 지도 등 읍면 담당 공무원이 단지(농가)별로 공급상황 확인
 - 시군별 실정에 맞게 왕우렁이 현지 공급상황 지도·점검

3) 왕우렁이 수거

- 왕우렁이 농법 실천농가는 투입한 왕우렁이를 의무적으로 수거해야 함을 반드시 공지
- 왕우렁이 농법 실천농가가 왕우렁이 수거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사업비 회수 조치
 - ※ 왕우렁이 알 제거(5~7월) 및 본답의 용·배수로 주변 왕우렁이도 제거(8~10월) 할 수 있도록 농가지도

4) 사업비 집행·정산

- 단지대표 또는 담당공무원의 공급확인 후 사업비를 집행하되, 영농초기에 공급되는 점을 감안 예산의 조기집행 등 탄력적 운용
- 농가위임에 따라 단지대표, 농협, 왕우렁이생산자연합회, 공급업체 등에 왕우렁이 대금 일괄지급 가능

5) 사업비 집행 잔액 사용

-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왕우렁이의 수거 및 월동 방지를 위한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道 승인을 받은 후 집행

5. 담당기관(단체)별 역할

가. 道

- 벼농사 저비용 왕우렁이 농법 추진계획 수립 시행
 - 관계기관·단체, 농업인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반영
- 왕우렁이농법 권역별 교육(1~3월 중) 및 왕우렁이 수거 종합계획 수립 추진

나. 시·군

- 왕우렁이는 道내 생산업체 왕우렁이를 입식하도록 지도
- 왕우렁이 공급 시 농가별 공급일자, 공급량, kg당 개체수, 공급단가 등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공급계약 체결토록 지도
- 단지대표 또는 담당공무원의 공급확인 절차이행 후 사업비 집행
 - 영농초기에 공급되는 점과 재정 조기집행 등을 고려 친환경농산물인증 확인절차와 관계없이 조기집행 가능
 - 농가위임에 따라 단지대표, 왕우렁이생산자연합회, 공급업체 등에 지급

다. 왕우렁이 생산·공급업체

- 생산업체에서 왕우렁이 공급 시 적정밀도 유지를 위해 일정크기(kg당 900 ~ 1,100마리 기준)로 선별하여 출하
- 단지(농가) 대표와 공급 일자, 공급량, 공급단가 등에 대해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자체 검증절차를 거쳐 우량품 공급
 - 왕우렁이 공급확인서를 단지대표와 농가에게 제출
- 왕우렁이 공급 과부족시 (사)전남우렁이생산자연합회 차원에서 적정 수급대책 마련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차질 없이 공급
- 왕우렁이 도피 방지망을 반드시 설치토록 지도
 -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불식을 위해 공급업체에서 솔선 설치
- 왕우렁이 농법 실천요령 등 단지별로 현장교육 등 사후관리 추진

6. 관리 요령

<왕우렁이 관리 주요 추진 일정>

구 분	관 리 내 용	추진일정(월)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논 관 리	용·배수로 차단망 및 포집망 설치														왕우렁이 유출방지
	차단망 및 포집망 보수														
	논둑 관리														
재배 중 관 리	논 왕우렁이 적정밀도 유지														왕우렁이 수거작업
	용·배수로 유출 왕우렁이 수거														
	배수로 물길조성 및 왕우렁이 수거														
수확 후 관 리	논 말리기													왕우렁이 월동방지	
	심경 작업														
	용·배수로 물빼기														

- 벼 이앙논의 물 담수 깊이 조절, 왕우렁이 차단망 설치로 벼 육묘 피해방지 및 자연 생태계 등으로 유출 방지

가. 이앙 전·후

- 왕우렁이 입식 전 차단망 및 울타리 등을 용수로 및 배수로에 설치하고 논둑을 높여 논둑을 넘어 이동할 수 없도록 방지



<배수구 왕우렁이 차단망> <용수로 차단망 및 통발> <논둑을 넘는 왕우렁이>

- 왕우렁이 적정 투입 시기는 이앙 5일 또는 썩레질을 기점으로 하여 7일 이내에 약 1~1.2kg/10a(치패 기준)을 넣는 것이 논 잡초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 ※ 성패의 경우 약 5kg/10a 적정량
- 왕우렁이농법 인근 미실천 농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배수로 주변에 유실된 왕우렁이 및 알 제거 철저

나. 수확 후

- 관개용수 유입구와 배출구 등에 울타리(차단망) 및 포집망(통발) 설치
- 수확 전 배수로 부근 물길조성 및 먹이 주기로 왕우렁이 유인 및 수거
※ 수위가 낮아지면 물길로 왕우렁이가 이동해 쉽게 포살 가능
- 벼 수확 후 왕우렁이 동사를 위해 녹비작물 재배, 논 말리기, 심경작업(1~2월) 등 실시
- 왕우렁이 월동 우려가 높은 용수로 등의 물을 빼고 물이 흐르는 깊은 물속 왕우렁이 적극 수거

7. 예찰 및 방제 기술

가. 예찰 기술

- 왕우렁이 월동 의심 지역에 배추잎을 스티로폼에 묶어 부착 여부 확인
※ 스티로폼 조각(5×10×0.8cm)을 배추에 부착해 물웅덩이나 수로에 설치



나. 방제 기술

☞ 물리적 방법인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자재 사용

○ 벼 이앙 시기(5월)에 농수로에 오리 방사*(상류에서 하류로 이동)

* 농수로의 왕우렁이를 제거하기 위해 30㎡당 4마리 오리 방사



<그림> 농수로의 왕우렁이와 오리 방사 장면

○ 이프로벤포스입제 6kg/10a(관행 농가 대상, 방제효과 93.6%)

8. 교육 및 홍보

○ (교육) 친환경 인증사업자(벼 인증농가) 의무교육 시 관리방안 교육 편성* 및 벼 관행 농업인 대상 교육 강화

※ (현행)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의 이해,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개선) 현행 + 왕우렁이 관리요령 및 방제기술(벼 재배농가 대상)

- 배수로에서 올라온 왕우렁이가 왕우렁이농법 미 실천담 필지에 피해를 유발하므로 농업인에게 수거 교육 강화

- 왕우렁이농법 실천 농가가 출선하여 수거토록 교육(불이행 시 사업비 회수)

- (홍보) 투입한 왕우렁이를 의무적으로 수거해야 함을 사전에 공지하고, 사용 농가 대상 관리요령 및 방제기술 등 홍보 강화
 - 매 체 : 유관 기관·단체(시·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생산자단체 등) 홈페이지, 반상회보 및 이장단 회의자료 등에 게시
 - 현수막 : 농관원(지원·사무소), 읍·면·동 사무소, 지역농협 등 농업인 방문이 많은 지역 소재 현수막 게시 홍보(기관 공통)

“왕우렁이” 활용도 중요하지만 관리(수거)가 더 중요합니다!
- 자연 유출 차단망 설치, 농수로 왕우렁이(알) 제거 필수 -

9. 행정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 : 2020. 3. 31.(보고서식)
- 시·군 자체적으로 「왕우렁이 일제 수거기간」을 지정 운영
 - 필지별, 들녘별(용·배수로 포함)로 수거계획 수립 추진
 - 간척지, 일반 담 왕우렁이 공급 시 시군에서 신중히 검토 후 결정
 - ※ 왕우렁이 피해민원 등이 발생 시에는 시군에서 적의 처리
- 추진실적 제출 : 2020. 7. 31.(보고서식)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 2021. 1. 15.
 - 시군에서는 사업지침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서식]

1. 사업계획서

(단위 : ha, kg)

단 지 명	계획면적 (ha)	왕우렁이 소요량(kg)	공급계획		
			업체명	업체 소재지	공급량(kg)
계					

※ 10a당 왕우렁이 소요량 1.2kg 기준

2. 왕우렁이 공급실적

① 농업인 교육·홍보실적

○ 교육실적 : 회, 명

- 일자별 :

○ 홍보실적(홍보매체별)

-

-

② 왕우렁이 실적

(단위 : ha, kg)

단 지 명	공급면적 (ha)	왕우렁이 소요량(kg)	공 급 내 역		
			업체명	업체 소재지	공급량(kg)
계					

③ 기타 특이사항

○

3. 사업비 정산 : 2021. 1. 15.까지

○ 사업비 집행

(단위 : ha, 원)

단지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도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단지명	공급면적 (ha)	공급량 (kg)	단가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참 고]

농법별 제초비용 절감효과(10a)

구 분	왕우렁이	큰 왕우렁이	제초제
살포시기	씨레질 직후	모내기 후 5일 이내	모내기 후 7~10일
살포량	1~1.5kg(평균 1.2kg) ※ kg당 900~1,100마리	3~5kg(평균 4kg) ※ kg당 250마리	제제별로 상이
소요비용 (구입비)	10,000~15,000원 (평균 12,000원)	15,000~25,000원 (평균 20,000원)	24,000원 (초·중·후기, 3회 살포)
제초비용 절감효과	○ 큰 왕우렁이 대비 8,000원(40%) 낮고 ○ 제초제 대비 12,000원(50%) 절감가능	○ 제초제 대비 4,000원(17%) 낮고 ○ 왕우렁이 대비 8,000원(40%) 추가소요	○ 왕우렁이 대비 2배 이상 추가 소요 ○ 큰 왕우렁이 대비 20% 추가 소요
비 고	○ 제초효과 99% 이상 입증('09 농업기술원) ○ 큰 왕우렁이 제초효과 (95%) 보다 좋아 농가 에서 호응	○ 양식기간이 50일 이상으로 길어 사료 투입량 증가 등 양식 비용 과다 소요 ○ 제초효과 95%	○ 화학적 제초제에 내성이 강한 일명 '수피잡초'방제 제초효과 낮음

[공급업체 보관용]

왕우렁이 확인서

(No :)

공급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성명 (연락처)
	양식장 소재지	
	생산지역 확인	(사)전남우렁이생산자협의회 확인
공급농가	주 소	(성명)
	공급가격(kg/ 원)	왕우렁이 , 기타
	공 급 량	kg(왕우렁이 , 기타)
	공급일자	2020. . .

----- (절취선) -----

[단지(농가)제출용]

왕우렁이 확인서

(No :)

공급업체	업 체 명	대표 (인)
	대 표 자	성명 (연락처)
	양식장 소재지	
	생산지역 확인	(사)전남우렁이생산자협의회 확인
공급농가	주 소	(성명)
	공급가격(kg/ 원)	왕우렁이 , 기타
	공 급 량	kg(왕우렁이 , 기타)

위와 같이 제조용 왕우렁이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귀하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

나.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제16조~제23조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12,402	12,702	14,800	14,800
국 고 100%	12,402	12,702	14,800	14,800

2.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원 가능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농산물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일체
- 지원대상 농지 : 2020년 사업기간(1월 ~ 10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 사업기간 중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경운 등 경작 흔적 또는 울타리 등 경계표시에도 불구하고, 인증필지의 경계를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필지. 인증필지 내에서도 식재 예정지 등 재배에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
- 자연 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필지
-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필지(토양 관리가 이루어지는 원목재배 형태 버섯재배는 지급대상에 포함)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

마.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재원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국고 100%

- 지급단가 (단위: 천원/ha)

인증단계	논	밭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	700	1,400	1,300
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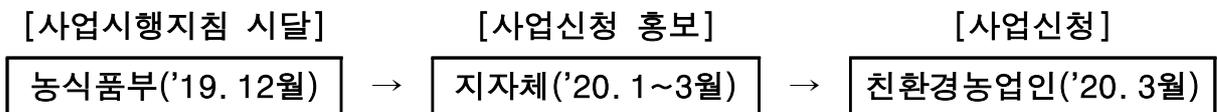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하되 채소·특작·기타와 과수로 구분하여 지급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 ~ 5.0ha
 -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신청 면적 합이 5ha를 초과할 수 있음. 이때 각 구성원의 지급한도는 5ha를 초과할 수 없음.
 - * 예시) 법인에 소속된 개별 생산자 A(7ha), B(6ha), C(4ha)의 경우 법인 대표가 14ha를 신청, A, B, C는 각각 5ha, 5ha, 4ha에 대한 직불금 수령
-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기지속직불금은 수령 가능
 - 같은 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유기·무농약)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3회) 지급, 유기인증의 경우에는 추가 2년(2회) 지급
 - * 최초 인증필지(유기·무농약 인증 종류 무관) 3년(3회) + 유기는 추가 2년(2회) 지급
 - 신청기간 이후(당해년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무농약→유기 또는 유기→무농약)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불금 지급
 - * 이행점검 종료일(10.31.)을 기준으로 함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5회)간 지급 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

3.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 신청 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관원, 인증기관 등에 시달('19. 12월 ~ '20. 1월)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 홍보('20. 1월 ~ 3월)

2)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농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20. 1월 ~ 3월)
 -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 게시판 공고(시·군·구, 읍·면·동), 반상회보 게재 등
 - * '19년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읍·면·동)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기간 중 인증이 종료 예정인 농업인에게는 향후 인증 종료 전에 인증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공지

3)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 (개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필요시)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 신청서류 :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친환경농산물인증서(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
 - (생산자단체) 단체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신청내역을 종합하여 단체 명의로 공동 신청 가능
 - * 신청서류 : ①, ②와 신청인 정보, 입금계좌, 인증종류, 품목, 농지 소재지, 재배면적이 포함된 세부 신청 현황
- 신청기간 : '20. 3. 1. ~ 3. 31.(전산입력 기간 : '20. 3. 1. ~ 4. 10.)
 - * 농업경영등록정보를 참조할 수 없는 임야 등 필지는 Agrix에 개별 자료 입력 필요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동일 시·군·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 신청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 '19년 중 신규 인증을 받은 필지는 '20년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20년 중 반드시 인증갱신을 통해 '20. 1. 1. ~ 10. 31.까지 인증기관의 관리가 지속되어야 함(인증기간 종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 인증기관의 관리 중인 것으로 인정)

나. 사업자 선정 단계

1)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 시장·군수 등은 농업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20. 5. 10.까지)

- 신청 자격, 논·밭 구분, 인증단계별 지급단가, 농가당 지급한도, 지급기간 초과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 제외 및 지원단가 조정
- * 읍·면·동 담당자는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참고하여 인증기간, 인증필지·면적 등을 반드시 확인

2) 신청내용 변경

○ 변경대상

- **(사업대상자 변경)**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
 - * 사업대상 필지의 경작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직불금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급
 - ** 인증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직불금 최종 수령일 전까지 인증정보 변경과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인증기관)**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농약)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신청농지의 주소(지번) 변경, 필지수 및 면적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 상의 농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 * 인증대상자,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연속되어야 함(인증기간 종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 포함)

○ 변경신청 기간 : 변경 및 승계 승인일자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해당 시·군·구청장(읍·면·동)에게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
 - 변경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Agrix 운영기관(1588-6830)에 변경기능 허용 요청 후 자료입력(Agrix 운영기관은 시·군·구청장의 요청 시 즉시 조치할 것)

3) 사업량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량 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5. 20.까지)

4)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시·군·구)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시·군·구 → 신청인 5. 31.까지)
 - 시·군·구에서는 배정된 사업량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지[별지 제2호 서식]
 * 단, 이행점검 결과 등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다. 이행점검 단계

- 시·군·구 및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 대상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제40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농업 이행 여부 및 인증 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
- 기관별 점검 사항
 - (농관원) 인증정보의 유효성 전산 검증
 - * 인증정보(인증번호, 인증사업자, 인증면적 및 필지 등과 직불금 신청정보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지자체에 전송
 - (시·군·구)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지급한도 초과 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
 - * 농관원이 전송한 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인, 인증기준 위반 의심 농가는 현장점검 의뢰
- 이행점검 요청(시·군·구 → 인증기관)
 - 시·군·구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대상자의 신청정보에 대해 인증기관에 전산검증 요청('20. 5. 21.까지)
- 이행점검 기간 : '20. 5. 21. ~ 10. 31.
 - (시·군·구) 농관원에서 회신한 전산검증 결과 확인 후 조치
 - (인증기관) 인증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농가 발생 시 농관원과 협조하여 생산과정조사 등 추진
- 점검 결과 회신(인증기관 → 시·군·구)
 - 인증기관에서는 인증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여 시·군·구에 회신(정기/수시, '20. 10. 31.까지)

라.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 1)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통보 결과를 참조하여 이행점검을 마감하고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
 - 인증 취소, 인증기간 종료, 신청 포기, 면적 불일치 등 부적격자(필지) 제외
 - 사업비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자체별로 지급소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20. 11. 10.까지)
- 2) 사업비 배정 및 보조금 지급(농림축산식품부 → 시·군·구)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별 친환경농업직불금 소요예산액 교부('20. 11월)
 - 각 시도(시·군·구)는 친환경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20. 11월)

마. 자금집행 후 관리단계

1) 사후관리

-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연도 내(1. 1. ~ 10. 31.) 인증취소, 인증종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종료(10. 31.) 후에도 당해연도 말(12. 31.)까지 친환경농업직불제 대상농가에 대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여부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

2) 제재

- 농업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조치
 - 환수절차 :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각 시·도지사는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보고

4. 평가 및 환류

가.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1년도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붙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21. 3. 1. ~ 3. 31.)

[별표]

사업 추진체계

<세부계획>	<시기>	<주요내용>
① 지침시달 및 홍보	('19.12월~ '20. 3.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시달 (농식품부) ·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 (시·군·구, 읍·면·동)
② 사업신청	(3. 1.~3.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농지소재지 읍·면·동)
③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4. 1.~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4. 30.) · 선정결과 보고(시·도 → 농식품부, 5. 10.)
④ 사업량 배정통보	(5. 11.~5.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식품부, 5. 20.)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농업인 통보 (시·군·구 → 신청인, 5. 31.까지)
⑤ 이행점검	(5. 21.~10.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자 명단을 인증기관에 송부하고 이행 점검 요청(시·군·구담당자, 5. 21까지) · 이행여부 확인결과에 따른 확인·수정 후 이행 점검 재차 요청(읍면동담당자) · 인증기관에서 이행점검 결과 통보(인증기관 → 시·군·구, 10. 31.까지)
⑥ 사업대상자 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11. 1.~1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격대상자 검토 후 이행마감 조치를 통한 소요액 신청(시·도 → 농식품부, 11. 10.까지)
⑦ 보조금 지급	(11. 15.~1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예산액 교부(농식품부 → 시·도, 11월) · 보조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11월말)

[별지 제1호 서식]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3.18>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재배 면적 (㎡)	쌀소득등보 전직불제 대상여부 (O,X)	과거 지급현황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0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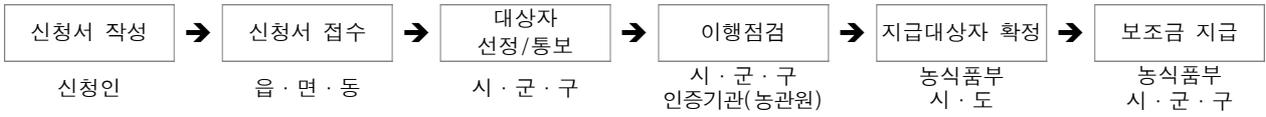
첨부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2. 친환경농업직불금 세부 신청 내역	수수료 없 음
제출 및 처리기관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	
근거 법조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0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에 따라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 방법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란에 개인은 생년월일을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3.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도, 시·군·구, 읍(면)·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4. “계좌번호”란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5. “인증종류”란에는 유기, 무농약 중 하나를 적습니다.
6. “품목”란에 대분류에는 곡류, 채소, 과수 기타 중 하나를 적고, 소분류에는 실제 경작품목명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담당 직원이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직불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업농등 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지방 농업정책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업정책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친환경 농업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발농업보조금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약정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약정 종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3.18>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1. 인 적 사 항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2. 지급대상 농지

구분	인증 종류	실제경작 품 목	농지 소재지				지급대상 면적(m ²)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대상여부 (○,×)	지급 보조금 예상액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지급보조금 예상액 합계									

※ 1ha=10,000m²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1조제1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귀하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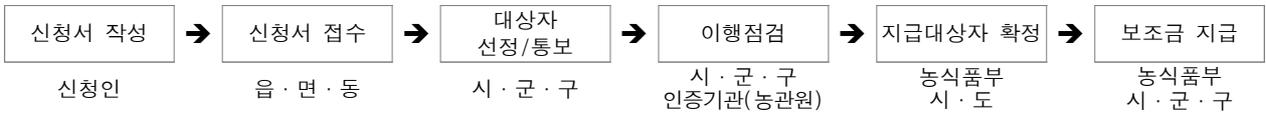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직인

작성 방법

- ① 신청인: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변경 신청인(법인 포함)의 인적사항을 기재
 -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생년월일 동시 기재
- ② 신청 변경사항
 - 사업대상자: 당초 신청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승계한 경우
 - 인증기관: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농약)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신청농지의 주소변경, 필지수, 면적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상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 ③ 입금계좌: 신청내용 변경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할 농업인의 계좌를 기재

처리 절차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담당 직원이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직불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업농등 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지방 농업정책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업정책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친환경 농업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발농업보조금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약정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약정 종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농업 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11 유기질비료 지원



1. 사업개요

가. 목 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나.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다. 성과목표 및 지표

- 유기물 함량(부지표) : 논, 밭 등 농지 유기물 함량을 2~3%수준 유지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 시기	측정방식
		'17	'18	'19.		
· 유기물 함량 (%, 부지표)	2~3	· 논·밭: 2.0 이상 · 과수·시설: 2.5이상	· 논·밭: 2.0 이상 · 과수·시설: 2.5이상	· 논·밭: 2.0 이상 · 과수·시설: 2.5이상	매년 1월	흙토람을 통해 조사된 전국 농경지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 함량(%)

라.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천톤,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안)	2021년이후
물 량	3,200	2,980	2,680	2,680	2,680
국고(보조)	160,000	149,000	134,100	134,100	134,100

마. 전남 사업 추진 계획

(단위 : 천톤,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안)	2021년이후
물 량	500	500	501	526	526
국고(보조)	26,680	26,585	25,578	27,648	27,648

2.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부여
 - 2019년도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대상농가의 경작필지는 2020년 유기질비료 50% 이내로 지원
 - 2020년도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다.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 (이하 “지원대상 비료”이라 함)
 -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 업체 1개 비종 공급이 원칙이나 발효시설 등 주요시설(발효시설 및 후숙시설)이 구분 설치되어 있을 경우 2개 비종 동시 공급 가능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농업협동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통하여 구입하는 지원대상 비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 제조업체가 살포를 대행할 경우 살포비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 할 수 있음 (지방비는 살포비에 우선 지원하고 단가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 지원)
 - 살포를 대행코자하는 제조업체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살포업체 지정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살포대행 살포업체 지정시 살포에 필요한 장비 등이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수송차량, 살포차량 및 자체계량기 또는 전문업체 이용시 계약서 등)

마.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국고, 지방비, 농협지원금 등
- 지원조건 : 보조(국고 800원~1,1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이상)

○ 지원단가

- 국고(정액지원)

(단위 : 원/20kg)

구 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1,100		
부숙유기질비료	1,100	1,000	800

- 지방비(도비+시군비) : 600원/20kg 이상 정액의무 부담 단, 시·도간 예산전배 등에 따라 국고가 추가 배정된 경우 의무부담에서 제외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방비를 600원/20kg 이상 추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추가지원액에 대한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품질등급제 운영취지에 따라 등급별 차등 지원해야 함.

3.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신청단계

시·군·구(읍·면·동),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조합)

- 읍·면·동은 시·군·구의 사업계획과 Agrix로부터 통보받은 참여업체별 계약 비중과 품질등급·생산비중·제제형태·제조원료·배합비율·판매(예정)가격 및 사업신청기한 등을 농업인에게 홍보 및 안내(시·도, 시·군·구 소요예산 등 협조)
- 각 조합은 사업지침 변경내용, 농업인 신청가능 비중 등을 읍·면·동에서 안내할 수 있도록 11월초까지 읍·면·동에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등) 배부 및 농가안내문 발송 등 조치

농업인 등

- 농업인은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부속유기질비료에 한함), 신청물량(포), 공급 시기(월 단위)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신청 기간 내에 해당 읍·면·동에 신청
 - 사업 신청기간 : 2019년 11월 5일~12월 4일(30일간)
 -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별로 1건으로 작성하되, 동일 시군구내에 농산물과 엽연초를 모두 재배하는 경우는 신청서를 각각 작성 제출(농산물 1건, 엽연초 1건)
 - 과거 공급내역이 [별지 제1호 서식]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경우는 해당 신청서를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신청 가능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농가별 공급량 결정 단계 및 비료 공급단계에서 경영체 등록여부 확인(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사업 제외)
 - 농업인은 사업신청내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 신청서에 '전년 동일'로 체크하여 신청
 -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기존, 3~5년간으로 일괄 신청한 농가도 신청하도록 하여 농업경영체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 비료 공급희망 업체는 농업인이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기재할 수 있으며, 기재하지 않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시군구(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에서 선정
 - * 해당 업체에서 공급하는 비료량이 50포 미만(마을 단위 합계)으로 적거나 운송거리가 먼 경우, 해당업체의 공급능력을 초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부득이한 경우 업체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물량은 해당 경영체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비종별 비료량을 포대단위(20kg/포대)로 기재하며, 실제 공급량은 국고 등 예산형편에 따라 신청량보다 적게 공급될 수 있음
 - 가축분퇴비·퇴비는 농업인이 신청하는 등급으로 공급하되, 업체 및 등급별 신청·공급 물량의 수급 등 여건을 감안하여 다른 등급으로 조정될 수 있음
 - 높은 등급의 비료의 공급량에 비해 신청량이 적어 공급 잔량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를 낮은 등급 신청농가에 우선 공급 가능(가격은 신청 등급을 적용)
 - * 예) 특등급을 신청한 농업인이 적어 특등급에 잔량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를 1등급 신청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 가능(1등급은 2등급으로 공급 가능)
 - 높은 등급의 비료의 공급량에 비해 신청량이 많은 경우 초과 신청량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 등급으로 공급 가능(가격은 공급 등급을 적용)
 - * 예) 특등급 공급량에 비해 신청량이 많은 경우 초과 신청량에 대해서는 1등급으로 변경하여 공급 가능(1등급은 2등급으로 공급 가능)
 - 등급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1등급(기준등급)으로 간주하여 공급
 - 해당 농업인이 요청하는 경우 최종 공급량이 결정되기 전에 신청물량에 대해 우선 공급이 가능하며, 이런 경우 최종 공급량 결정 이후 국고 지원물량 범위에 포함되는

물량은 지원액(국고, 지방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자부담하고, 국고 지원물량을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전액 자부담

* 지자체의 신청정보 기준으로 농협에서 우선 공급하되, 상기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 추진(필요시 확인서 징구)

- 공급시기는 작물재배 시기 등을 감안하여 1~12월까지 월단위로 지정

* 최초 10월말까지 수령 신청한 농업인이 10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물량의 수령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작하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농업인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공급희망 농협, 작목반장 등을 통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등기>,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

- 경작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이 다른 경우로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시·군·구는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고,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함.

- 또한 신청인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시·군·구)이 다른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동장은 관내경작자(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의 기준에 따라 처리

- 농업인은 신청서에 유기질비료 자부담 비용을 납부할 ‘공급 희망조합’을 지정하여야 함. (Agrix에서 지원하는 조합정보 활용 및 제공)

• 조합원인 경우는 신청 농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소재하는 조합(품목조합 포함) 중 자신이 가입한 조합을 지정

* 다만, 타 시도 소재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조합을 공급희망조합으로 지정 가능

* 농협중앙회(경제지주)는 사업 신청 10일전까지 조합별 조합원 가입내역을 Agrix에 제출

• 조합원이 아닌 경우는 접근성, 운송비 등을 고려하여 신청농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소재 조합 지정

* 조합원이 자신이 가입한 조합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는 비조합원으로 간주하여 신청 농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소재 조합 지정

• 엽연초조합원의 경우는 공급회사와의 계약을 엽연초조합중앙회가 추진하고, 조합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타 시도 소재 엽연초조합을 공급희망조합으로 지정 가능

나.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구,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조합)

○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에는 시·도지사)은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구성하고 농가별 공급물량, 공급업체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확정

-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 협의회는 시·군·구 담당공무원, 농협 시·군지부, 지역조합 구매담당 직원, 농업인, 관련 전문가 등 6명 이내로 구성(사업실시 연도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부속유기질비료 생산 조합 및 업체 관련자 제외)
- 협의회는 농가가 신청한 공급업체에 대한 생산여건, 제품의 품질, 주문물량 공급가능 여부, 운송거리, 생산능력 초과여부 등을 검토한 후 공급업체로 결정하되,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른 업체로 변경 가능
 - * 부속유기질비료 생산 업체별 공급능력(계약물량) 및 잔량 등은 Agrix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의회는 업체별 계약물량 대비 현재 신청량, 잔량 등을 활용하여 공급업체 선정
- 농가별 공급량은 농가 신청물량, 재배면적, 재배작물, 관련 통계자료(품목별 전국 평균 신청량 등) 등을 고려하여 확정
 - * 농가 신청량이 품목별 단위면적별 전국 평균 배정량 이하인 경우는 우선 배정(농가 신청량 대부분 인정), 전국 평균배정량을 초과하는 신청량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부체계, 품목, 재배방법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추가 배정(농가 신청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 Agrix 자료 마감 시 신청인의 사망여부, 농업경영체 및 필지 등록 여부 최종 확인
- 귀농인 등이 신규로 농지를 구입하였거나 임차한 경우나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접수종일 경우 등 '20년 영농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도 선정

- * 단 공급 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후 공급(농협경제지주)
 - * 영농계획 증빙 자료 :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업경영계획서 포함), 농지임대차 계약서 등
 - 협의회는 업체별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공급되지 않도록 농가별 공급대상업체 선정
 - * Agrix시스템 관리자는 업체별 공급한도물량을 시스템에서 제공하여 공급대상 업체별 한도물량을 초과하여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
 - 특히, 관내 농가에 정부보조금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 질 수 있도록 특정농가에 대한 과다·과소 배분, 특정작목 우선 배분 등 금지
 - 협의회는 질 좋은 퇴비 생산업체를 우대하되,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적절한 행위, 품질 낮은 유기질비료의 농가공급 금지
- 농협중앙회(엽연초조합)는 농식품부 Agrix 자료(시·군·구 선정자료)를 통보 받는 즉시 시·군지부, 관할 지역농협, 지역축협 및 품목농협에 통보
- * 정보의 교환은 전산통보(DB)가 원칙이며, 전산오류 등인 경우 일시적으로 엑셀파일 등으로 정보교류는 가능하나, 전산 복구시 엑셀 파일 등은 모두 삭제 조치
 - * 시·군·구는 농협(시·군지부, 지역조합)이 사업대상자 신청누락, 전산오류 등을 확인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한다.
 - * Agrix 자료가 농협중앙회(엽연초조합)로 전달된 이후 Agrix 자료의 변경은 불가
 - * 농협중앙회(엽연초조합)는 필요한 경우 사업 정산자료를 Agrix로 제출(사업이 종료된 후 연간 정산자료 제출)
- 각 조합은 시·군·구의 사업대상자 선정내역 등을 농업인에게 공지(인수 날짜 및 장소 등 확인)하고 공급 실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와 동시에 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
 - 공급과정에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 조합에서 농가의 변경신청서, 폐업, 납품 거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해당 농가의 배정예산 이내에서 변경(단, 농가가 변경되는 경우는 사전에 시·군·구와 협의)
 - 매월 변경결과를 정리하여 해당 시·군·구에 제출(가급적 전산 통보)
 - 기타 변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농협중앙회(경제지주)에서 마련 시행

다.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조합)

《공급업체 선정 및 공급가격 결정》

○ 선정기준

-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고 “지원대상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또는 영업초조합중앙회가 지정하는 공급업체에 한해 다음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 제 외 대 상 >

- 임원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공급계약 체결 시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계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한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미납업체
-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체
- 2019. 12월말 까지 [별표 1]의 사업 참여 제한기준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 농협중앙회장 및 영업초조합중앙회장은 회계질서 문란행위 방지와 불량 비료의 유통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외대상을 정할 수 있음
-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군·구청장이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2019년도에 받지 않은 업체·부산물비료의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품질등급 평가를 2019년도에 받지 않은 업체
 - * 2020년도 신규 참여업체 제외
- 농업관련전문교육기관,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및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이하 “비료협동조합”라 함)이 실시하는 유기질비료생산업체 품질관리교육을 4시간 이상 받지 않은 업체는 익년도 사업참여 제외
 - * 단 신규 참여업체는 제외
- 발효시설(통풍식 또는 교반식)에서 유기물을 미생물에 의한 충분한 발효(부숙)과정과 후숙시설에서 후숙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한 부산물비료(부숙 유기질비료 생산능력 조사 기준에 따라 제품생산) 생산업체와 작물의 영양공급과 토양에서 화학적 변화와 토양의 물리성 개선조건에 맞지 않은 부산물비료를 생산한 업체
 - * 예) 생석회를 혼합하여 안정화하여 생산한 부산물비료

- 농협중앙회장 및 영업초조합중앙회장은 정부사업 공급업체 선정기준(비료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원료 등 품질관리 기준, 공급업체별 생산능력 등 포함)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한 후 공지

○ 선정절차 등

- 정부사업 참여 공급업체 선정의 신청자격, 신청서류, 선정절차, 선정업체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장 및 읍연초조합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급업체 또는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신청자격, 생산능력 등에 대해 현장 확인 실시
- 사업 신청 개시 10일전까지 공급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를 경유하여 Agrix 시스템에 반영(공급 업체명, 소재지, 비중, 생산능력, 공급가능 잔량 등 신청시 참고자료 포함)
 - * 업체의 생산능력은 별지 5호 서식의 발효시설 및 후숙장 생산능력 산출방법과 별지 5-1호 서식의 부숙유기질비료 생산능력 조사(양식)에 따름

○ 농협중앙회장 및 읍연초조합중앙회장은 구매가격(업체납품가격) 및 공급가격(조합판매가격) 결정방법과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

- 비료업체에서 공급한 제품에 품질위반, 등급하락 및 원료별 투입비율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세부적인 배상 및 환수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여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 * 국비, 지방비, 자부담에서 각각 동일비율로 배상 및 환수되도록 관리

《 공급 방법 》

○ 공급기관 :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농협 및 읍연초조합

- 농업인이 제출한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시된 희망 공급조합이 공급. 다만, 농업인이 신청서에 ‘공급희망조합’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수정한 후, 그 내용을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

○ 공급시기 : 1~12월

- 농업인이 10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물량은 포기물량으로 간주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군·구에 통보해야 한다.
 - * 최초 11~12월에 수령하기로 신청한 농업인이 10월말까지 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령 포기 의사를 밝힘 경우 동 물량을 포함하여 시·군·구에 통보해야 한다.

○ 공급단위 : 포대(10kg, 15kg, 20kg), 톤백(500~1,000kg)

○ 공급방법

- 조합은 공급업체에서 직접 농가에 공급하도록 발주하고, 조합 담당자가 실물공급 여부를 확인
- 공급업체에서는 농협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농가에 비료를 공급하기 전에 해당 농협에 배송정보를 미리 입력하여 공급시기를 통보하여야 함
 - * 배송정보 없이 농가에 공급한 비료에 대해서는 공급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조합에서 농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됨
- 조합에서는 배송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업체에서 공급할 대상 농가, 농가별 물량,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부숙유기질비료에 한함) 등을 파악하여 기록하고 인수확인 대상일 경우에는 현장 확인

* 농가당 500포(20kg기준) 이상 공급되는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고, 500포 미만 공급 농가에 대한 인수확인은 농가인수증 및 자부담금액 수납으로 확인

- 공급업체는 농가 배송 완료시 농가의 인수증을 받아 조합에 제출(톤백 공급시 계량 확인서 첨부)

* 인수증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한 양식을 반드시 사용

- 톤백으로 공급시에는 자체계량기를 설치하여 계량하거나, 공인된 계량업소의 계량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자체계량기는 2년 1회 이상 계량기 검정을 받아야 함

- 살포차량(농가 차량 등 포함)을 이용하는 경우 농업인 및 조합에서 공급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톤백에 담겨진 상태의 비료를 대상으로 품질, 중량 등을 확인하여 인수하고, 인수가 완료된 후 해당 차량에 담아 운반하는 것은 가능, 다만 인수거래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것(인수 확인증, 계량증명서, 사진 등)

- 조합은 농가별 선정물량 한도 범위 내에서 비종별(등급별 포함)로 보조금 지급단가를 차감한 가격으로 판매 처리

○ 부숙유기질비료 공급시 유의사항

- 부산물비료는 포장지 또는 톤백에 품질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표시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함)

* 톤백의 경우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 포장의 우측 상단에 부착하여 보관·판매

- 공급업체별 총 공급량(시판물량 포함)은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할 수 없음

* 1개 부산물비료업체에서 2개 비종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효시설 및 후숙시설을 별도로 구분·의무표시(가축분퇴비, 퇴비) 해야 함

* 생산능력은 발효시설 및 후숙장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름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업연초조합중앙회에서는 공급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공급되지 않도록 전산망을 관리하고, 생산능력 초과물량은 정부사업 공급대상 제외

- 공급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은 농협중앙회(경제지주)·업연초조합중앙회·비료협동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조사한 연간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함

* 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OEM 제품 등)은 공급(납품)할 수 없음

- “지원대상 비료” 생산업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판매대장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조원료 기재장부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생산일지를 의무 비치(3년간 보존)하고,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함

○ 유기질비료 OEM 공급시 유의사항

-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는 유통단속 및 품질불량 등 제품하자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짐

-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와 OEM을 할 수 있음

라. 자금배정단계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조합)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각 조합의 비료 공급내역을 취합(농협 농업경영체별 공급실적 전산자료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신청
 - 영업초조합은 직접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 신청

마.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시·군·구) 및 조합에 대하여 비료공급 상황 및 자금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농림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고 자금의 부적정 지급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비료공급 및 자금 집행상황 점검
 - 대상기관 : 시·도(시·군·구) 및 조합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또는 영업초조합중앙회 합동 현지점검 등
- 점검항목
 - 비료 공급 상황, 보조금 지급 적정성 등

시·도(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비료업체에서 공급한 제품에 품질위반, 등급하락 등 위반이 발생한 경우 농협(시군지부)에서 배상 및 환수기준에 따라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비료 공급 상황 및 자금 지급상황, 농가 만족도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점검결과는 시·도에서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농협중앙회(경제지주)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비료를 공급하는 조합에서 비료업체가 공급한 제품에 품질위반, 등급하락 등 위반이 발생한 경우 배상 및 환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관리 철저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비료를 공급하는 조합에 대하여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비료 공급상황 등 현장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협중앙회(경제지주)는 이행전담점검반을 별도 운영할 수 있음

《추가신청 및 공급》

시·도(시·군·구)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농협의 유기질비료 공급시스템을 연계하여 농협의 사업포기물량 결과(10월말 기준)를 반영하여 사업 추가신청을 받음
- 사업 추가신청결과는 Agrix시스템에 입력하고 추가공급대상 및 물량을 농협에 통보
- 11~12월 수령 신청한(추가공급대상 포함) 농업인이 포기하는 경우 익년도 사업지원 시 페널티 부과(공급확정물량의 20% 축소 지원)
 - * 최초 11~12월 수령 신청한 농업인이 농협에 10월말까지 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령포기 의사를 밝히는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음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지역조합)

- 시·군·구청의 사업 추가신청결과에 따라 비료를 확보하여 공급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농협중앙회(경제지주)

- 농협중앙회(경제지주)는 비료공급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비료가 부적정하게 공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신청시 공급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생산능력초과공급업체에 대한 관리
 - 초과 공급한 물량에 대하여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익년도 공급한도량(생산능력) 적용시 초과공급물량의 2배를 삭감하며,
 - 품질관리 강화측면에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품질검사 추가 실시토록 농진청 및 지자체에 협조요청

바. 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

1)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평가

가) 검사기관의 품질검사

- 검사기관 :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대상업체 :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
 - 최근 3년간 품질기준을 위반한 적이 있거나, 현장점검 결과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사할 수 있음
- 검사내용 : 비료공정규격 및 품질등급 준수여부 등 적합 여부
 - * 다만, 품질등급 평가는 부속유기질비료에 한하며, 평가방법은 농진청 지침으로 정하되 부산물 비료 제조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년 10월초까지 지침 마련
- 검사시기 :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합동점검은 연 2회(1·4분기) 이상. 단, 민원 발생 등 필요시 수시 검사
 - 시·도주관 지자체 자체 유통점검을 연 2회(2·3분기)이상 추가 실시
 - * 단속기관의 품질검사 및 유통단속 결과는 종합하여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12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농진청·지자체 합동점검 결과는 농진청이 취합하여 보고하고, 지자체 자체점검 결과는 농식품부에 직접 보고)하고, 업체 방문단속시 원료관리실태(대장기재), 업체 자체품질검사 실시 여부 및 결과 등을 확인
- 시료채취 및 송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업체의 품질검사용 시료를「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진청고시)에 따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이하“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에 검사 의뢰
 - * 시료는 포장(톤백 포함) 또는 산물(완제품)을 보관·유통·공급 제품 중에서 채취

- 필요시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음
- '20년도에 생산실적이 없거나 그 밖의 이유로(AI·구제역 출입제한 등)으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정부사업 공급업체는 생산일정, 공급일정 등을 '20. 9. 1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생산일정 등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20. 9. 15일까지 시료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시료를 직접 채취할 수 있음

○ 검사성적 통보

-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의뢰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성적 및 등급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명단과 부적합 내역을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또는 연연초조합중앙회, 비료협동조합에 즉시 통보
- 검사성적서 통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료채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보
 -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연연초조합중앙회 통보 시는 기준미달 업체명단, 판정결과 및 품질등급 평가결과 등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신속·투명한 조치를 하도록 함
 - ** 비료품질검사기관은 농진청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으로 함

○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시 조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업체에 대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농협중앙회장 및 연연초조합중앙회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부터 부적합 내역을 통보 받은 즉시 위반업체의 비료를 공급중단·회수하고,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

○ 검사원 교육

- 농촌진흥청장은 품질검사 기관의 정부지원 비료 품질검사 담당 검사원을 지정하고 검사원을 매년 1회이상 교육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나) 부숙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자체 품질검사

- 공급업체는 부숙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출하하기 전에 반드시 유기물함량 및 부숙도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 우려되는 1항목이상을 추가로 검사하여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한해서만 출하하고, 검사 결과를 2년간 보존(단속기관 점검시 확인)
 - * 공급물량이 많은 출하성수기(1~4월)는 월 1회 이상 의무 실시

다) 시·군단위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서 공급 성수기(1분기, 4분기)에 농가 공급단계 품질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농식품부에 보고(5월, 11월)

- 협의회는 현장 검수대상(500포이상 공급농가) 가축분퇴비·퇴비 공급농가 중 표본을 추출하여 농가배송 제품의 현장검수 시 품질 점검(연간 2회 이상)
- 품질 현장 점검시 협의회 구성원을 중심으로 점검반(2인 1조) 편성
 - * 다만, 비료협동조합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3인 1조로 편성 가능
- 점검대상 선정 : 현장 검수대상인 500포이상 가축분퇴비·퇴비 공급농가 중 임의로 표본추출 하되, 최소 20~30농가를 점검(단, 지역 공급물량, 부적합품 발생 빈도 등에 따라 조절)
- 점검방법 : 품질 점검에 필요한 장비(수분·부숙도측정기)를 지참하고 배송된 가축분퇴비·퇴비의 부숙도, 수분함량, 악취여부를 간이검사
 - * 농촌진흥청은 농가 공급 현장 점검 및 부적합품 판정 방법 등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자체 및 농협 담당자 등 교육 실시
- 점검장비 : 품질점검에 필요한 검사장비(수분·부숙도측정기)는 농협에서 구비(시·군별 1~2대 이상)
 - * 농협경제지주는 주요 지역농협에 검사를 위한 공간, 기기구비 및 담당자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검사실적 관리
- 부적합품 조치 : 납품제한 조치 및 농촌진흥청에 정밀검사 의뢰 등

라) 비료협동조합에서 자체점검반을 구성하고 자체 품질점검 실시

- 비료협동조합은 자체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부사업 공급업체를 방문하여 부적절한 원료사용, 제품 품질수준 및 관리실태 등을 점검·지도
- 점검반 구성 : 비료협동조합 본부·도지회 등 18명 내외
- 점검대상 : 회원사(정부사업 공급업체 포함)
- 점검방법 : 업체를 상시방문, 생산제품의 품질을 점검하고, 점검실적을 매분기 익월말까지 농식품부 및 농진청에 보고
- 위반사항 발견시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하되, 허용원료의 사용 등 부정·불법사례의 경우 지체 없이 농진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2) 유통단속 검사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검사 이외에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유통단속 검사를 실시
- 유통단속 검사는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에 따라 실시 및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촌진흥청 주관 합동점검 및 자체유통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절차를 거치고 업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의결과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위반사실을 재확인한 후 농협중앙회장 또는 읍면초조합중앙회장, 비료협동조합에 지체없이 통보

3)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비료 품질관리

- 비료업체에서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조원료 장부, 생산일지·판매대장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주기적(10일 이내)으로 작성
- 시·도(시·군·구)에서는 비료업체정보 등 새올행정시스템의 연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현행화 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비료회수 및 폐기 처분 등의 실적을 주기적으로 입력
- 농진청, 시·도(시·군·구)에서는 시스템의 입력된 자료를 품질 및 유통검사 자료로 활용하여 업체 점검
- 농협(경제지주)은 시스템에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현황을 주기적으로 입력 보완

4)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적용은 품질검사, 품질등급 평가 또는 유통단속검사 결과를 [별표1]의 위반사항에 적용하여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정처분 등 조치결과를 적용하지 않고, 위반사항 자체를 반영하여 참여제한기준을 적용함

5) 유기질비료생산업체 품질관리교육

-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에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와 같이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기관 : 농업관련전문교육기관, 농협경제지주, 및 비료협동조합
 - 교육내용 : 비료관련법규, 사업지침, 유기질비료 비료품질관리 등
 - 교육대상 : 비료생산업체 대표 또는 소속업체 임직원
 - 교육주기 및 시간 : 연 1회이상(1회 4시간 이상)

- 농협경제지주는 교육을 관리(교육일정 사전 공지·통지, 교육내용 적절성, 출석점검 등)하고 교육 결과(교육 결과, 교육시간, 수료업체 명단 등)를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사.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측정》

- 사업성과 지표인 유기물함량은 사업시행 다음연도 3월 중 농촌진흥청을 통해 산출된 경지이용별(논·밭·과수·시설) 유기물 함량(%)을 토대로 성과 목표 달성여부를 측정

《사업비 차등지원》

- 시·도별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의지·노력·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
 - 토양의 유기물함량, pH, 유기물 공급량, 토양검정·시비처방, 유기물 토양 환원 등 토양환경 개선 및 비료품질관리 개선관련 추진 실적과 노력 평가
- 기관별 평가 협조사항(당해년 세부 평가지표 변경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시·도(시군구) : 교육·홍보실적, 지자체의 노력 등을 제출하고, 농진청, 농협 등에서 제출한 평가자료 확인
 - 농촌진흥청(농과원) : 토양환경 적정성(유기물, pH), 토양검정시비처방서 발급비율 등
 - 농협경제지주 : 토양검정 시비처방서 발급비율, 유기질비료 공급증가율,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율 등

4.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가.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나.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 :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포함)를 자신의 농업경영체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사용하는 자

다. 2021년 사업지침 신설 검토 및 준비('20.3월~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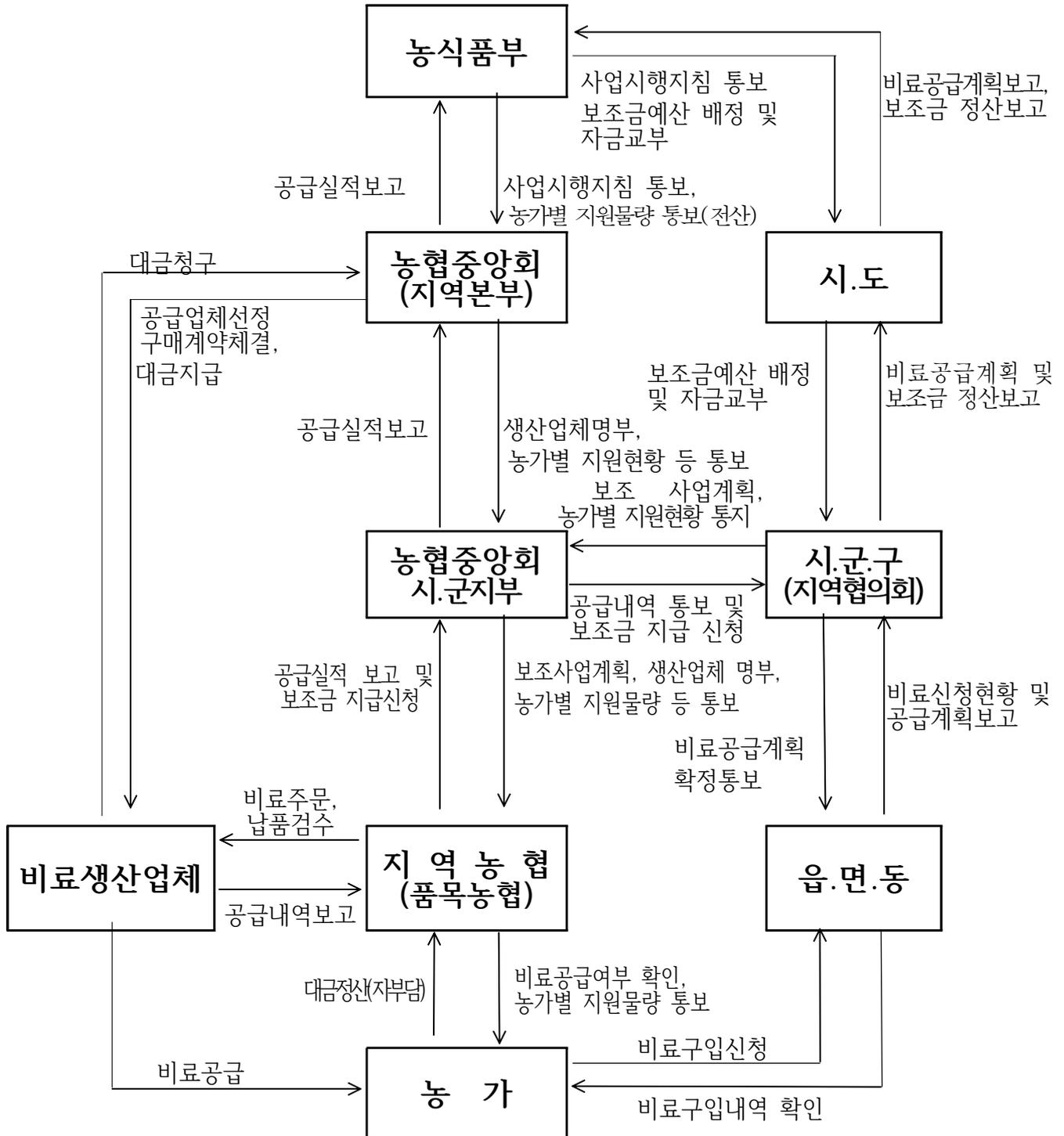
- 시·군·구 유기질비료공급협의회 역할 강화 등

[별표1]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유기질비료)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시료 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 1회 : 1년 - 2회 : 2년	
2. 유해성분량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 1년 - 2년 - 3년	
3-1. 주성분량 또는 보증성분량(용(중)량 포함) 기준미달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3-2. 그 밖의 규격(수분)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3-3. 그 밖의 규격(염분, 유기물대 질소의비, 염산불용해물 등)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경고 - 6개월 - 1년	
4-1. 부속도 측정결과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경우	- 1회 : 6개월 - 2회 : 1년	횃수는 위반 후 1년 기준
4-2. 부속 유기질비료를 최소 15일 이상의 발효과정과 60일 이상의 후숙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한 경우	- 1회 : 6개월 - 2회 : 1년	횃수는 위반 후 1년 기준
5. 비료공정규격 및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때 *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 : 폐수처리오니	- 2년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적용
6. 등록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보관·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 1년	"
7. 비료생산업 등록기준 미달	- 1년	"
8. 유해성분·주성분 및 그 밖의 규격 외의 사항 위반	- 1년	"
9. 사업참여 신청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	- 1년	
10. 부산물비료 생산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부산물비료를 보관 또는 공급한 경우(부산물비료를 공급한 업체도 동일하게 적용)	- 1년	가축분퇴비 및 퇴비에 한함
11. 공급한 비료의 품질이 불량하여 사용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2년	
12. 가축분퇴비와 퇴비를 동일장소(발효 및 부숙)에서 생산한 경우 - 가축분퇴비와 퇴비의 장소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 2년 - 6개월	
13. 품질등급 기준 위반에 대한 제한기준을 위반한 경우 - 품질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계약한 등급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 품질등급 평가결과, 1개 등급(특등 → 1등급, 1등급 → 2등급) 격하할 경우 - 품질등급 평가결과, 2개 등급(특등급 → 2등급) 격하할 경우	- 1년 - 6개월 - 2년	
14. 부산물비료의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산물비료를 생산 또는 공급한 경우(석회처리 안정화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년	

지원사업 시행체계



※ 담배경작용 퇴비 공급의 경우 농협중앙회(경제지주)의 기능은 읍면초조합중앙회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의 기능은 읍면초조합이 수행

신 청 농 지										신 청 내 용						
순번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재배예정작물,과수	노지/시설	수령	비료의 종류(순번별로 택 1)	품질등급(특/1/2)	신청물량(포/20kg)	공급시기(월)	공급희망업체(생략가능)	상품명(생략가능)	비고
3										<input type="checkbox"/> 혼합유박 <input type="checkbox"/> 혼합유기질 <input type="checkbox"/> 유기복합 <input type="checkbox"/> 가축분퇴비 <input type="checkbox"/> 퇴비						
4										<input type="checkbox"/> 혼합유박 <input type="checkbox"/> 혼합유기질 <input type="checkbox"/> 유기복합 <input type="checkbox"/> 가축분퇴비 <input type="checkbox"/> 퇴비						
5										<input type="checkbox"/> 혼합유박 <input type="checkbox"/> 혼합유기질 <input type="checkbox"/> 유기복합 <input type="checkbox"/> 가축분퇴비 <input type="checkbox"/> 퇴비						
6										<input type="checkbox"/> 혼합유박 <input type="checkbox"/> 혼합유기질 <input type="checkbox"/> 유기복합 <input type="checkbox"/> 가축분퇴비 <input type="checkbox"/> 퇴비						
7										<input type="checkbox"/> 혼합유박 <input type="checkbox"/> 혼합유기질 <input type="checkbox"/> 유기복합 <input type="checkbox"/> 가축분퇴비 <input type="checkbox"/> 퇴비						
8										<input type="checkbox"/> 혼합유박 <input type="checkbox"/> 혼합유기질 <input type="checkbox"/> 유기복합 <input type="checkbox"/> 가축분퇴비 <input type="checkbox"/> 퇴비						
9										<input type="checkbox"/> 혼합유박 <input type="checkbox"/> 혼합유기질 <input type="checkbox"/> 유기복합 <input type="checkbox"/> 가축분퇴비 <input type="checkbox"/> 퇴비						
10										<input type="checkbox"/> 혼합유박 <input type="checkbox"/> 혼합유기질 <input type="checkbox"/> 유기복합 <input type="checkbox"/> 가축분퇴비 <input type="checkbox"/> 퇴비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p>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p>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p>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p>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p>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p>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서의 생년월일, 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p>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p>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p>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p>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p>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p>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p>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판 매 대 장

□ 제품명 : ○○○○

(단위 : 원, 포)

제품생산			출 하				납품처 (공급지역)	재고량 (포)	
생산일자 (포장일자)	생산량		출하일자	포장단위 (kg)	출하단가 (원)	출하량 (포)			출하금액 (원)
	톤	포							
'20.8.14	7	350	11월20일	20	3,000	100	300,000	○○농협	250
			11월25일	20	3,000	250	750,000	○○농협	0
'20.8.15	10	500	11월21일	20	3,000	250	750,000	○○농협	250
			11월22일	20	3,000	250	750,000	○○농협	0
월 계									
누 계									

- 주) 1. 출하단가는 운송비 제외가격임
 2. 생산량의 “톤”란은 생산일지의 생산일자(포장일자)별 생산량(포장량)과 일치
 3. 톤백으로 판매시 포란에 20kg 단위로 환산하여 기입, 포장단위 란에는 톤백판매로 기입
 4. 판매대장은 생산일자(포장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표 안의 예 참조)

[별지 제3호 서식]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비료생산업자용)

원료 구입· 수입 연월일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원료의 구입처				원료의 수량 (kg 또는 l)	비고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생산국가		

장부 기재방법

1. ‘원료 구입·수입 연월일’은 원료를 구입, 무상확보하거나 수입할 때마다 그 일자(예: 2020. 1. 1.)를 기재하
 되,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연월일을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항목을 작성합니다.
2. ‘비료의 종류’는 구입하거나 수입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비료의 종류(예: 가축분퇴비, 퇴비, 혼합유박, 혼
 합유기질 등)를 기재합니다.
3. ‘원료의 종류’는 짚류, 왕겨, 톱밥, 돈분뇨, 우분뇨, 골분, 채종유박 등 구입하거나 수입한 원료의 종류를 모두
 기재합니다.
4. ‘원료의 구입처’는 원료의 공급 업체명, 그 주소와 전화번호, 생산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5. ‘원료의 수량’은 구입하거나 수입한 원료의 수량을 각 원료별로 기재합니다.
6. 다른 업체가 생산한 발효과정이 끝난 완제품은 비료의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료 구입서류는 별도보관

생 산 일 지

비종명 : ○ ○ ○ ○

(단위 : 톤)

원료투입 년월일	구 분	원료투입					부숙 및 후숙기간			생산량 (생산일자)	비고
		우분	톱밥	원료 C	원료 D	계	부숙기간 (소요일수)	후숙기간 (소요일수)	합계 (총소요일 수)		
2020.9.10	투입량(톤)	4	3	2	1	10	9.15~	10.1~	9.15~	5톤 (16.11.29)	
	투입비율 (%)	40	30	20	10	100%	9.30 (15)	11.29 (60)	11.29 (75)		
	투입량(톤)						~	~	~	~	
	투입비율 (%)						()	()	()		
	투입량(톤)									()	
	투입비율 (%)						()	()	()		
	투입량(톤)									()	
	투입비율 (%)						()	()	()		

- 주1) 원료투입량은 원료장부의 반입량
 주2) 유기질비료는 부숙 및 후숙기간 대신 생산기간을 적을 것

발효시설 및 후숙장 생산능력 산출 방법

1. 발효시설

○ 교반식

- 발효조 규격 : 길이 80m 미만과 80m 이상으로 구분 (높이는 2m 이내)
- 연간 회전수 : 길이 80m 미만은 20회전, 80m 이상은 18회전 적용
- 계산식 : (길이 x 폭 x 높이) ÷ 2 x 회전수 x 시설 수 = 톤 x 50 = 포대 수
* ÷ 2 는 퇴비의 비중을 0.5로 보기 때문에 적용함

○ 통풍식

① 강제통풍식

- 발효조 규격 : 길이(7m), 폭(5m), 높이(2m), 용벽(20cm) 기준 이내
- 표준설계도에 의한 생산시설(송풍라인 배열 간격 : 60cm이내, 송풍라인 폭 : 15cm 이내)은 규격 기준 초과 인정(높이 : 2m 이내, 전면차단문이 없는 경우 20% 차감)
- 연간 회전수 : 규격기준(70m³ 이하)은 20회전, 규격기준 초과는 15회전 적용

② 자연통풍식 (대패밥, 수피를 80%이상 주원료로 사용)

- 발효조 규격 : 길이(6m), 폭(3m), 높이(2m) 이내, 시설자재는 시멘트블럭(8인치)를 사용하여 양쪽 벽에 공기순환 구멍이 있어야 하며, 발효조와 발효조 사이는 30Cm의 간격을 두어 산소공급을 원활히 해야 함
- 규격 기준 초과 불인정, 전면차단문이 없는 경우 20% 차감
- 연간 회전수 : 브로워 및 송풍시설 없으므로 4회전 적용

③ 계산식(공통) : (길이 x 폭 x 높이) ÷ 2 x 연간 회전수 x 발효조 수 x 차단문 (유,무) = 톤 x 50 = 포대 수

2. 후숙장(교반식, 강제통풍식)

○ 후숙장 기준 : 비 가림 시설과 바닥시설을 갖춘 시설

○ 높이 산정 기준

- 콘크리트 등 벽이 있는 경우 : 콘크리트 등 벽 높이 + 추가벽면 높이
* 추가벽면(판넬, 강판 등)은 콘크리트 벽 높이의 2배까지 인정
* 산정 높이는 4m 미만은 4m로 인정하고, 4m 이상은 1.2까지 인정

○ 연간 생산능력 : 계산식에서 산출된 후숙장 생산능력의 4배(연간 4회전)로 산정

○ 계산식

- ① 콘크리트 등 벽 높이가 4m 이상이거나, (콘크리트 벽 + 추가벽면)높이가 4m 이상인 경우 = (길이 x 폭 x 높이 x 1.2) ÷ 2 = 톤
- ② 콘크리트 등 벽 높이가 4m 미만이거나, (콘크리트 벽 + 추가벽면)높이가 4m 미만인 경우 = (길이 x 폭 x 높이(4m) x 1.0) ÷ 2 = 톤
- ③ 콘크리트 등의 벽이 없는 경우
= (길이 x 폭 x 기둥 높이 ÷ 2) ÷ 2 = 톤

○ 후숙 시설은 그 외 시설과 구획으로 구분되어야 함

- * 후숙시설 증설은 공장부지 내가 아닌 경우 당해공장(농장) 경계선 내에서 인정함
- * 현장 실사 시 충분히 후숙장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 후숙 시설에 기계장치 등이 있을 경우에는 기계장치 등으로부터 2m를 제외함.

3. 조사결과 생산능력 산정

- 생산능력조사(신규 및 변경)는 농협경제지주는 농협계열 업체 등, 비료협동조합은 회원사 등의 생산능력을 조사한 후 상호 점검하여 확정

부속유기질 비료 생산능력 조사(양식)

1. 일반현황

업체명(업체코드)	성명(대표자명)	부지면적	m ²
주소	전화	건물면적	m ²

* 사진 : 건물, 발효장, 후숙장 등 3매 첨부

2. 발효장 규모

교반식	길이 × 폭 × 높이/2 × 연간회전수 × 시설수 = ()
강제 통풍식	길이 × 폭 × 높이/2 × 연간회전수 × 발효조수 × 문(유무) = ()
자연 통풍식	길이 × 폭 × 높이/2 × 연간회전수 × 발효조수 × 문(유무) = ()

3. 후숙장 규모

콘크리트벽이 있는 경우	길이 × 폭 × 높이 = ()
콘크리트벽이 없는 경우	길이 × 폭 × 높이/2 = ()

4. 기 타

특이사항 등	
--------	--

2020. 9. .

생산업체
 조사자 : (시.군)
 (농협)
 (비료협동조합)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12 토양개량제 지원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조성

나. 근거법령 :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다. 성과목표 및 지표

- 2020년까지 전국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을 157ppm으로 높이고, 밭 토양의 산도를 pH6.5로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성 과 지 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 정 방 식
		'17	'18	'19.		
·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 (ppm)	157	157	157	157	매년 2월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해당년도 토양검정결과(농과원 흙토람 토양검정결과 활용)
· 밭토양의 토양 산도(pH)	6.5	6.5	6.5	6.5	매년 2월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해당년도 토양검정결과(농과원 흙토람 토양검정결과 활용)

라.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천톤)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안)	2021년이후
합 계	88,597	75,471	82,423	83,847	83,847
국 고	57,560	50,830	51,272	54,078	54,078
지 방 비	27,756	21,784	29,008	29,769	29,769
물 량	600	522	440	458	458

마. 전남 사업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천톤)

구 분	2017년	2018년	2019	2020년(안)	2021년이후
합 계	19,102	14,816	15,874	18,176	18,176
국 고	12,867	10,134	10,805	11,606	11,606
도 비	1,870	1,404	1,521	3,285	3,285
시 군 비	4,365	3,278	3,548	3,285	3,285
물 량	140	108	111	105	105

2.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다. 지원대상

- 규산 및 석회질비료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 토양검정결과 논에도 석회(패화석 포함)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 가능함
 - ** 예산여건을 감안하여 석회포화도 60%미만 간척농지에 '부산석고'를 지원할 수 있음 (시범사업에 한함)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가신청에 의한 규산·석회질비료 구입 및 공급 및 공동살포에 소요되는 제비용
 - * 개별살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마.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지자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안)
 - 토양개량제 : (규산) 국고보조 60%, 지방비 40%, (석회)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공동살포 : 국고보조(최대지원단가) 400원/20kg + 지방비 등 000원/20kg
 - * 지역농협, 농업경영체도 여건 등에 따라 공동살포 일부 비용 부담
 - * 공동살포 국고보조는 전체 살포비용의 50% 초과 지원될 수 없음
 - 예) 공동살포비 500원/20kg인 경우, 국고보조 250원/20kg + 지방비 등 250원/20kg
 - 1,000원/20kg인 경우, 국고보조 400원/20kg + 지방비 등 600원/20kg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법정리·동 단위로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단위면적당 소요량을 산정
- 농가별 공급량은 산정한 법정리·동별 단위면적당 소요량과 농가신청의 면적을 산정하여 결정
- 단위면적당 소요량에 대해 이견이 있는 시·도(시·군·구청)에서는 농식품부에 조정요청하고 농식품부는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

3.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신청단계

농업 경영체

- 농업경영체(농업인과 농업법인)는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 마을이장이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 토양개량제는 농업경영체의 신청을 받아 공급하므로 농업경영체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해야 함
 -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하므로 경작면적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지속 필요
- 변경 및 추가 신청
 - 대상 사업연도 : 2020년
 - 변경 및 추가신청 기간 : 사업 전년도 11월 5일~12월 4일(30일간)
 - * 변경 및 추가신청은 농업인이 연중 제출한 신청서(변경)를 읍·면·동(시·군)별로 보관하고 있다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개방 기간에 입력토록 함
 -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운영기관은 읍·면·동(시·군)에서 시스템 입력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관리 및 운영 협조

나. 사업자 선정단계

농협경제지주(지역조합)

- 농협경제지주에서는 토양개량제 구매 및 공급계약 체결(전년도 11월)
 - 구매계약 체결에 따른 공급단가를 결정하여 시·도별 공급물량 확정
 - * 석회 구매업체 조건 : 석회질비료의 품질관리 및 우수제품 공급을 위하여 석회고토(입상)는 우수단체 표준제품(입상)을 우선 구매·공급
 - * 패화석은 GR인증제품(입상)을 우선 구매·공급

< 제 외 대 상 >

- 임원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공급계약 체결 시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계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한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미납업체
-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체
- 2019. 12월말 까지 [별표 1]의 사업 참여 제한기준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다.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경제지주, 지역조합)

- 농협경제지주는 적기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 철저
 - 지역별 공급계획량에 대한 토양개량제의 종류별(비중별), 월별 소요량을 근거로 적기에 공급
 - 토양개량제 공급가격은 종류별(비중별)로 전국 동일가격으로 공급함
- 친환경인증농가에게는 친환경인증농가가 사용 가능한 물질을 조립제로 사용한 제품을 공급
 - 친환경인증농가에 신청물량이 차질없이 공급될수 있도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
- 지역농협장은 지역별(읍·면·동, 리별, 마을별 등) 공급계획량을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 통보받아 농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
 - 공급단위 : 포대(20kg), 톤백(500~1,000kg)
 - * 톤백 공급시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 우측상단에 부착하여야 함
- 운송업자 및 공급업자는 물품을 현지에 수송, 해당지역의 마을이장에게 인계하고, 이장으로부터 토양개량제 공급 확인서를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지역농협은 세부 착지별 300포(20kg기준) 이상 공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고, 300포 이하 공급할 경우에 대한 인수확인인 조합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확인 (톤백 공급일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 * 마을 이장 등이 지역농협에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사진 전송한 것도 현장 확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지역농협 담당자는 전송사진을 출력하여 증거로 확보

- 마을이장은 공급업자로부터 인수받은 물량을 신청자별 공급대상면적 및 공급계획량에 의거 배분하고, 농가별로 인수물량과 서명을 받은 공급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를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농가 개별살포의 경우, 마을이장은 농가 살포여부를 점검하여 살포 확인서 [별지 제2-1호서식]를 6월말, 11월말까지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공동살포의 경우 공동살포 대행자가 살포여부에 관해 농가의 확인을 받은 후 공동 살포확인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관외 거주자에 대한 공급 물량도 공동살포를 적용하되, 관외 거주자가 공동 살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지역농협장에게 인도하고, 지역농협장이 경작자와 협의하여 살포 계획을 수립·살포

농촌진흥청(농과원), 시·도(시·군·구)

-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 실시결과에 따라 입력된 흙토람 자료를 활용하여 농진청(농과원)에서 법정리·동 단위로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산정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거쳐 Agrix에 제공
- 단위면적당 소요량에 대해 이견이 있는 시·도(시·군·구청)에서는 농식품부에 조정요청(20년 사업 11월말)하고 농식품부는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
 - * 2020(2021)년도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법정리·동별 토양개량제 소요량은 농진청(농과원)에서 2019(2020)년 11월 초순까지 소요량을 산정하여 Agrix에서 활용토록 제공
- 지자체는 농협에 신청물량 전달시 지역별로 친환경인증농가의 신청물량이 전달되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
- 각 농업기술센터는 농진청의 협조를 받아, 대표필지를 선정하고, 매년 익년도 공급대상지역을 대상으로 검정 실시
 - 각 시군에서는 매년 초 익년도 토양개량제 공급대상지역(읍·면·동)을 확정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송부하여 토양검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 농촌진흥청(식량산업기술팀 및 토양비료과)에서는 토양개량제 공급지역의 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교육 추진

- * Agrix 운영팀은 기본소요량이 적용된 지역과 검정을 통한 적정 소요량이 추천된 지역을 구분하여 토양개량제 소요량 추천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시·군·구청장은 토양개량제 살포와 관련하여 공동살포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한 토양개량제 살포를 위하여 토양개량제가 농업경영체에 공급되기 전에 공동살포 운영위원회가 정한 공동살포 대행자 선정방법에 따라 대행자 선정
 - 공동살포계획은 공동살포 및 개별살포 대상 필지의 확인, 공동살포 비용 결정, 공동살포운영위원회 구성, 공동살포 추진일정 등을 포함
 - 시·군·구청장은 공동살포계획, 공동살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공동 살포 지역의 구획 및 공동살포대행자 선정결과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장에게 통보
 - 마을이장 등 경작자 대표는 시·군·구청장이 주관하는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작업 및 지역농협장이 담당하는 살포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시·군·구청장은 공동살포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운영위원회를 구성
 - 공동살포운영위원회는 지자체 및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농협 임직원, 이장, 작목반장 등으로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7명 이상으로 함
 - 공동살포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역(2~5개 구역) 구획, 관내 특정 지역농협의 공동살포 인정여부 및 대행자 선정방법 등을 결정
 - * 공동살포 지역의 구획은 반드시 인근 지역을 묶어서 구획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관내의 살포작업이 어려운 필지가(예, 밭) 구획된 지역에 골고루 배분되도록 노력
 - * 관내 특정 지역농협이 관할지역의 공동살포를 계획하고 공동살포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지역 구획대상에서 제외
 - * 관내 특정 지역농협에서 공동살포를 하고자 할 경우 관할지역 내 토양개량제 공급필지(개별살포 필지 제외)를 모두 포함해야 하고, 공동살포 대상 필지는 당해 시군의 논면적 대비 발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밭 면적을 공동살포 대상으로 확보하여야 함
(관할구역내 밭 면적이 부족할 경우, 공동살포 운영위원회의 협조 하에, 타 지역을 포함하여 공동살포 밭 면적 확보 필요). 다만 공동살포운영위원회가 지역여건상 발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발면적 확보 조건은 제외 가능
 - 공동살포 대행자는 농축협,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기타 살포업체 등에서 선정하되 살포능력, 지역농업인의 선호도, 작업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라. 자금배정 및 살포 단계

시·도(시·군·구)

- 시·군·구에서는 분기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와 협의하여 읍·면·동 및 지역농협을 통하여 토양개량제를 농가에 공급하고, 공급결과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보조금 교부할 경우에는 농협에서 토양개량제 공급 확인서(농가별 물량과 서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함)를 공동살포 관련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공동살포확인서를 제출토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 수령·확인 후 토양개량제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동살포 확인서 수령·확인 후 공동살포 보조금 지급
 - 시·군·구는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지방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우선 지급가능

농협(경제지주, 지역조합)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장은 농협 전산시스템의 토양개량제 비종별 공급자료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농가별 물량과 서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공동살포》

- 지역농협장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동살포계획, 공동살포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공동살포 지역의 구획 및 선정된 대행자를 반영한 공동살포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 지역농협에서 공동살포를 계획하여 시·군·구의 공동살포 구획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역의 구획 및 대행자 선정의 내용은 적용받지 아니함
- 공동살포 대행자는 공동살포 완료 후 공동살포확인서[별지2-2호 서식]에 살포 대상 농업경영체로부터 살포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지역농협장은 공동살포 대행자로부터 제출 받은 공동살포확인서에 따라 실제 살포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마. 이행점검단계

《제재》

시·도(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상·하반기 현장점검 후 반기별로 공동살포 및 개별살포 결과 등에 관한 이행점검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 상반기 살포 점검 시 농식품부의 계획에 따라 지자체간 교차점검 실시

〈공동살포〉

- 시·군·구청장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대행자(지역농협 공동살포의 경우 지역농협 포함)로부터 주기적으로 살포 진행여부를 보고 받음
 -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대행자가 살포여부를 허위보고 하였을 경우 해당 살포 대행자는 향후 3년간 살포대행자 선정에서 제외

〈개별살포〉

- 토양개량제를 미살포(방치)하거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농업인은 다음 주기(3년 주기)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 1차 확인(방치 우려) : 농가와 협의하여 살포기간을 지정하여 살포하도록 조치(살포 예정일 확정)
 - * 다음 작기 사용을 희망하는 등 살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기한(6개월 이내)을 정하여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포장 등을 하도록 조치(보관·포장 예정일 확정)
 - 2차 확인(조치사항 미이행) : 살포 기간 내에 살포하지 않거나, 조치사항 미 이행시 다음 주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미살포(방치) 물량에 대한 처리
 - 미살포(방치)된 물량은 다음연도 살포대상 농지에 살포하거나 기존 농가 중 추가살포를 희망하는 농가에 제공하여 살포

- 미살포(방치) 확인, 해당 물량에 대한 처리 등은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활용
- 미살포(방치) 농가에 대한 이력관리 기능을 Agrix 시스템에 반영하여 다음 주기 공급시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조치
 - 상반기 및 하반기 토양개량제 살포시기 이후에 현장 확인 등 조치(5월, 11월)

《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

1. 품질검사

- 검사기관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
- 대상업체 :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
- 검사내용 : 비료공정규격 준수여부 등 적합여부
- 검사시기 : 업체별 연 1회(비료 생산 및 판매 성수기) 이상. 단, 민원 발생 등 필요시 수시로 검사할 수 있음
- 시료채취 및 송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업체의 검사용 시료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 기준」(농진청고시)에 따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의 시험연구 기관(이하 “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에 검사 의뢰
 - 필요시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음
- 검사성적 통보
 -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의뢰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성적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업체 명단과 부적합 내역을 농협경제지주에 즉시 통보
 - * 농협경제지주에 통보시에는 기준미달업체 명단 및 판정결과 등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신속·투명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시 조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업체에 대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농협경제지주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부적합 내역을 통보 받은 즉시 위반업체의 비료를 공급중단·회수하고,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2. 유통단속 검사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검사 이외에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유통단속검사를 실시
- 유통단속 검사는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에 따라 실시 및 조치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단속검사 실시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및 농협경제지주에게 지체없이 통보

3.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적용은 품질검사 또는 유통단속검사 결과를 [별표1]의 위반사항에 적용하여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정처분 등 조치결과를 적용하지 않고, 위반사항 자체를 반영하여 참여제한기준을 적용함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 등 제반업무에 대한 평가실시

시·도(시·군·구)

- 토양개량제 신청농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공급된 토양개량제가 신청농지에 살포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 및 점검 실시
 - 현장 점검에서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조치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 읍·면·동장은 토양개량제 신청농가가 공급을 받았는지, 공동살포 대행자가 정상적으로 살포를 하였는지, 개별살포 농가가 토양개량제를 신청농지에 살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살포시 살포대책 마련 및 추진

농협(경제지주, 지역조합)

《추가신청 및 공급》

- 농업인의 미수령 및 미살포 방치물량 살포를 위한 사업 추가 신청 및 공급
 -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과 농협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업 추가 신청 및 공급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농협이 토양개량제 공급결과를 확인하고 미수령 및 미살포 방치물량은 회수하여 추가신청을 받아 공급
 - 사업 추가신청결과는 Agrix시스템에 입력하고 추가공급대상 및 물량을 농협에 통보
- 농협(지역조합)에서는 사업대상자의 경작관계 변경 등으로 미수령 물량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추가신청을 받아 공급토록 통보
 - 시·군·구청의 사업 추가신청결과에 따라 비료 공급

바. 성과측정단계

- 토양개량제 살포결과에 대한 토양개량성과 측정은 전국 농경지 중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정하여 흙토람 시스템에 입력한 결과를 근거로 산정
 - (측정항목) 규산의 경우는 유효규산함량, 석회(패화석)의 경우 산성도
 - 전국 농경지의 토양개량을 위해 전 농경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의 신청을 받아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을 감안할 때 개량의 목표는 전국 농경지 개량효과 평균으로 설정
-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진청(기술보급과)의 협조를 받아 농경지 토양 검정을 실시하고 검정결과를 흙토람 시스템에 입력
- 농진청(토양비료과)에서는 흙토람의 전년도 토양검정결과를 토대로 토양개량 효과 산정(익년 2월말까지)
- 농협경제지주는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한 만족도 등 의견수렴
 - 농가, 토양개량제 공급 담당 공무원 및 농협직원을 대상으로 11월에 실시

사.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전년도 규산사용 필지에 대하여는 유효규산함량, 전년도 석회(패화석)사용 필지에 대하여는 토양산도를 측정하여 목표치 달성여부 평가

《환 류》

- 토양개량제 신청 및 공급이 집중되는 시기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조치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4.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가. 2021년 사업 변경 및 추가 신청

- 변경 및 추가신청 기간 : 2020. 11. 5.~12. 4일(30일간) *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토양개량제 소요량 산정
 -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지역별 토양검정결과를 활용하여 농진청(토양비료과)에서 흙토람 시스템을 통해 법정리·동별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산정하여 Agrix시스템에 지원
- 기타 사항은 2020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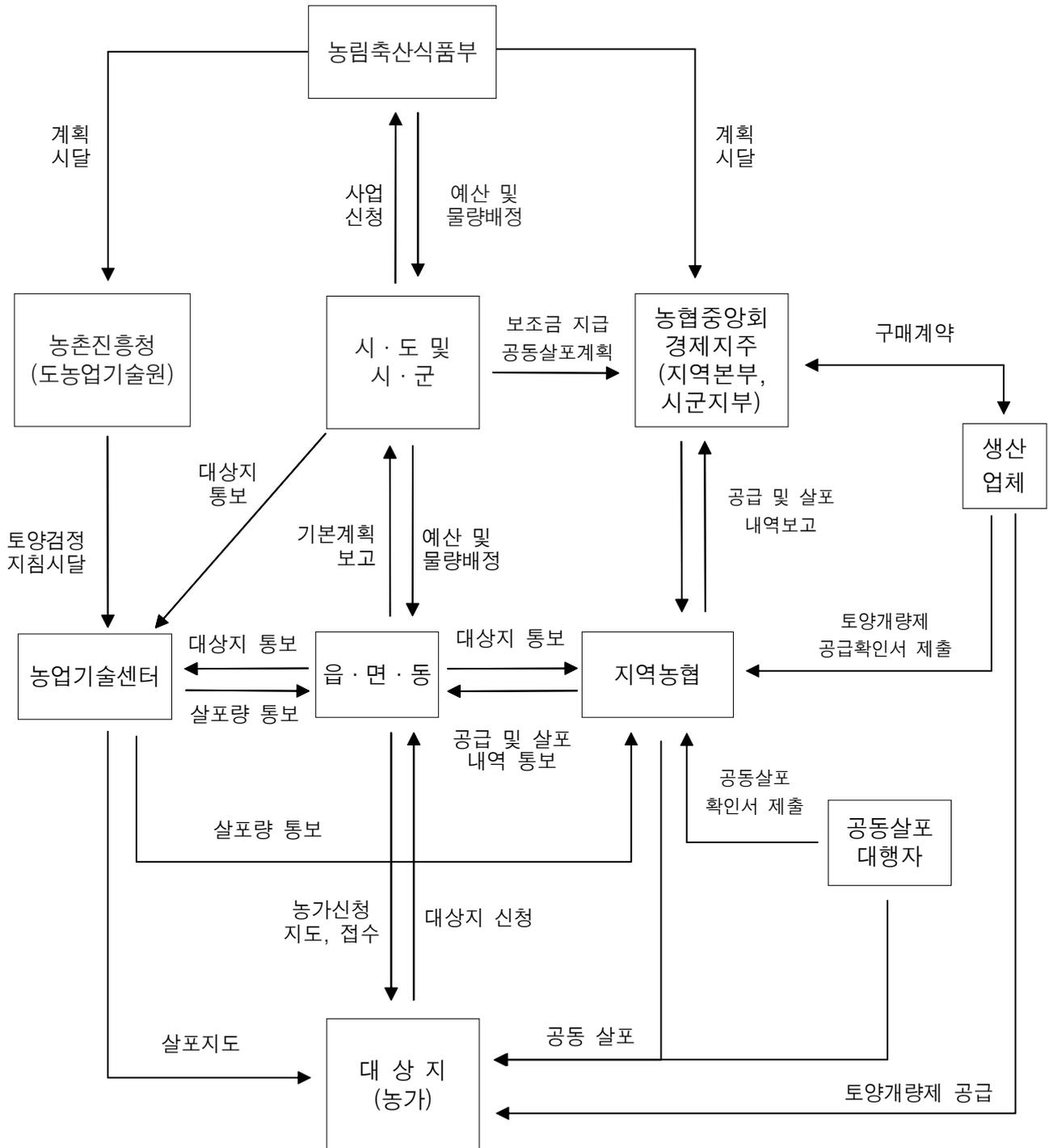
[별표1]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토양개량제)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시료 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 1회 : 1년 - 2회 : 2년	횟수는 위반후 1년 기준
2. 유해성분량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 1년 - 2년 - 3년	
3-1. 주성분량 또는 보증성분량(중량 포함) 기준미달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3-2 그 밖의 규격(분말도, 봉괴도, 염분, 입도, 수분 등) 기준미달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4.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공급한 때	- 2년	비료관리법시행 규칙 제16조 제2항 적용
5. 등록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 2년	"
6. 비료생산업 등록기준 미달	- 1년	"
7. 사업참여 신청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	- 1년	
8. 공급한 비료의 품질이 불량하여 사용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때	- 1년	
9. 무포장(벌크 형태 등)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 2년	
10. 보증표시 위반 가. 보증표시를 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생산년월일 2)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3) 생산업자 주소 및 명칭	- 6개월	
나. 보증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거나, 전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등록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5) 원료명 및 배합비율 6)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 1년	
11. 톤백으로 공급할 경우 -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에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1년	

- ※ 이 사업참여 제한기준은 위반업체의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위반한 당해 제조장에 대하여 적용)
- ※ 2개 비종 이상의 비료(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한 가지 비종의 비료가 위반되더라도 사업참여 제한은 2개 비종 이상 비료에 모두 적용함
- ※ 위 제한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비료관리법에 위반하는 사안으로 비료관리법의 처분이 영업정지 1월·2월·3월인 경우는 각각 1년·2년·3년의 사업참여 제한을 적용함
-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참여제한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참여제한 기준에 따름
- ※ 사업참여 제한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업체로서 다음연도 사업의 계약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업체의 전년 계약 물량의 30%를 축소하여 계약할 수 있음(다음년도 사업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추진 체계도



[별지 제2호 서식]

토양개량제 공급 확인서(읍·면·동단위)

○ 토양개량제 신청지역 : ○○읍·면·동

<규산질 비료>

성명①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②	신청면적(m ²)③	기준 소요량 (kg)④	신청량 (kg)⑤	확정량 (포)⑥	월별공급 희망시기(월)⑦	농가 서명⑧
홍길동	○○면 ○○리 ○○번지						서명 (포)
소계	○○리						
김민국	○○면 ○○리 ○○번지						
소계	○○리						
합 계	○○읍·면·동						

<석회질 비료>

성명①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②	신청면적(m ²)③	기준 소요량 (kg)④	신청량 (kg)⑤	확정량 (포)⑥	월별공급 희망시기(월)⑦	농가 서명⑧
홍길동	○○면 ○○리 ○○번지						서명 (포)
소계	○○리						
김민국	○○면 ○○리 ○○번지						
소계	○○리						
합 계	○○읍·면·동						

【작성 요령】

① ~ ⑦번까지는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에 따라 Agrix 시스템에서 읍·면·동 담당자가 출력하여 마을이장 또는 지역조합장에게 제공.

* 토양개량제 공급희망시기는 법정리·동 단위 확정(우기 7~8월 제외)

⑧ 농가서명 : 토양개량제 공급 시 마을이장이 공급한 농가에게 서명을 받고 인수물량 기재

* 공급이후 지역조합에서 이장 등의 협조를 받아 작성한 공급확인서를 읍·면·동에 제출

[별지 제2-1호 서식]

토양개량제 살포 확인서(읍·면·동단위)

○ 토양개량제 신청지역 : ○○읍·면·동

<규산질 비료>

성명①	주소②	신청면적 (㎡)③	공급물량 ④	공급시기(월)⑤	미살포시 향후살포시 기(월)⑥	살포 확인⑦
홍길동	○○면 ○○리 ○○번지					서명 (포)
김민국	○○면 ○○리 ○○번지					
합 계	○○읍·면·동					

<석회질 비료>

성명①	주소②	신청면적 (㎡)③	공급물량 ④	공급시기(월)⑤	미살포시 향후살포시 기(월)⑥	살포 확인⑦
홍길동	○○면 ○○리 ○○번지					서명 (포)
김민국	○○면 ○○리 ○○번지					
합 계	○○읍·면·동					

【작성 요령】

- ① ~ ④번까지는 토양개량제 공급결과에 따라 농협 시스템에서 담당자가 출력하여 직접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공하여 확인
- ⑤ ~ ⑦번은 지역농협이 마을이장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 * 지역농협은 반기별로 확인하여 읍·면·동에 제출(상반기 6월, 하반기 11월까지)
 - * 읍·면·동에서는 상기 자료를 받아 미살포 농가는 확인을 하여 살포토록 하고, 동 자료는 반드시 지역농협에서 받아 1년간 보관

13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 사업개요

가. 목 적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 기반 구축
- 퇴비 품질 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

나.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4조(농어업 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및 제38조(친환경농어업 등의 촉진)

다. 성과목표 및 지표

-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등을 원료로 한 우수 품질의 퇴비 생산

성 과 지 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 정 방 식
		'16	'17	'18P		
▪ 1등급 이상 생산업체 (%, 주지표)	97.0	80.0	95.0	96.	2020.1	○ 1등급 이상 생산업체수/ 전체지원업체수×100 * 조사 : 농진청(12월)

라.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안)	2021 이후
합 계	8,400	7,800	6,000	4,200	4,200
국 고	1,680	1,560	1,200	840	840
용 자	2,520	2,340	1,800	1,260	1,260
지방비	1,680	1,560	1,200	840	840
자부담	2,520	2,340	1,800	1,260	1,260

마. 전남 사업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안)	2021 이후
합 계	502	886	600	582	582
국 고	100	177	120	117	117
용 자	151	266	180	174	174
지방비	100	177	120	117	117
자부담	151	266	180	174	174

2.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법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정부지원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 정부지원 유기질비료지원 미참여 업체도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가능

- 광역친환경단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및 축산분뇨처리 등 관련 사업을 최근 3년내 지원받은 업체 배제

* 단, 사업신청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최근 5년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후 순위로 선정 검토

다.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지원대상

- 생산시설 : 발효시설(교반식, 통풍식), 축분전처리장(신축, 증·개축), 후숙창고(신축, 증·개축), 악취방지시설, 포장시설(자동 포장라인 및 상차로봇) 등 품질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된 시설

- 제품생산·관리장비 : 부속도축정기, 수분축정기, 퇴비살포기, 휠로더, 페이로다, 농업용 로우더, 굴삭기, 지게차 등 생산현장 장비로써 생산과정, 품질관리, 환경오염 저감에 사용되는 장비

* 지원 제외 : 압롤카, 압롤박스, 차량, 크레인 등 운반장비 및 이 사업의 목적과 관련 없는 시설, 장비

- 최근 3년간('16~'18) 사업실적, 필요성(주위 민원 및 환경오염 저감 등),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

라. 지원형태(조건)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축산발전기금(축산분뇨처리시설 내역사업)

- 사업규모

- 사업량 및 사업비 : 2개소 이상, 600백만원(국비보조 120, 국비용자 180, 지방비 120, 자부담 180)

- 지원비율(%) : 국비보조 20%, 국비용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용자조건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농·축협 연리 2.0%(3년 거치 3년 상환), 민간(개인)업체 연리 3.0%(3년 거치 3년 상환)
 - * 예산 여건에 따라 국비 용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지원한도 : 500백만원/개소

구분	국비보조	국비용자	지방비	자부담
500백만원	100	150	100	150
(100%)	(20)	(30)	(20)	(30)

* 정부지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미참여업체 지원한도 150백만원

- ① 사업대상자는 개소당 지원한도 범위내에서 필요한 개·보수시설 신청
 - 시설규모가 개소당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설치 가능
 - 시설 개체 시 한도액의 100%를 지원하고 보수의 경우는 한도액의 80%이상 지원할 수 없으며, 기존시설 철거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② 사업주관기관은 개소당 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 신청에 따라 사업량(개소)증가,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③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실제 설치비가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비용을 지원대상 사업비로 적용
- ④ 사업주관기관의 건축 및 토목기술직 공무원이 감독 및 공사감리 실시
 - 시설 개·보수 사업임을 감안 별도로 설계비 및 공사감리비는 사업비에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외부 전문가 의뢰 시 비용은 사업대상자가 부담
- ⑤ 사업주관기관은 제품의 종류, 사양 등에 따라 설치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및 가축분유질비료협동조합(이하“비료협동조합”) 등에서 제품의 가격 및 사양 정보와 기준 등을 종합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제공하되 시설 및 장비는 품목별로 발효시설 3억원, 후숙시설 2억원, 악취방지시설 2억원, 포장시설 2.5억원(로봇시설 2억원)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달청 구매 입찰 단가 등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 초과 사용 가능
 - 품질관리를 위하여 부숙도 측정기, 수분 측정기가 없거나 내구 연한이 지난 경우 반드시 사업에 포함토록 할 것
 - 퇴비살포기, 농업용로우더 등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3.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관련 사업목적, 사업량 및 세부사업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2월)
 - *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사업 수요 업체수, 소재 업체 수 등을 감안하여 정부 예산에 대하여 시도별 가내시

시·도(시·군)

- 시·도(시·군·구)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신청 공고(12월)
 - 주요 신청내용 : 목적, 신청기간, 대상자 자격,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시·군·구는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희망자를 취합하여 '20.1월 까지 시·도에 신청
-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20.2월 초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보조사업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사업신청서(붙임 서식 1)를 작성하여 1월 중순까지 시·군에 신청

나.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추천 →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 선정방식 : 예산 범위 이내일 경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시·도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되, 초과될 경우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비료협동조합 등의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현장 등의 방법으로 최종 선정
 - 선정기준 : 최근 3년('16~'18) 사업실적, 필요성, 자부담 능력 등 양질의 퇴비생산 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대상자를 선정, 악취방지관련 시설 설치 계획 수립 사업자 우선 선정
- 시·도별 예산배정
 -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서를 검토·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도에 통보

시·도(시·군)

- 우선 순위는 시·군·구에서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정심의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1월 말까지 시·도에 신청한 결과를 활용
- 사업대상자 선정은 시·군·구 추천에 따라 2월 초까지 시·도에서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신청한 결과를 활용
 - 선정방식 : 시·도 농정심의회를 통하여 서면·현장평가 등의 방법으로 선정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추진 전략, 자부담 능력 등)
 - 농식품부 신청 :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 19.9월 초까지 신청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대상자 재확정 및 교부결정(20.1~2월말)

다. 세부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시·군)를 통해 제출된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 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 조치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붙임 서식 1)에 따라 대출신청 자료를 받아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군 농정심의회의 공개 심의를 거쳐 확정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농협 경제지주·비료협동조합 등과 협조(현장 및 심의회 참석)
- 사업시행 중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서가 제출되면 시·군·구에서는 사업변경계획을 검토하여 시·도에 변경승인요청을 하고, 시·도에서는 변경 승인을 하며,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의 포기로 보조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하는 경우는 시·군·구에서 농정심의회를 거쳐 신청을 하고, 시·도에서는 농정심의회를 거쳐 확정
 - * 단, 연초 사업자선정 절차의 차순위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음

보조사업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자부담 우선 집행계획 등 자금조달 계획 등 포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를 제출

라. 사업시행

시·도(시·군)

1) 친환경폐비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구매코자 하는 시설·장비에 대한 제품특성 및 가격 비교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비료협동조합 등을 통한 제조업체별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와 기준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제공

2)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재)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과 농촌진흥청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받은 제품을 우선 구입토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하며, 유찰시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설치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사업대상 업체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보험가입금액은 계약금액의 2% 이상, 보험기간은 최소 1년 이상

3) 착공·시공 및 감리

< 착공·시공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또는 설치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토록 함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사감리 >

- 사업주관기관의 건축 및 토목기술직 공무원이 감독 및 감리
- 사업주관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설치업체에 대해 설치중지, 하자보수, 재설치 명령 등을 취하고, 향후 사업참여 제한
- 사업주관기관은 설치 등 사업이 완료되면 완료 검사 및 정산 실시

보조사업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 시행전 해당 시·군을 통해 신고 등의 필요한 절차 이행
- 사업대상자는 설치업체와 계약체결 시 사업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계약서 작성

마.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배정 : 시·도에서 매달 20일까지 보조금과 융자한도액을 신청한 예산 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도(시·군), 대출취급기관

1) 사업자금 배정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 받아 매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도는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 형편상 그 달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미 배정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2)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자금 집행은 「농림축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 정산 실시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용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은 정산서 내역이 포함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되 시험가동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고, 조치사항 미이행 시 보조금 회수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및 용자한도액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설치업체 등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설치업체 등의 통장에 대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설치업체 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보조금과 용자금을 함께 지원할 때 용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할 수 없으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금융기관의 신용불량 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용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용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용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하여야 하며, 용자금을 조속히 반납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 담보, 후취담보 및 농림축산업자 신용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
- 사업주관기관은 9.30일 현재의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변경 및 자금배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 강구

바.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해당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 진척도,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등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 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자체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시설	2020	2029	○ 중앙관서의 장 승인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 제품관리 장비	2020	2024		

○ 보 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 고
○ 2020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실적보고	2020.12.31한	시·군(도) → 도 (농식품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보고사항 * 붙임 서식 2, 3
○ 2020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완료·정산보고	2021.2.15한		
○ 2020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수요조사 결과 보고	2019.10월 말		
○ 2021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	2020.2월초		
○ 2021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자 확정 및 가내시	2020.3월말		

《제 재》

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장비 등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의 사용할 때 자금 회수 등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및 제63조의4에 따라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및 일정기간 사업 제한

사. 성과측정단계

- 1등급이상 퇴비 생산업체비율(%)
 - 생산업체의 1등급이상 가축분퇴비 및 퇴비 비율 측정
 - 1등급이상 퇴비생산업체수/전체지원업체수×100
 - 측정시기 : 12월(조사 : 농진청)

아.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지원업체 평가 실시
 - 평가대상 : 사업대상업체
 - 평가기간 : 2020년 1월~12월
 - 평가내용 : 퇴비 공급계획 대비 실적, 품질 및 유통관리, 운영실태 등
 - 평가방법 : 농식품부 및 시·도의 연 2회 점검결과(40% 반영)와 한국유기질비료 산업협동조합 평가결과(60% 반영)를 종합하여 상·중·하로 분류

《환 류》

- 평가결과 상위 20%업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퇴비 지원물량 10% 증량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환류

4.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가.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2020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나.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 : 2020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 지원대상 : 생산시설, 제품생산·관리장비 등 2020년도 지침에 의함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 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응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p>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p> <p>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1부</p>							

(주)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91조 관련 별표 5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1. 현 황

시 설 및 생 산	생산 시설	발효시설	후숙창고	악취방지시설	포장시설		
		(규격)					
		(능력)					
		(설치비) 천원					
	장비	휠로더	페이로다	부속도 측정기	수 분 측정기		
		대	대	대	대		
	<p>연간 생산능력 : 톤(가축분퇴비 톤, 일반퇴비 톤)</p> <p>- 주요 사용원료 : 톤(원료별 비율 적시)</p>						
	정 부 지 원 실 적	구 분	단 위	2016	2017	2018	2019
		물 량	톤				
		금액 계	천원				
- 국 고		천원					
- 지방비		천원					
공급단가		원/포					
등 급		특~2등급					

2. 사업계획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정부지원(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계									
시설	○ ○ ○ ○								
	○ ○ ○ ○								
	○ ○ ○ ○								
장비	○ ○ ○ ○								
	○ ○ ○ ○								
	○ ○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로 표시

○ 양질퇴비 생산계획

대출 신청 자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종업원수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합계	정부지원 (축발기금)		
	계	보조		융자		
	퇴비생산 시설 현대화	<시설계>				
-						
<장비계>						
<합계>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금 현황			융자금 현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의 관계	예상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첨부 3]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종업원수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합계	정부지원 (축발기금)		
	계	보조		융자		
	퇴비생산 시설 현대화	<시설계> - - <장비계> - - <합계>				

2. 자부담 확보 능력

3. 사업검토

구분	검토항목	평가			검토의견
		상	중	하	
사업능력	○ 생산능력 ○ 사업규모 ○ 품질정도 ○ 종업원수				
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전망				
입지여건	○ 생산 또는 원료조달 ○ 판매지역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장 (인)

[서식2 : 엑셀]

()년도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실적보고

<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실적 : 완료 및 정산 >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 자수 (개소)	사업계획		사업비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실 적(정산)									
		단 위	사 업 량	국 비 보 조	국 비 용 자	지 방 비	자 담	소 계	국 비 보 조	국 비 용 자	지 방 비	자 담	계	국 비 보 조	국 비 용 자	국 비 보 조	국 비 용 자	
합계	시 설																	
	장 비																	
	합 계																	
시설																		
	소 계																	
장비																		
	소 계																	

[서식3]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합계	국비보조	국비용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시설계)					
-					
-					
(장비계)					
-					
-					

○ 세부명세

세부사업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합계) (천원)	비고
합계						
(시설계)						
-						
-						
(장비계)						
-						
-						

14 친환경농자재(유기농업자재) 지원



1. 사업개요

1. 목 적

- 유기농업자재, 농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을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6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유기물 함량(부지표) : 논, 밭 등 농지 유기물 함량을 2~3%수준 유지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 방식
		'17	'18.	'19.P		
· 유기물 함량 (%,부지표)	2~3	· 논·밭: 2.0 이상 · 과수·시설: 2.5이상	· 논·밭: 2.0 이상 · 과수·시설: 2.5이상	· 논·밭: 2.0 이상 · 과수·시설: 2.5이상	매년 3월	경지 이용형태별 유기물 함량 조사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안)	2021년이후
합 계	15,525	15,525	15,525	15,525	15,525
국고보조금	3,105	3,105	3,105	3,105	3,105
지방비	4,658	4,658	4,658	4,658	4,658
자부담	7,763	7,763	7,763	7,763	7,763

5. 전남 사업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안)	2021년이후
합 계	2,175	4,445	5,572	5,572	5,572
국고보조금	435	889	1,114	1,114	1,114
지방비	196	400	1,672	1,672	1,672
자부담	467	933	2,786	2,786	2,786

II.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녹비작물 종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녹비작물 종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 중인 농지(친환경농산물인증서 첨부)와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인삼경작을 위해 인삼농협에 예정지 관리 신고된 농지(별지6호 서식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첨부)는 지원 대상에 포함
- 2019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농지는 녹비작물 종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당해 연도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다음 연도에 ① 토양개량용·작물생육용·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②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 ③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따른 "유기질비료"를 50% 이내로 지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관련 [별표6]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농업법인은 제외. 다만, [별표6] 1.공통지원조건 “②-3”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선정 우선순위 : 유기인증 농지 > 무농약인증 농지 > 일반 농지(지자체 자율 결정)

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천적 포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지*는 제외하되, 2019년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¹⁾을 성실 납부한 유기·무농약 농산물인증 농업경영체를 우선하여 지원(다만,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제외자 및 면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조성규정(2016.6.30.제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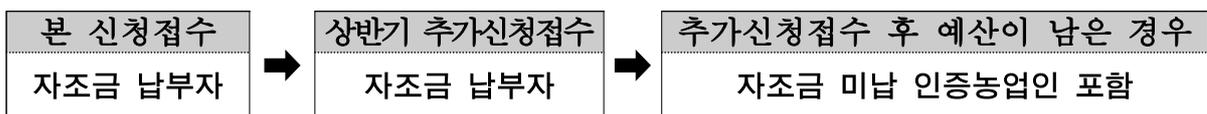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의 납부대상 및 제외자 범위

- (납부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인증면적 1천㎡이상 농업인으로 한정
 - 다만,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여 콩나물, 숙주나물, 버섯류, 채소류 등을 재배하는 친환경인증농업인은 인증면적 330㎡이상을 대상에 포함
- (납부면제) 1천㎡(농업시설재배는 330㎡) 미만의 소규모 농업인과 가축 사료용 조사료만 생산품목으로 인증받은 농업인 제외

*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능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 중인 농지는 지원 가능(친환경농산물인증서 첨부)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의 사업 신청이 저조한 경우 상반기 내에 추가 신청접수를 실시(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에 한함)

《 사업 신청접수 단계도 》



1)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관련 문의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044-863-6202)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년도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당해 연도 ① 토양개량용·작물생육용·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②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 ③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따른 “유기질비료”를 50% 이내로 지원

※ 다만, 녹비작물의 생육상태 등에 따라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탄력성 부여

- 일정 녹비 생체량(500kg 이상/10a)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확인서(시비처방서 포함)를 첨부하여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가능
- * 농가가 추가 신청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량은 시비처방서를 따르거나 일반 농지(해당 품목) 기준의 50% 이내로 제한하여 토양 관리 효율성 제고

- 천적은 농업용재배시설(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에 한해 지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관련 [별표6]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농업법인은 제외. 다만, [별표6] 1.공통지원조건 “②-3”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유기인증 농지 > 무농약인증 농지

3. 지원 대상

- 녹비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http://organicpro.enviagro.go.kr>) → 유기농업자재정보 → 유기농업자재 공시현황에서 확인
 - * 상토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친환경농어업법 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유기농업자재 등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 제한여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http://organicpro.enviagro.go.kr>)
→ 유기농업자재정보 → 행정처분 현황에서 확인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갈색반날개, 굴파리좀벌, 담배가루이좀벌, 담배장님노린재, 무당벌레, 벵커플랜트, 복숭아혹진디벌, 숨이애꽃노린재, 싸리진디벌, 쌀좀알벌, 아큐레이퍼응애, 어비진디벌, 오이이리응애, 온실가루이좀벌, 유럽애꽃노린재, 으뜸애꽃노린재, 잎굴파리고치벌, 지중해이리응애, 진디면충좀벌, 진디혹파리, 칠레이리응애, 캘리포니쿠스응애, 콜레마니진디벌, 호랑풀잠자리, 황온좀벌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천적 생산 업체 제품에 한하며, 화분매개곤충(뒤영벌, 호박벌 등)은 지원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인삼조합을 통하여 구입하는 지원대상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천적 및 자재, 자재원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국고, 지방비, 농협지원금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지자체 또는 농협 등에서 추가 지원할 경우 자부담 20% 이상 유지
 - * 국고 20% + 지방비 30% + 추가 지방비 또는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이상)
- 사업 의무량 : 녹비작물 종자는 농경지에 파종한 후 지력증진 위해 작물을

당해 농지에 반드시 작물체를 환원하여야 하며,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당해 연도에 사용될 분량만큼만 사용 신청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녹비작물 종자(ha당)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 신청 농업경영체 단위로 품목별 최소 신청량은 녹비(청)보리·호밀·자운영·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20kg, 헤어리베치 5kg으로 제한
 - 품질기준은 종자관리요강(보급종 기준)에 따르며 발아율 80%이상 종자 공급
 - 최종 공급단가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종자공급 완료 후에 제반비용을 토대로 산정하여 알림(사업년도 11월중)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천적(ha당, 총 구입비 기준) :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 신청 농업경영체의 신청농지 기준으로 지원한도액이 적용되며, 초과금액은 자부담하고, 품목별 지원단가는 객관적인 자료(농협경제지주 계통구매단가, 납품계약서, 견적서 등)에 근거한 농가신청금액과 공시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으로 결정

* 공시가격은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http://organicpro.enviagro.go.kr>) → 유기농업자재정보 → 유기농업자재 공시현황 중 가격에서 확인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전달

시·군·구(읍·면·동)

- 읍·면·동은 시·군·구의 사업계획과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품목, 사업 신청기한, 신청방법 등을 농업인에게 홍보 및 안내하고, 시·도, 시·군·구에서 소요예산 등 협조(10~11월)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필요시 현장확인)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 Agrix에 입력한 후,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1월초)
 - 사업대상자가 제출하는 사업신청서에는 신청품목을 상세히 기재하게 하되, Agrix 입력시에는 녹비작물 종자는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수단그라스(만생종)'로, 천적은 '천적종류'로, 유기농업자재는 '상표명', 자재원료는 '사용가능 물질명'으로 입력
- 시·도는 시·군·구의 선정결과에 대해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예산 요구서 등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월중)

사업대상자

-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당해 연도에 소용될 자재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업신청서(서약서 첨부)를 제출 [별지 1호 서식]
 - **신청기간 : '19. 11. 1. ~ '19. 12. 31.(2개월)**
 -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의 사업 신청이 저조한 경우 상반기 내에 추가 신청접수를 실시(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에 한함)
 - 농지소재지의 관할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 동일 시·군·구내에서는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시·군·구가 다른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 '녹비작물 종자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에 녹비작물 종자대 자부담 부분을 납부할 '공급 희망조합'을 지정하여야 하며, 공급 희망조합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광역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여야 함
- * 단, 수단그라스는 '인삼농협' 중 한곳을 공급 희망조합으로 지정 : 참고 1 참조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가 제출한 사업예산 신청 내역 등 사업물량을 검토하여 확정된 후, Agrix 등록 및 각 시·도별 사업량 통보(녹비종자는 농협경제지주에 통보, 2월초)
- 녹비작물 종자 품목별 사업량 등은 예산한도 내에서 녹비효과, 경제성, 국산화 정도, 농가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 시도별 확정 사업량은 원칙적으로 AgriX로 통보하되, 필요한 경우 문서 시행

시·군·구(읍·면·동)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 시·도는 농식품부의 시·도별 확정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구(읍·면·동)별 사업량 배정 통보 및 사업대상자 확정(2월)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심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Agrix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녹비작물 종자는 각 농협경제지주 시군 농정지원단에도 통보
 - * 필요시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농지는 제외
- 시·군·구는 선정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에서 시·도와 협의하여 사업대상자, 지원 품목 등 변경 가능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내용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
 - 특히, 녹비종자는 사업대상자(사업량 포함)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확정된 사업량에 맞게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조정 등 철저

농협경제지주

- 각 시·군·구로부터 확정된 녹비작물 종자 지원 사업량을 통보 받는 즉시 관할 조합에 통보하여 농협전산시스템과 대조(3월)
 - * 시·군·구 사업량과 농협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사업량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군·구의 자료를 근거로 수정 조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경제지주

- 녹비종자별 예정공급단가를 포함하여 국내외 조사를 통해 녹비작물 종자 확보·공급계획 수립·보고(1월)
 - 사업물량의 안정적 확보·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외 사전조사 실시(12월~1월)
 - * 국내·외 녹비용 작물종자 생산, 확보가능 예상량(보증비보증 구분) 및 가격동향 등
 - 녹비종자 확보·공급계획서에는 품목별 물량 확보방안(국가별 수입량, 월별 도입량 및 자금집행 계획 등), 보증종자 확보계획, 녹비종자 도입·공급 방식 및 절차(국산·수입산 구분), 전년도 녹비종자 공급 계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결과 및 사업년도 계약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국산·수입산 구분), 단계별 세부추진일정, 기관별 조치·협조사항, 기타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을 포함하여 작성
 - * 특히, 품목별 보증종자 확보계획, 녹비종자 전량 입찰제에 따른 계약절차 및 추진일정, 구매·공급계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 등은 구체적으로 작성
- 녹비작물별 적정 파종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녹비종자 구매 및 품목별 적기 공급 추진(농가 공급은 '20.10.10.까지 완료)
 - * 품목별 공급기간 : (수단그라스) 4.10~4.30 / (헤어리베치, 자운영) 8.10~9.5 / (녹비 보리, 호밀) 9.1~10.10
 - 녹비종자는 정한 기한 내에 지역(인삼)농협 또는 신청농가에 배송

시·도(시·군·구)

- 시·군·구에서는 농진청(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협경제지주와 협조하여 농가대상 교육·홍보·지도 실시(연중)
 - 녹비종자의 적정 파종시기, 파종방법, 월동관리 요령 등 교육·홍보
 - 천적을 활용한 방제, 유기농업자재 이용방법 등 농가 교육

사업대상자

- 녹비작물 종자를 공급희망조합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공급 예정단가를 기준으로 한 자부담 금액을 지급하고 수령증을 교부받아야 함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및 자금 교부

시·도(시·군·구)

- 시·도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녹비작물 종자 국고보조금은 농협경제지주(시군농정지원단)로부터 보조금 지급요청을 받아 농식품부에 교부 신청(e-호조)
 - 시·도는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시·도비를 합하여 시·군·구에 교부결정
 - 시·군·구는 국비와 시·도비에 시·군·구비를 합하여 농협경제지주(시군농정지원단)에 녹비종자 보조금을 지급하되, 녹비종자 도입 및 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산급 지급(시·군·구별 사업비의 70%이내)
- 자금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름
 - 천적,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하되, 구매 증빙자료(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및 관련 증명서류 등) 등을 통해 실제 구매 여부를 확인

* 증빙서류(간이영수증 등)가 의심되면 해당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 확인

- 사업기간(사업신청부터 자재구입 사용시기까지로 하되, 타당한 사유로 일시적 인증 공백**(1개월 이내)은 예외 적용) 중에 친환경 인증이 유효한 건에 한해 보조금 지원(친환경 인증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증 유효여부 확인)

* 세금계산서, 자재구입 영수증, 영농일지 등을 근거로 자재 구입·사용 시기 확인

** 인증기관 지정취소에 따른 불가피한 인증기관 변경, 갱신 도래시기 임원 등으로 일시적 인증 공백 기간에 구입·사용한 유기농업자재는 지원에서 제외

- 시·도(시·군·구)는 회계 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 및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 검정 및 정산서에는 지원품목별 국고, 지방비, 자부담으로 사업비 구분 명시
- 시·도(시·군·구)에서는 유기농업자재 사업자 선정 결과, 자금집행내역 등을 Agrix 시스템에 '20.12.31.까지 입력 완료
- 시·도는 배정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시군농정지원단)는 녹비작물 종자공급을 최종 완료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잔여 보조금 지급 요청
 - 상반기 중에 시·군·구별 보조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개산급 지급 요청
- 농협경제지주(시군농정지원단)는 녹비작물 종자 공급예정단가와 최종공급단가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시·군·구 및 농업인 등에게 차액을 청구 또는 반환

사업대상자

- 천적,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의 구매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 영수증, 사업대상자명의 예금계좌에서 업체계좌로 직접 이체한 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구매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제출
 - 자재원료는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확인을 거친 후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첨부하여 시·군·구에 보조금 신청

- * 본인이 인증받고 있는 민간인증기관에 자재원료 확인을 요청하되, 인증기관이 지정취소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확인 요청
- ** 민간인증기관 현황은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 인증신청도우미 → 인증기관조회에서 확인

민간인증기관(농관원 사무소 포함)

- 민간인증기관에서는 지원받고자 하는 자재원료에 대해 금지물질 여부, 허용물질의 사용가능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용가능한 물질인 경우 “자재사용 내역 확인서” 발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상황 및 자금 집행현황 점검(반기 1회)
- 지자체 및 민간인증기관의 현장점검 대상자 명단 작성·제공(반기 1회)
 - * 지역별로 구입량이 많은 농업경영체 우선하되, 신청농가의 6%내외 선정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자재 공급상황, 자금 지급상황, 실제 공급가격, 사용실태, 품질만족도, 자부담 편취 등 부정수급 사례 및 녹비용 작물종자 공급·과중상황, 녹비작물 생육·이용현황 등에 대해 점검(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 제출)
 - 사업신청 및 보조금 청구서류 등을 통해 지원 품목·대상 및 공급가격의 적정성 등 검토(전수조사*)
 - * 주요 점검사항 : ① 사업지침에 정한 지원품목 외 지원 여부, ② Agrix 시스템을 통해 유사사업과 동일필지 중복지원 여부 확인, ③ 공시가격과 집행단가 비교, ④ 사업신청 및 보조금 청구 서류의 미비점 등
 - 서류점검 결과, 부정수급 의심농가 및 농식품부 제공 점검대상자에 대한 현장조사(표본조사)
 - * 다만, 녹비종자의 경우 파종, 작물체의 토양 환원 여부에 대해 조사(4~6월, 9~11월)
 - 농가 방문조사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면 상세 경위를 조사한 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결과 제출

민간인증기관

- 민간인증기관은 천적,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를 지원받은 인증농가 중 농식품부가 제공하는 점검대상자에 대해 현장조사
 - '대상농가 인증사후관리 시 영농일지(자재사용내역서)를 확인하여 자재 구입·사용·보관상태와 보조내역을 비교·점검(친환경인증기관협회는 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제출)

《제 재》

농림축산식품부

-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사태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명령, 제재부과금 부과 등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관련 정보 공표 및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 공급업체의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부정 수급자 등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자 선정 취소,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등을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대상자의 신청서 접수 시 서약서 징구[별지 제2호 서식]
- 공급업체와 농업경영체의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참여 제한
 - 또한, 녹비작물 종자는 당해 농지에 파종하지 않거나, 생육 후 조사료로 사용하여 토양에 환원하지 않는 경우 다음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6. 성과측정단계

- 사업성과 지표인 유기물함량은 사업시행 다음연도 3월중에 농촌진흥청을 통해 산출된 경지이용별(논·밭·과수·시설) 유기물 함량(%)을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여부 측정

서 약 서

- 성명(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녹비작물 종자, 천적,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를 구입·사용하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 부과금 부과, 농림사업 참여 제한 등 행정처분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선정결과

〈시·군·구 → 사업대상자 통보용〉

수 신 : ○○○ 귀하

2020년 월 일

발 신 : ○○○ 시장, 군수, 구청장 (인)

선 정 자	주 소				
	농가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	
	법 인 명		연 락 처		
사업비(원)	합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p>상기와 같이 2020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 하오니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청구 등 부당행위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시장 · 군수 · 구청장</p>					

* 사업자로 선정된 농업경영체는 통지서 수령일 이후부터 유기농업자재 등을 구입 · 사용한 후, 신용카드 영수증, 계좌이체 증빙서, 세금계산서 등 자부담 선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청구

[별지 제4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집행결과 보고서

'20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사업비 정산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시·도(시·군·구)명 :

(단위 : m², kg, 원)

지원 실적				예산액				실 집행액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예정액
지원 품목	농가수	지원면적	녹비종자 공급물량	계	국비 (20%)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20%)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20%)	지방비	자부담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																
수단그라스(만생)																
천적			X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소계																

※ 국고보조금 반환예정액 산정기준 : 시·도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자재사용 내역 확인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인증번호 :

위 친환경인증 농가가 아래와 같이 사용하는 자재원료(허용물질)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가목에 따라 친환경농업에 사용하는 물질임을 확인합니다.

허용물질명*	제품명**	제품단위 (kg, l, ml 등)	구입량 (A+B)	사용량 (A)	보관량 (B)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1】 사용가능 물질명을 기재

** 실제 판매되고 있는 제품명을 기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 (직인)

인삼 경작예정지 확인서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경작인 또는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 :

경작예정내용

신고번호 :

경작지주소	식재예정면적	식재년도	식재구분 (직파/이식)	임차구분

위와 같이 인삼경작 예정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확인서 용도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용

○ ○ 인삼농업협동조합장

직인

참고1

인삼농업협동조합 현황

조합명	대표자	주 소	관 할 구 역
강화인삼농협	황우덕	인천 강화 강화읍 강화대로 335 (032-933-5001)	인천광역시(옹진군제외)
개성인삼농협	김인수	경기 포천 호국로 1423 (031-535-3711-3)	포천, 연천, 양주, 구리, 동두천, 의정부, 남양주, 가평, 양평
경기동부인삼농협	윤여홍	경기 이천시 증신로 333 (031-635-2429)	이천, 용인, 광주, 시흥, 여주, 성남, 하남, 안양, 군포, 의왕, 광명, 안산, 과천
김포파주인삼농협	조재열	경기 김포 통진읍 조강로 46-1 (031-987-0171)	김포, 파주, 고양, 인천광역시, 서울, 부천
안성인삼농협	박봉순	경기 안성 공도읍 서동대로 4469 (031-651-9500)	안성, 화성, 평택, 오산, 수원, 천안
강원인삼농협	이철호	강원 홍천 홍천읍 설악로 987 (033-435-3433)	강원도
충북인삼농협	이규보	충북 증평 증평읍 중부로 2459 (043-820-3400)	충북지역[경남, 경북 일부 (구미, 김천, 성주, 고령)]
백제금산 인삼농협	신동석	충남 부여 부여읍 성왕로 311 (041-832-7888, 3348)	대전, 세종, 공주, 논산, 금산, 보령, 부여, 서천, 청양, 계룡
서산인삼농협	김낙영	충남 서산 남부순환로 11 (041-664-0561-2)	서산, 아산, 태안, 홍성, 예산, 당진
전북인삼농협	신인성	전북 진안 진안읍 진무로 1021 (063-433-3112)	전북, 전남(일부), 광주
풍기인삼농협	권현준	경북 영주 풍기읍 금계로 32 (054-636-2714)	경북일원(구미, 김천, 성주, 고령제외)
계	11개		

허용물질의 종류 (제3조제1항 관련)

1. 유기식품등에 사용가능한 물질

가.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堆廐肥) ○ 퇴비화 된 가축배설물 ○ 건조된 농장 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 퇴구비	○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의 재배방법 중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식물 또는 식물 잔류물로 만든 퇴비 ○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서 생긴 퇴비	○ 충분히 부숙(腐熟: 썩다)된 것일 것 ○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 사용되는 자재는 이 목 1)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물질만을 사용할 것
○ 지렁이 또는 곤충으로부터 온 부식토	○ 지렁이 및 곤충의 먹이는 이 목 1)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물질만을 사용할 것
○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혈분·육분·골분·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것
○ 대두박, 쌀겨 유박, 깻묵 등 식물성 유박(油粕)류	○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 ○ 최종제품에 화학물질이 남지 않을 것
○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Vinasse), 식품등급의 설탕, 포도당 포함]	○ 유해 화학물질로 처리되지 않을 것
○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 오줌	○ 충분한 발효와 희석을 거쳐 사용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의 배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히 발효되어 부속된 것일 것 ○ 고온발효: 50° C 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 ○ 저온발효: 6개월 이상 발효된 것일 것 ○ 열채류 등 농산물·임산물의 사람이 직접 먹는 부위에는 사용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레 등 자연적으로 생긴 유기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아노 (Guano: 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짚, 왕겨, 쌀겨 및 산야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료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톱밥, 나무껍질 및 목재 부스러기 ○ 나무 숯 및 나뭇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처리과정에서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 또는 그 목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것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산칼륨, 랑베나이트(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 또는 광물염 ○ 석회소다 염화물 ○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 마그네슘 암석 ○ 사리염(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고(황산칼슘) ○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 점토광물(벤토나이트·펄라이트 및 제올라이트·일라이트 등) ○ 질석(Vermiculite: 풍화된 흑운모) ○ 붕소·철·망간·구리·몰리브덴 및 아연 등 미량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에서 유래하여야 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危害) 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예: 석면광, 수은광 등)은 사용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에서 유래하여야 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염소함량이 60 퍼센트 미만일 것

○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 천연에서 유래하여야 하고 단순 물리적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인을 오산화인(P ₂ O ₅)으로 환산하여 1kg 중 카드뮴이 90mg/kg 이하일 것
○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	○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이 포함된 암석은 사용할 수 없음
○ 광물을 제련하고 남은 찌꺼기[베이직 슬래그, 광재(鑛滓)]	○ 광물의 제련과정에서 나온 것(예: 비료 제조 시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규산질 비료)
○ 염화나트륨(소금) 및 해수	○ 염화나트륨(소금)은 채굴한 암염 및 천일염(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일 것 ○ 해수는 다음 조건에 따라 사용할 것 - 천연에서 유래할 것 - 엽면(葉面) 시비용으로 사용할 것 - 토양에 염류가 쌓이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
○ 목초액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규격 및 품질 등에 적합할 것
○ 키토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미생물 및 미생물추출물	○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이탄(泥炭, Peat), 토탄(土炭, peat moss), 토탄 추출물	
○ 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해조류 퇴적물	

○ 황	
○ 주정 찌꺼기(stillage) 및 그 추출물 (암모니아 주정 찌꺼기는 제외한다)	
○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 클로렐라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 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아니할 것

2)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 제충국 추출물	○ 제충국(<i>Chrysanthemum cinerariae folium</i>)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데리스(Derris) 추출물	○ 데리스(<i>Derris</i> spp., <i>Lonchocarpus</i> spp. 및 <i>Tephrosia</i> spp.)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쿠아시아(Quassia) 추출물	○ 쿠아시아(<i>Quassia amara</i>)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라이아니아(Ryania) 추출물	○ 라이아니아(<i>Ryania speciosa</i>)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님(Neem) 추출물	○ 님(<i>Azadirachta indica</i>)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해수 및 천일염	○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것
○ 젤라틴(Gelatine)	○ 크롬(Cr)처리 등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난황(卵黃, 계란노른자 포함)	○ 화학물질이나 화학적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식초 등 천연산	○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누룩곰팡이속(<i>Aspergillus</i> spp.)의 발효 생산물	○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 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목초액	○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규격 및 품질 등에 적합할 것
○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	○ 물로 추출한 것일 것
○ 키토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밀납(Beeswax) 및 프로폴리스(Propolis)	

○ 동·식물성 오일	○ 천연유화제로 제조할 경우에 한하여 수산화칼륨은 동물성·식물성 오일 사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것. 다만,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등록하고 사용할 것.
○ 해조류·해조류가루·해조류추출액	
○ 인지질(lecithin)	
○ 카제인(유단백질)	
○ 버섯 추출액	
○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 클로렐라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아니할 것
○ 천연식물(약초 등)에서 추출한 제재 (담배는 제외)	
○ 식물성 퇴비발효 추출액	○ 별표 1 제1호 가목1)에서 정해진 허용물질 중 식물성 원료를 충분히 부숙(腐熟)시킨 퇴비로 제조할 것 ○ 물로만 추출할 것
○ 구리염 ○ 보르도액 ○ 수산화동 ○ 산염화동 ○ 부르고뉴액	○ 토양에 구리가 축적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
○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	○ 토양에 직접 살포하지 않을 것
○ 석회보르도액 및 석회유황합제	
○ 에틸렌	○ 키위, 바나나와 감의 숙성을 위하여 사용할 것
○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	○ 천연에서 유래하거나, 이를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만 사용할 것
○ 규산나트륨	○ 천연규사와 탄산나트륨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일 것
○ 규조토	○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	○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예: 석면광 및 수은광 등)은 사용할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인산철	<input type="checkbox"/> 달팽이 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만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파라핀 오일	
<input type="checkbox"/>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input type="checkbox"/> 과망간산칼륨	<input type="checkbox"/> 과수의 병해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
<input type="checkbox"/> 황	<input type="checkbox"/> 액상화할 경우에 한하여 수산화나트륨은 황 사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것. 반드시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등록하고 사용할 것
<input type="checkbox"/> 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	<input type="checkbox"/>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 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input type="checkbox"/> 천적	<input type="checkbox"/> 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
<input type="checkbox"/> 성 유인물질(페로몬)	<input type="checkbox"/> 작물에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뒤편 사용할 것)
<input type="checkbox"/> 메타알데하이드	<input type="checkbox"/> 별도 용기에 담아서 사용하고, 토양이나 작물에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뒤편 사용할 것)
<input type="checkbox"/> 이산화탄소 및 질소가스	<input type="checkbox"/> 과실 창고의 대기 농도 조정용으로만 사용할 것
<input type="checkbox"/> 비누(Potassium Soaps)	
<input type="checkbox"/> 에틸알콜	<input type="checkbox"/> 발효주정일 것
<input type="checkbox"/>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	<input type="checkbox"/> 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
<input type="checkbox"/> 기계유	<input type="checkbox"/> 과수농가의 월동 해충 구제용에만 허용
	<input type="checkbox"/> 수확기 과실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것
<input type="checkbox"/> 용성불임곤충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						
납부 대상자	농가(법인)명				대표자	
	인증번호				인증서 발급일	
	소재지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내역						
대상년도	인증연차(m)				고지금액	납부액
	유기		무농약			
	는	밭	는	밭		
년					원	원
<p>상기인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2018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장</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div> <p>☎ 문의처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사무국 ☎ 044-863-6202</p>						

《유기농 육성분야》

15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



1.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을 마을 및 들녘, 수계단위로 단지화하여 품목별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
- 과수·채소 품목별 사업비 차등지원으로 친환경농업 내실화 및 인증 품목 다양화 추진

2.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3.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계(100%)	도비(20%)	시군비(80%)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	45,700ha	35,000,000	7,000,000	28,000,000

4. 사업추진

가. 사업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0. 1. ~ 12.(1년간)

- 사업대상자 선정 교육 및 사업주체와 협약체결 : 2020. 1. ~ 3.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2020. 3. ~ 12.
- 사업비 정산 : 2021. 1. ~ 2.

다. 지원대상

- 대상작목 : 벼, 밭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임산물 등 인증가능 작물
- 대상지역
 - 마을 및 들녘단위 단지화 조성으로 무농약 이상 인증 획득 지역
 - 단지규모는 지역 여건을 감안 시군 자율 적용
 - * 주변 여건 및 작물 특성에 따라 단지화가 어려울 경우 개별농가 지원 가능

- 지원대상자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인증(유기, 무농약)을 받은 농가
- 단지조성
 - 친환경농업기술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선도 1농가 이상을 단지대표(생산관리자)로 지정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효율적 운영
 - 단지대표는
 - 소속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 등 제공
 -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과 인증농가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교육
 -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결과 기록관리
 - 친환경농업 실천 및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총괄 지도 관리
- 지원제외 대상
 -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제초제 사용 등으로 친환경 인증취소 농가
 - 친환경농업 인증기간 동안 인증포기 후 다시 신규로 인증을 받은 농지

라. 사업비 지원

- 지원조건
 - 친환경 농자재 자가제조 또는 구매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가 지원
 - 보조금 지급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운영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활용하여 인증 취소여부 재확인
 - ※ 효율적인 단지운영 및 인증관리를 위해 생산단지별 협의 결정에 따라 농자재 공동구매 비용에 대해서는 단지대표 등에게 일괄 지급 가능
- 인증단계별 지원한도(ha 당) : 평균 766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유기농	무농약	비 고
벼·특작·기타	1,200	500	* 무농약 ha당 200천원 ↓
채소	1,600	1,000	* 유기농, 무농약 ha당 200천원 ↑
과수	1,800	1,200	* 유기농, 무농약 ha당 200천원 ↑

* 전환기 인증 농산물은 무농약에 준하여 지급

* 2021년부터는 유기농 벼 등 지원한도를 ha당 1,000천원으로 인하할 계획임

※ 무농약 벼 6년차 이상은 2020년까지 300천원을 지원하고 2021년부터 지원중단

- 사업비 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 시·군에서는 유기 및 무농약 실천에 따른 투입 비용 등을 감안하여 지원한도 내에서 자체 시행지침을 마련, 예산범위 내에서 품목별로 지원 단가를 차등 적용하여 지급
 -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공동작업비, 단지대표(생산관리자) 활동비, 컨설팅, 교육(강사비 포함)·홍보비 등으로 집행 가능
 - 저비용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해 유용미생물 구입비, 토착미생물 자가제조 활용을 위한 플라스틱 용기, 천일염, 설탕 등 구입비 지원 가능

마. 사용가능 농자재

○ 친환경농자재 사용기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등 기준”에 적합한 자재(농촌진흥청 목록공시 유기농업자재)
- 공시 등 기관으로부터 약효, 약해 검정을 받아 「품질인증」 제품으로 등록된 유기농업자재 우선 구매 사용
- 친환경농자재의 검증체계 확립 및 공신력 있는 제품
 - 농가에서 사용한 결과 제품의 우수성이 인정된 농기자재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실험 검증된 농기자재
- ※ 도내 농가에서 선호하는 농자재에 대해 실증시험포 운영 등 제품의 특성과 효능에 대한 검증시험 공표(농업기술원)

○ 주요 사용농자재

<병해충 관리용>

- 목초액, 키토산, 산화전위수, 활성수, 현미식초, 천혜녹즙, 한방영양제, 토착미생물 배양제, 유산균, 담배추출물 등

<토양개량 및 생육촉진용>

- 지렁이분변토, 목탄(왕겨탄), 피트모스, 맥반석, 수용성인산, 그린칼슘, 아미노산, 청초액비, 미네랄A,B,C,D, 과일효소, 바로돈, 천연식초 등
- 발효깻묵, 해조류추출물, 쌀겨 등 자가제조 친환경농자재

<친환경 농기자재>

- 과원 및 논두렁 잡초방지용 생분해 논독시트, 화염방사기 등
- 단지 해충방제를 위한 해충유인 포획기, 유아등, 천적 등
- 기타 연구기관 등에서 친환경농자재로 인정 또는 특허를 받은 포트묘이앙기용 포트, 미생물배양기, 이온수·산소수·미네랄활성수 제조기 등
- ※ 일반 관행농업에서 사용되는 상토, 육묘상자 등 농기자재는 사용 제외

○ 농자재 가격결정

- 제품별 원가산정(원재료비+제조비+유통마진)에 따른 제품의 적정가격을 제시받아 공개하고, 제품별로 제시된 소비자가격 이내에서 구매 사용
- 소비자 가격이 없는 농자재는 유사제품, 정부 물가정보, 비교견적 등으로 결정
- 농가에서 자가제조·생산 사용하는 검증된 친환경농자재는 동일 농법을 실천하는 단지의 농가별 자재가격 준용
- 농자재 대리점 및 농협에서 적정마진과 수수료를 받도록 지도권장

○ 농자재 구매시 준수사항

- 농자재는 농법에 따라 단지 참여농가 의견을 수렴하여 선택하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차원에서 도내 생산업체 제품 50%이상 사용
- ※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내실화를 위한 친환경농자재 공급체계 운영방안’ 준수

- 단지에서 공동구매시는 제품의 효능과 회사별 가격 등을 비교하여 공개입찰 등 여건을 감안 자율적 선정 구입
- 농자재는 친환경농업단지 또는 농가에서 자재업체와 직접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공급 수수료 등 절감

바. 저비용 친환경농법 실천 확대

- 왕우렁이농법 확대실시 및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유용미생물 공급, 토착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 등으로 생산비 절감
- 벼 단지는 들녘별로 규모화하여 공동방제 작업 등 추진
 - 친환경농업단지 운영실태 점검·진단으로 단지별 조직화 및 활성화 추진
- 단지별 품종단일화 및 실천농법별 육묘에서 재배관리, 농자재 사용시기(기준) 등에 대한 사전 기술교육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체계 정립
 - 친환경농업인단체, 전문가와 연계 선진지 견학, 자문 등을 통해 부실 최소화

사. 홍보 및 판로대책 추진

- 단지별 지역농협, 대규모 전문유통업체, RPC(미곡종합처리장), 대량소비처, 학교급식업체 등과 계약재배로 고정 소비처 확보를 통한 안정적 판로 대책 마련
 - 대도시 백화점, 할인마트, 전문매장 등과 약정을 통한 고정납품
- 개별농가 단위로 판매망을 확보할 농가는 생산제품의 상품가치를 높여 대도시 소비자 및 직거래 등 판매대책 적극 강구
 - 그린투어리즘과 연계 대도시 소비자 초청 체험기회 제공 등
- 친환경농산물 품질보증 등 가격 차별화로 부가가치 제고
 - 생산지, 생산자, 상품특성 등 생산이력추적관리제 등록으로 소비자 신뢰확보
 - 생산, 수집, 선별, 포장, 출하 등 품질관리를 위한 공동작업 추진
- 무농약 이상 인증쌀 택배비 우선지원 및 각종 지원사업 인센티브 부여

5. 행정사항

가. 사업계획서 제출 : 2020. 3. 31.까지(보고서식)

- 단지조성(협약체결) 현황, 공동영농단 결성, 책임운영모델구축 등

나. 사업비 집행

- 농가별 사업추진 여부를 수시점검 확인하고, 친환경농업을 성실하게 실천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사업완료 즉시 인증단계별 사업비 집행
- 친환경장려금 형태의 직불금 지급 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확인 후 집행가능

다. 사업추진 결과 및 정산보고 : 2021. 2.말까지

- 시장·군수는 사업지침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규정을 준수 하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서식)

1. 사업계획서 : 2020. 3. 31.까지 제출

○ 단지 현황

단 지 명	주재배 작목	면 적 (ha)	재배 농법	단지대표		참여 농가 (호)	인증단계
				성 명	전 화		
계							

○ 개별농가 현황

농 가 명	주 소	주재배 작목	면 적 (ha)	재배 농법	인증단계
계					

○ 공동영농단 결성

단지명	대표자	참여 농가 (호)	면적 (ha)	보유농기계 수					
				계	트랙터	이앙기	방제기	콤바인	기타
계									

○ 책임운영모델 구축

단 지 명	운영주체	인증계획(ha)			참 여 농가수	협약내용
		계	유기	무농약		

※ 협약내용 : 벼 수매, 단가계약 사항 등을 기재

2. 사업비 정산 : 2021. 2. 28.까지

구분	사업량(ha)			집행액(원)			도비집행 잔액(원)
	계	유기	무농약	계	도비	시군비	
계							
벼 등							
채소							
과수							

[별표 1]

친환경농업 실천 협약서(안)

- ○ 시장·군수
- ○ 단지(작목반)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를 “갑”이라 하고 ○○○단지·작목반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I. 약정기간 : 2020년 월 일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II. 약정내용

제1조(구성원의 자격) ① “을”의 구성원은 친환경농업단지 참여농가로 한다.

② 단지대표는 본 단지(작목반)를 대표하며, 동 단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신청, 이행 여부의 점검, 교육 등 마을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책임과 의무) ① “을”의 각 구성원은 “갑”이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적인 영농실천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2. 친환경적 영농 실천

가.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벚짖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나. 겨울철 녹비작물 재배를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다.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

라. 미생물 자가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별표 2]

친환경농업 공동영농단 결성 및 운영규약(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친환경농업단지의 영농과정에서 노동력이 많이 들고 공동작업이 효과적인 논갈이, 모내기, 논두렁 조성, 논두렁 풀베기, 농자재 살포, 수확 등 농작업 지원을 위하여 공동영농단 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영농단 결성) ① 공동영농단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마을 및 단지 또는 작목반단위로 결성한다.

② 공동영농단은 대형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와 농기계 조작능력이 있는 젊은 농가 등을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따라 5~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결성한다.

제3조(명칭 및 대표 선정) ① 본 공동영농단은 “○○친환경농업공동영농단”이라고 칭한다.

② 공동영농단에는 단원들이 협의를 통해 대표 1인과 총무 1인을 선임한다.

③ 단지대표는 공동영농단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며, 총무는 단지대표를 보좌하여 공동영농단을 성실하게 운영한다.

제4조(운영) ① 본 공동영농단은 친환경농업단지 및 작목반 등의 농작업을 공동으로 지원한다.

② 친환경농업 실천과정에서 노동력이 많이 들고 공동작업이 필요한 농작업은 공동작업이 되도록 지원한다.

③ 친환경농업단지 및 작목반 등의 참여농가들이 공동작업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한다.

제5조(공동작업비용 산정 및 청구) ① 공동영농단의 공동작업 비용은 인건비, 농기계 이용료, 작업량 등을 감안하고, 지역 내의 통상적인 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공동작업 비용은 친환경농업단지 및 작목반 대표 또는 개별농가 등 사업주체에게 청구한다.

제6조(유권해석) 본 규약의 유권해석과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원들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공동영농단이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영농단 구성현황)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유 농기계	서명(인)	비고
계					

※ 본 규약은 준칙이므로 시군 실정 및 공동영농단 단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에 따른
 필요사항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활용

[별표 3]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 및 의무이행 협약서(안)

“친환경농업 ○○단지”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체(농협, 작목반, 농업회사법인 등)를 “갑”이라 하고, 단지참여 농가의 대표(○○○)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분야) 친환경농업 ○○단지를 시행함에 있어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 까지 구체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단지조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재배작물은 ○○으로 한다.
2. 사업대상 면적은 ○○ha, 참여 농가수는 ○○명으로 한다.
(개별 참여농가 내역 별첨)
3. 품종은 ○○이며, 실천농법은 ○○으로 한다.
4. 사업비는 ○○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으로 한다.

제2조(세부계약사항)

① 소요농자재 공급

1. 친환경농법 실천에 따른 농자재는 ○○ 등 ○종류이며, 소요량은 ○○으로 한다.
2. 소요농자재 공급은 “갑”책임하에 “을”의 협조를 받아 영농기 이전 적기에 확보·공급해야 하며, “을”은 검수할 책임이 있다.

② 영농기술지도

1. “갑”은 “을”과 협력하여 단지 참여농가가 파종할 종자선택, 종자확보, 파종 시기, 파종면적, 파종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확정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상품화 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 공동작업 등 단계별 영농의 총괄관리와 브랜드 등 상품화를 유도한다.
3. “을”은 “갑”의 지도 및 협력하에 단지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있어 품질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등 농가 이행사항을 책임 지도해야 한다.

③ 친환경농산물 인증

1. “갇”은 단지 참여농가가 영농기록을 주기적으로 기장할 수 있도록 지도 하며, 인증신청 및 인증획득을 책임지고 지도한다.
2. “을”은 “갇”의 지도하에 참여농가의 영농기록, 인증신청 및 획득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작성해야 한다.
3. 인증에 따른 비용부담은 “을”이 한다.(참여농가 부담)

④ 판로확보

1. “갇”과 “을”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수매의 주체로서 신의의 원칙에 입각 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을”은 “갇”과 정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성실영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ha당 0톤 기준)
3. “갇”은 생산된 물량의 수매와 판로확보를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하며, “을”은 “갇”의 승낙없이 생산된 물량을 타인에게 판매해서는 안되며, “갇”과 공동으로 판로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수매(판매)가격은 0월 0일 기준 시중형성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조곡 40kg당 무농약 00원, 유기농 00원으로 한다.
5. 수매시기는 “갇”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수확시기로부터 0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수매규격 및 수매요령은 정부공공비축수매 기준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3조(협의회 운영)

- ① “갇”과 “을”은 협의회를 만들어 생산에서 판매까지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 하여 상호 협력하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협의회는 성격상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양측의 요청으로 시군 관계 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급시기 및 방법)

- ① “을”은 “갇”이 제2조 세부계약내용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보조금 지급 위임장 제출 등)
- 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갇”과 “을”은 서로 협력하여 농가 자부담분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보조금 지급은 매년 12월 이내로 하며, 협약서 내용의 충족 여부를 감안하여 중간지급도 할 수 있다.
- ③ 농가 자부담과 보조금 지급은 “갇”이 신고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5조(유권해석)

- ① 이 협약에 대하여 유권해석과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관례에 따른다.
- ②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을”이 속한 법원에서 관할·조정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날인 후 “갑”과 “을”, 그리고 해당 시군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본 협약서는 ○○년 ○월 ○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2020년 월 일

“갑” 주 소 :

업체명

대표자 : ① (생년월일 :)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

“을” 주 소 :

성 명 : ① (생년월일 :)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

※ 본 협약서는 표준안이므로 사업주체와 단지대표 및 참여농가의 의견에 의거 변경이 가능함.

[별표 4]

도내 생산업체 친환경농자재 사용내역

○ 사업명 :

○ 사업비 정산내역(작물명 : , 인증단계 : , 인증면적 : ha)

구입처 내역			친환경농자재 사용내역					비고
업체명	주소	대표자	사용 자재명	규격	단가 (원)	구입량	구입액 (원)	

※ 단지별 또는 농가별 단위로 작성

붙임 : 증빙자료(영수증 등) 1부. 끝.

위와 같이 도내 생산업체 친환경농자재 사용내역을 제출합니다.

2020. . .

주 소 :

단지대표(농가명) :

시장·군수 귀하



1. 목 적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기반 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장 선점 및 세계시장 진출 확대
-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단체에 우선 지원하여 일반농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2.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3.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업량	총사업비	재원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2개소	1,000,000 (100%)	450,000 (45%)	150,000 (15%)	400,000 (40%)

※ 개소 당 사업비 : 500,000천원(도비 225,000 시군비 75,000 자부담 200,000)

4. 사업추진

가.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추진 기간 : 2020. 1. ~ 12.

다.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장비 등 지원(신축, 증·개축)
 - 생산시설 : 육묘장, 미생물 발효시설, 유기퇴비 생산시설 등
 - 가공시설 : 세척기, 전문도정시설 등 ※ 비도정시설 외 지원 시 가점
 - 유통시설 : 저온저장고, 집하·선별·포장·예냉시설 등
 - 교육·체험 시설 : 농업인 교육장, 소비자 체험장 등
- ※ 모든 지원시설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과 연관되어야 함

라. 지원자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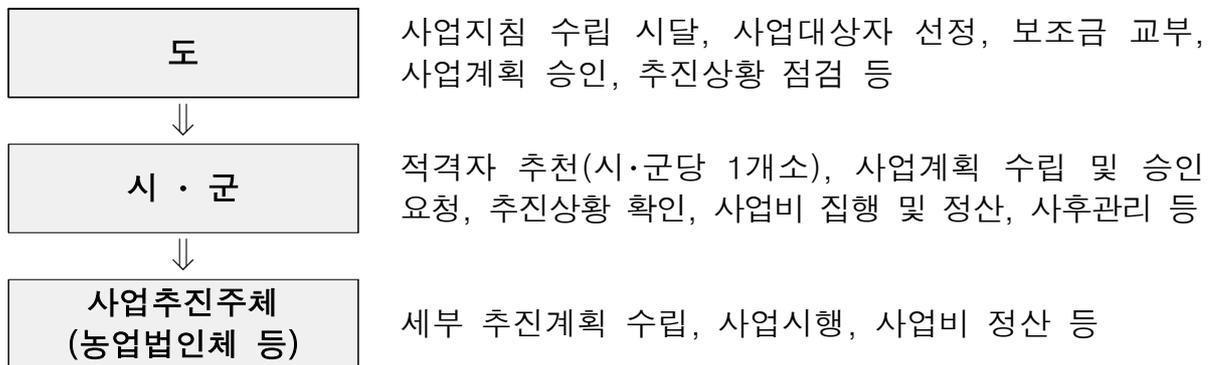
- 10ha 이상 친환경농산물을 생산·가공·유통하거나 생산·가공·유통하려는 생산자단체로 사업부지 및 자부담을 확보하여야 함
 - 생산자단체의 친환경인증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생산자 단체
(사업신청 당해 연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인정)

<대상자 추천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 방지
- 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법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기준에 적합

마. 추진과정 및 체계

○ 사업추진 체계



- 사업희망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 제출(사업대상자→시군)
- 사업계획서 검토 후 적격자 도에 추천(시군→도)
-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 최종 결정(도)
 - ※ 사업적격자가 많지 않을 경우 전문가 평가를 자체 평가로 대체
-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 성과분석(시군)
 - 사업 착수 전 세부사업 계획서를 작성 한 후 도 승인을 득한 후 착공하고, 사업 승인 후 사업계획 변경필요시 그 사유를 검토하여 자체승인 또는 도에 변경승인 요청
 - *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 특정사업 편중작성 방지 지도
 - 시군 승인사항 : 도에서 승인한 사업내역 중 일부 사업 제외, 공사 완료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 집행잔액 등을 사업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등 경미한 변경사항
 - 도 승인사항 : 사업예정지 변경, 보조사업자 변경, 총 사업비의 10% 이상 증감이 필요한 경우 등 중대한 변경사항

바.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 시장·군수는 민간보조사업자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 ②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을 하도록 한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

-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 이용
 - 단, 자체 설계서를 이용할 경우 공사착수 전에 시·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단, 부득이한 경우 일반면허 보유자 참여 허용)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저온저장고, 예냉시설의 경우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업체

사. 준공검사 및 등기 등

- 사업자로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후 검사 실시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은 부기등기 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 * 시설·장비 등 자산취득성 사업 등의 사유화 방지 지도·점검 철저

아.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1)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적정 배분
- 기준 규격 이상 시설·장비 구입 등은 이면계약 방지를 위해 시군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투명성 확보
 - 시공·공급업체 선정, 계약 체결 및 사업자 자부담 포함 사업예산 집행(사업예산 절감 및 시설, 장비의 사유화 방지)
- 자부담 집행 및 정산자료 검증 강화
 - 자부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2에 따라 집행토록 조치
 - 사업 정산시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자필서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자료 검정 이행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규정 준수

2)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여 사후 지도관리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재산처분의 제한조치
 -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등기 의무화
- 시설·장비 등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및 수시 확인·점검(관리·운영실태, 등기부 열람 등)
-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세부사업별 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 투입된 사업의 건축물, 공작물 등 시설·장비는 보조지원 사업임을 알 수 있는 안내판 설치
- 운영실태 및 사업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우수 법인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홍보·판촉 등 연계 가능한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

5. 행정사항

- 서면 모니터링 결과 제출: 매 분기 말 다음 달 5일까지
 - ※ 서식 추후 별도 시달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2021. 1. 15.까지

사 업 계 획 서

□ 일반현황

- 단 체 명 : 00영농조합(대표 ☎)
- 위 치 :
- 설립연도 :
- 직원수 : 명(인증농가수 : 명)
- 품목 및 면적 :
 - 품목별 인증면적 :
- 생 산 량 : 톤
- 가공현황 : 톤
- 연간 매출액 : 백만원
- 주 판매처 등 유통현황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등
- 사업계획
 - 사 업 비 : 백만원(국비 , 시군비 , 자담)
 - 사업예정지 :
- 세부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단가 (천원)	소 요 사 업 비(백만원)			
			계	국 비	시군비	자 담
계						
가공공장	000m ² /1동					
포장기기	0대					

- 운영관리계획

□ 추진계획

-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향후 3년)
 -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계획을 주 품목별로 작성
- 친환경농산물 가공계획
- 친환경농산물 판매계획 및 출하방법
- 장기적 도달 목표 및 비전
 - 예) 향후 일자리 및 부가가치를 창출 등

< 발전지표 예시> - 가능한 항목만 지표설정

발전 지표	연차별 성과(추정)			비 고
	2020	2021	2022이후	
1. 법인(단체) 생산·매출액(백만원)				
2. 참여농가 소득증가(백만원)				
3. 일자리 창출(명)				
4. 수출(백만원)				

□ 기대효과

-
-

※ 관련서류 첨부

-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 ② 조직체 내 농가 영농현황(사업신청자 작성)
- ③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 (사업신청자 작성)
- ④ 부지사용승인서 (사업신청자 작성)
- ⑤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시·군에서 작성)
- ⑥ 사업대상자 평가표(시·군에서 작성)
- ⑦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 ⑧ 농업법인 신청사업자 지원자격요건 점검확인서(시·군에서 작성)

(붙임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시설· 장비명)	투 자 금 액 (백만원)					소 유· 수혜자
			계	국 고	용 자	지방비	자부담	

(붙임 ②)

조직체 내 농가 영농현황

농가명(세) (H·P)	지 번	경작 규모	친 환 경 인증현황	작목입식현황	판매방식
홍길동(○○세) (010-111-1234)	○○리 ○○ 지 번 별 작 성	ha	※ 없음, 유기, 무농약으로 구분 기재	※재배 품목 기재 (벼, 사과 등)	※직거래, 도매시장, 인터넷 등
총 계					
유 기					
무농약					
관 행					

(붙임 ③)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

- 조 직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ha
- 사업대표자 : 의 명
- 주요시설 · 장비설치계획
- 내 용 (사업계획서와 사업참여를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붙임 ⑤)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개요

- 조 직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 대표농가 : (참여농가 : 호)
- 투자계획 :

2. 검토의견

* 시장·군수는 기술센터, 농관원, 농협 등 각 기관·단체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의뢰한 후 의견서를 제출받아 종합 검토의견서 작성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붙임 ⑧)

농업법인 신청 사업자 지원요건 점검 확인서

신청시군 :

신청자 :

항 목	내 용	예	아니요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여부 (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 5명 이상 농업인 여부		
사업부지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		
	법인명의 소유권 등기 여부		
	사업관련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지목 : 00)		
사업계획서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지 여부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지원제한 기준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신청철회 또는 포기한 적이 있는지 여부		
	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양도.교환.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 법인등기부, 통장사본, 재무제표, 토지등기부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위와 같이 점검한 결과 지원요건에 충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검토자(담당 팀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1. 목 적

- 지리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에 적합한 지역을 「유기농 생태마을」로 육성하여 유기농업 조기 확산 및 정착
- 생태환경이 살아 숨 쉬는 마을 전체를 유기농업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등 농촌관광 자원화하여 주민 소득증대 도모

2. 추진방침

- 유기농 생태마을은 상향식사업으로 지역주민이 자율권을 가지고 마을발전과 유기농업 내실화를 위한 사업 선정
- 유기농업 실천에 대한 주민 공동체 의식이 뚜렷하고 친환경 영농기반이 잘 갖추어진 일정규모 면적 이상 유기인증을 획득한 마을
-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의식주 및 공동이용시설이 환경 친화적이면서 각종 농촌문화 및 친환경농업의 현장체험, 민박(유기농식단) 등 소비자 체험·체류를 통해 농가소득증대를 실현하는 마을

3. 지원근거

-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5조(지원 사업)
-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20년~2024년, 유기농 생태마을 5개년 계획 포함)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4. 사업시행 주요내용

1) 2020년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량 : 2개소 *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
- 사업비 : 1,000백만원(도비 450, 시군비 450, 자담 100)
 - 재원비율 : 도비 45%, 시군비 45%, 자담 10%
- 사업내용 :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및 육성 목적에 부합하며 마을 주민들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발굴한 사업

2) 지원대상(조건)

- 신청 당시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된 마을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유기농 생태마을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마을 예) 2020년 지원사업 완공 시 2026년부터 추가사업 신청 가능
- 유기농 생태마을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자연마을 단위의 마을
 -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함
 - 마을이란 농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리(里) 또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리를 말함
- 관행농업 지역과 격리되어 유기농업 실천에 유리한 지역으로 구성농가 20호, 경지면적(개간지 포함) 20ha 이상 규모화 된 마을
 - 전체 경지면적 중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50% 이상이고, 유기인증 면적이 경지면적의 20% 이상인 마을
- 마을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환경 친화적이고 자원순환형 유기농업으로 가기 위한 주민 공동체 의식이 뚜렷한 마을
- 마을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을 대표자의 리더십 구축, 참여주민의 교육 등으로 사업추진능력이 갖춰진 마을
 -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가 조직되어 있고, 마을 공동으로 사업비 자부담이 확보된 마을

3) 사업계획 수립절차

- 시군과 자문위원회 공동으로 마을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대상사업 발굴, 사업시행계획 수립
- 시군을 경유하여 도에 제출, 도에서 사업계획 최종 확정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은 본 지침상의 지원대상 등을 참조하여 지역 및 작목특성에 맞게 수립 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
- 기 설치된 생산·유통·가공·처리시설과의 연계활용 방안 및 계획 중인 타 사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 동일 시설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4) 대상사업

- 가급적 기존사업과 차별성이 있는 부가가치와 소득 창출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발굴
 - 다양한 사업보다는 선택과 집중차원에서 가급적 소수의 사업을 선정하여 투자성과의 극대화
 - 마을 간담회, 회의 등을 통해 마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사업 발굴
 - 대상사업은 자체적으로 「유기농 생태마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 및 컨설팅 실시
- ※ 자문위원회 구성 : 시군 친환경농업과장, 시군친환경농업연합회장, 마을대표, 친환경 관련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

사업유형 예시

① 마을 주민 친환경농업 역량강화

-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상호토론, 교육, 벤치마킹 등을 통해 주민 역량강화
- 친환경 재배기술, 친환경제제 제조기술 등 외부 전문가 교육

②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 제조·가공 등 전(前) 단계에 필요한 공동 생산·보관·유통시설 지원(제조·가공 등과 연계하여 지원)
-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개별·공동시설(미생물배양기, 친환경 벼 건조시설, 포트육묘이앙기 등)

③ 친환경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지원(저온저장고, 세척·절단·포장시설, 집하·선별시설 등)

④ 친환경 농산물 체험·전시 등 내실화 시책

- 생산된 농축산물 또는 제품의 홍보·체험 등을 위한 소규모 체험·전시시설(신축 및 리모델링 포함), 공동판매장 시설 지원
- * 공동판매장은 농축산물 또는 제조상품의 생산자들이 생산한 물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임
- 팜파티 등 친환경농업 체험시설
- 온·오프라인 판매장, 직거래 판매장 등

5) 사업대상 마을선정 방법

- 시군별 생태마을 도에 추천 → 1차 마을현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 2차 현지 종합평가 → 선정

6) 대상추천

- 추천대상을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당시 마을명칭으로 지원 사업 추천이 가능
하나 지원 사업계획 내용 중 인·허가 절차 이행이나 향후 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사업추진의 책임성, 완료된 시설·장비 등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영농조합, 농업회사 법인 등의 농업법인으로 사업대상을 추천

단,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당시 마을명칭으로 대상을 추천할 경우 향후 사업 착공 전
까지 농업법인으로 변경한다는 조건도 가능(참여주민 전체가 동의한 회의록 동의서 등 제출)

○ 마을별 제출서류

- 유기농 생태마을 사업신청서(서식1) 1부
- 유기농 생태마을 사업계획서(서식1-1) 1부.
- 「유기농 생태마을」 추천 조사표(서식1-2) 1부.
- 지적도 1부(마을 중심 지적도에 필지별 인증단계 색깔표시)
- 법인 명의로 개설된 별도의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1부.(자부담 확보 내역 확인용)
- 사업 주체 선정에 대한 마을 주민 동의서(서식5) 1부.

○ 시군 제출서류

- 유기농 생태마을 신청마을 평가표(서식2)) 1부.
- 공모사업 현장 점검표(서식3) 1부.
- 인허가 관련부서 검토의견서(서식4) 1부.
- 사업 주체 선정에 대한 마을 주민 동의서(서식5) 1부.

7)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시군 추천마을 현황 및 사업계획 등 지정기준 적합여부 서류검토, 현장조사

○ 평가위원 종합평가

- 후보마을 대상 전문가 평가단(5명 내외)을 구성·평가
- * 종합 평가단 구성(안) : 친환경농업인단체, 유기농명인,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유통전문가,
관련 전문가 등

5. 사업추진체계

1) 도

- 도는 기 지정된 유기농 생태마을을 대상으로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 및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군에 시달(전년도 7월)

2) 시·군

- 시·군에서는 통보된 기본계획 및 사업지침을 기 지정된 유기농생태마을에 홍보하여 마을에서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사업신청 : 전년도 7~8월)
-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의향이 있는 마을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계획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도에 추천
 - 유기농 생태마을 추천 : 10. 31.까지(시장·군수 → 도지사)
- 사업계획서상 제반 사업내용의 인허가 관계 등 적법성, 지침상 요건과의 부합 여부, 선정효과 등을 검토
 - 농업기술센터 : 사업계획서 작성, 마을리더 및 참여농가에 대한 교육 등 지원

6.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1)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부사업으로 사업비 적정 배분
-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세부항목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되, 적정 여부 확인
- 사업계획 승인 이후 세부 사업간 사업비 변경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는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 자체승인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부지변경, 사업비의 30%이상 조정 등 중요사항은 도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규정 준수

2)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 지도관리 철저

- 시군에서는 「유기농 생태마을」 지원 후 매년 친환경농업 실천현황을 조사하고 친환경농업 의식교육 지속 실시로 면적 확대 추진
- 「유기농 생태마을」은 마을 주변 농경지 필지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마을 사무실에 비치하고 선진지 견학 등의 장소로 제공
 - 지번, 지목, 면적, 경작자, 재배작물, 인증단계 등 포함 대장 작성

7. 행정사항

- 시군별 「2020년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후보지 도에 추천 : 2020. 4. 30.한
- 서류평가 및 현지 종합평가 실시 : '20. 5. 1. ~ 5. 31.
- 2020년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 '20. 6.중
- 기 지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2021년 사업대상자 추천 : '20. 7. ~ 8.
- 2021년 사업대상마을 선정 : '20. 9.

[서식 1]

유기농생태마을 사업신청서

[사업 신청서] - A4용지 5~6장 내외

신청자	마을명칭(위치)					
	성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신청 단체현황	법인, 작목반, 마을회 등	참여농가수 (마을농업인 한정)		호 (유기, 친환경)	
신청내용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친환경인증현황				
		유기농 인증면적		ha		
		무농약 인증면적		ha		
	사업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국고계	보조	용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p>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p> <p>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p> <p>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유기농생태마을 추천조사표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친환경농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p>						

-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91조 관련 별표10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유기농 생태마을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기본양식을 예시한 것으로 마을별 현실에 맞게 작성(A4 용지 6~7매 정도 작성)

마을현황

- 기본현황, 친환경 인증현황, 소득현황 등
 - 친환경인증 현황(친환경 인증농가 작성(유기, 무농약)-마을주민 여부 구분)
 - 친환경인증 면적(마을 주민 여부 구분하여 작성)
- 행복마을 ·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지정현황

사업목적

- 사업추진 배경과 필요성

사업계획

- 사업개요, 사업내용, 추진주체(마을주민 참여 등)
- 추진일정, 사업비 투자계획 등
- 자문위원회 운영결과 내용 및 반영 등

친환경 확대 계획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및 내실화 계획(방안)

마을 발전계획

- 친환경농산물 판매망 확대 및 소득증대 등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공모사업 현장점검표

시 군 명		마을명(대표자)	
소재지			
사업내용			
현장방문일		담당자	

점검항목	확인내용	증빙서류
1. 친환경(유기농) 인증	예)친환경(유기농) 인증면적	예)친환경(유기농) 인증서
2. 사업부지 확보 여부	예)토지소유자, 토지 근저당설정 등	예)토지승낙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3. 농지법, 건축법 등 관련법저촉여부	예)가·부	예)관련부서 사전협의 공문
4. 주민의사 수렴 여부	예)회의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됐는지 확인	예)주민회의록, 주민동의서 등
5. 타 명칭 지정(사업) 여부	예)행복마을, 테마마을 등 타 명칭 지정 확인	예)마을 지정서
6. 자부담 재원 확보	예)확보액	예)통장사본 등
종합의견 ○		

[서식 4]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의견서

- 적 요 :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
- 목 적 : 사업계획서 검토 및 가능여부 판단
- 협의요청부서(기관) :
- 사업시행자 :
- 신청내역

(단위 : m²)

위 치	지 목	지 적	전용면적	전용목적	용도지역	비 고

관련법규 검토(협의)

대상법규	검토(협의)의견	검토결과 (가·부)	검토자		비 고
			직	성명	
건축법					
농지법					
산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관련법					
도로법					
기타 관련법					

붙임 : 관련부서 사전 협의 회신 공문

[서식 5]

사업주체 선정에 대한 마을 주민 동의서

- 사업주체 : (인·허가 등 법적 행위요건을 갖춘 농업법인)
- 사업부지(주소) :
- 사업내용 :
- 회의내용 : (사업주체 선정 및 사업 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 명시)

년 월 일

* 주민 2/3이상의 동의 서명 필요

사업주체(대표자)	성명	주소	인(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주민)	성명	주소	인(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주민)	성명	주소	인(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주민)	성명	주소	인(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주민)	성명	주소	인(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주민)	성명	주소	인(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주민)	성명	주소	인(서명 또는 날인)

18 과수농가 비가림 하우스 시설 지원



1. 사업개요

가. 목 적

- 무농약 상향에 어려움이 많은 과수농가에 각종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여 친환경 과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비가림 하우스 시설 지원
- * (과수 비가림 하우스 재배의 특징) 병해충 피해율과 농약살포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등 편리한 농작업이 가능

나.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다. 사업계획

(단위 : ha,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비(20%)	시군비(50%)	자부담(30%)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2.5ha	560,000	112,000	280,000	168,000

2. 사업 추진

가.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과수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농업인 및 법인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 현재(친환경인증 경력 농가)과수재배 농가→과수재배 경험 있는 농가→영농경험 농가→신규 농가
 - * 영농경험이 있는 농가 선정으로 친환경농업 인증 취득이 용이토록 하고자함

나. 지원요건

- FTA 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표준규격」 또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다. 의무 및 보조금 회수

- 해당 시설은 사업시행연도(2020년 12월) 안에 완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설 완공 후 3년(36개월) 이내에 과수 무농약 이상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아야함
- 시설 완공 후 친환경인증 받은 기준일로 부터 최소 사후관리 기간 동안 인증 유지를 해야 함
 - ※ 2020년 이전 사업자도 적용('16년~'19년)
- 3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무농약 이상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 유지를 못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 특별한 사유 예시 : 인증 기간에 인증기관 지정취소에 따른 불가피한 인증기관 변경 등

라. 지원조건

- 사업비 기준 단가 : 22천원/m²
 - FTA 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표준규격」 또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의 적용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기준 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시설 종류에 따라 단가변동 가능
- 지원기준 : 도비 20%, 시군비 50% 자부담 30%
- 지원한도 : 1인당 지원 면적 상한 2,000m²까지 지원가능
- 사업주관 기관 : 시장·군수
- 사업비 배정 기준
 - 시군별 전년도 과수 인증 비율, 전년도 불용액·이월률, 전년도 보조사업자 인증 이행률, 사업포기 및 사업자 미선정 여부 등 반영하여 사업비 배정

마.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1)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기준 규격 이상 시설 등은 이면계약 방지를 위해 시군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투명성 확보
- 자부담 우선 집행 및 정산자료 검증 강화
 - 사업 착수할 때부터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토록 조치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제2항
 - 사업 정산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자필서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자료 검정 이행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규정 준수

2) 친환경인증 유지기간

- 본 사업목적과 취지로 볼 때에 사업추진을 통해 일정기간 이상 대상 과수 농가의 친환경인증이 유지되어야 함
- 따라서, 최초 친환경인증은 사업완료 후 3년 이내 획득하여야 하고, 이후 연속하여 최소 5년 이상 유지되어야 함
- ※ 인증이 연속 유지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인정여부는 중단사유, 인증의지, 인증추진 등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시군에서 결정

3)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여 사후 지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제한
- 시설 등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및 수시 확인·점검(관리·운영실태 등)

바. 행정사항

- 사업 추진상황 보고 : 2020. 6.말, 12.말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2021. 1. 17.까지

[보고서식]

1. 사업 대상자 및 추진상황보고(6월, 12월)

사업대상자 현황				사업계획					추진상황 (구체적 기재)
성명	인증 단계	품목	재배면적 (m ²)	사업비(천원)				비가림 시설면적 (m ²)	
				계	도비	시군비	자담		

2.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m², 천원)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도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세부 사업자 내역

사업자 성명	사업실적		인증실적			
	시설위치	비가림 시설면적 (m ²)	인증 일자	인증 단계	품목	인증면적 (m ²)

[신청 서식-앞면]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 신청서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연락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나. 재배현황

(단위 : m²)

구 분	품 목			
	계			
면 적	m ²	m ²	m ²	m ²

다. 친환경 인증현황(신청당시)

품목명	인증연도	인증단계	인증면적
			m ²

2. 사업계획

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설치 대상농지

위 치	면적	비 고
	m ²	

나. 세부 사업내역

형 태	규모(m ²)	소요액(백만원)	추진시기(기간)	비 고
단동 또는 연동				

[신청 서식-뒷면]

다. 비가림하우스 설치규격

규격명	폭(m)	높이(m)	설치간격(cm)	서까래 (Φ(mm)×t(mm)@cm)	가로대 (Φ(mm)×t(mm))

3. 인증계획

품목명	인증계획날짜	인증단계	인증면적
			m ²

본인은 위와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사업비를 지원받고, 시설 완공 후 3년 이내에 인증 계획대로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을 받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 인증을 유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나 인증을 유지 못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안내 받았으며, 친환경 미인증에 따른 보조금 회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친환경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

19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으로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
 - 집단화된 들녘 및 농지구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등 (공동)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

나.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다. 지원계획

- 신규사업

(단위 : 천원)

사업량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국비(30%)	도비(25%)	시군비(25%)	기타(20%)	
6개소	4,699,000	1,409,000	1,174,750	1,174,750	940,500	

2.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기본방향 >

- 중·소규모지구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함께 교육, 마케팅 등 S/W를 묶어 지원하고, 우수단지·지구에 시설·장비 등을 추가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사업 추진
- 기존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14년도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 시행지침」등에 따라 사업추진절차, 시설·장비관리,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 추진

가. 사업대상자

1) 친환경농업지구

-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 사업유형 : 생산중심형, 6차산업형, 유통·소비중심형, 협동조합형
 - 생산중심형, 6차산업형, 협동조합형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유통·소비중심형은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한 소비자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시행기관 : 시군

2)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 사업대상자 : 기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 생산자단체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시행기관 : 시군

나. 지원자격 및 요건

1) 친환경농업지구

- 벼 등은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단, 엽·근채류, 과채류 등은 2ha, 참여농가 5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 다만, 작물 특성 및 재배환경에 따라 사업구역(농경지 면적)은 시·도(시·군)의 검토를 통해 조정 가능
 - 전체 사업구역 대비 친환경농업을 10%이상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 지구내 친환경인증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생산자단체(사업 신청 당해 연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인정)
- 청년창업농이 설립한 생산자단체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규모를 제한하지 않고 5호 이상일 경우 지원
- 유통·소비형으로 신청할 경우 지자체와 사전 협약 선행

○ 사업대상자 선정 우대조건

- 사업주체가 직접 농가와 계약재배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판매하거나, 벼는 RPC와 연계하여 계약재배 출하하고, 원예작물은 인근 APC와 연계한 공동출하 등 판매계획이 충실 시 선정 우대
- 2차산업 및 3차산업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한 생산자단체 우선 선정
- 해당 지자체(시·군)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가점 부여
- 사업성과가 우수하여 중앙단위의 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지구가 추가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추진 연도와 상관없이 인센티브 부여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논에 타 작물을 재배(쌀 생산 조정제)할 경우 사업성을 검토하여 가점 부여
- 친환경 인증비 지원 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가에만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지자체(시·군)는 가점 부여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 이행점검 조사대상('08년 이후 선정)에 있는 사업지구·단지 중에서 선정 후 3년간 사업성과 부진지구·단지*의 관할 시·군에 대하여 3년간 지원 배제

* 부진지구·단지 : 선정 후 3년간 사업구역 내 인증 재배면적이 선정 연도말 기준 증가가 없는 지구·단지

** 계속 사업일 경우 최종 년차를 선정 연도로 함

- 다만, 지원배제 지역에 해당되나, ①당해 시·군 전체의 유기·무농약인증 면적이 최근 증가세로 사업지원을 통해 성과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또는 ②시군내 부진지구 외 우수지구가 있어 연계사업시 유기·무농약 인증면적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로서, ③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이 기존 부진지구와 차별성이 있고, ④사업계획이 충실하며, ⑤지역의 친환경농업 육성 여건 및 필요성 등을 감안시 사업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도에서 사업자 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식품부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음.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 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단, 개별 작목반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단체가 농업법인을 설립한 경우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

2)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 기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로서 시설·장비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 3년이 경과된 단지·지구의 사업주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 사업성과가 우수한(인증면적 증가 등) 단지·지구
 - 단지 및 지구내 친환경인증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사업신청 당해 연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인정)
 -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 등을 통해 경영컨설팅 이수(사업신청 당해 연도 경영컨설팅 이수 계획 인정)

다. 지원 대상

1) 친환경농업지구

- H/W : 유기농업자재 생산 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장비 등
- S/W : 농업인 역량강화 및 조직화를 위한 교육, 홍보프로그램 운영, 공동 마케팅, 디자인·공동브랜드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등
 - (생산중심형)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시설·장비 등
 - * 가공시설·장비는 사업성 등이 검증될 경우 포함 가능
 - (6차산업형) 친환경농산물 유통, 가공, 교육, 체험 등 6차산업화 연계 시설·장비 등
 - (유통·소비중심형) 지자체와 협약 체결 후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유통, 판매시설·장비 구축 등
 - (협동조합형) 공동으로 생산, 유통, 가공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S/W는 사업비 10% 이내에서 지원 가능
 - * 사업지구의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관할 지자체의 S/W 추가 지원계획 등을 지자체의 사업계획 검토의견서에 포함할 것
- 지원제외
 - 부지매입비, 부지 및 건물의 임차비, 사업부지 기반조성비
 -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비

- 농기계와 차량 구입비. 단, 친환경농업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 퇴비살포, 제초, 병해충 방제 등 농기계 및 친환경농산물의 저온유통을 위한 소형 냉장차량 등은 지원 가능
- 개별농가단위 생산재 구입비(비료, 미생물제재, 종자 등 농업자재)
- 홍보, 마케팅 등 추진 시 주체로서 공동참여는 인정하나, 지원 등을 통한 간접참여는 배제
- 인건비 등 단순 사업운영비

2)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 우수단지 및 지구의 친환경농산물 취급물량 확대 등으로 부족한 생산·유통·가공 등 시설·장비의 확충 및 노후시설의 개보수, 교육·컨설팅, 판매시설 등
 - 친환경농산물 취급 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및 세척·포장·가공시설 등의 용량 증설 및 개보수 등
 - 암모니아가스 등으로 인한 시설부식, 탈취시설 노후 등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퇴비시설의 개보수 및 생산량 확충 등을 위한 시설·장비 증설
 - S/W는 사업비 10% 이내에서 지원 가능
 - * 우수단지·지구에 대한 지자체의 농업인 교육·컨설팅, 공동 마케팅 등 S/W 지원계획을 지자체의 사업계획 검토의견서에 포함할 것
- 지원제외 : 친환경농업지구사업 지원제외 사항 적용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1) 일반원칙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는 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공동이용시설이 아니더라도 사업품목 및 계획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통해 부대조건을 달아 지원 가능

2) 친환경농업지구

- 친환경농업지구사업에 필요한 H/W 및 S/W의 구축을 위해 사용
 - H/W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필요한 시설·장비

< 지원가능한 주요 시설·장비 예시 >

구 분	세 부 사 업 매 뉴	비 고
가. 유기농업자재 생산시설·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생물 배양시설 및 부대장비 - 미생물 배양기, 배합기, 로다, 분쇄기 등 ○ 목재파쇄기(툽밥제조기), 왕겨자원화 시설·장비 ○ 농림축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 제조 시설·장비 - 퇴비 제조장, 지렁이 분변토 제조장, 배합기 등 <p>*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1의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및 병해충관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 유기농업자재의 생산 시설·장비</p>	* 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장비
나.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무농약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 토양개량제 및 퇴비 살포장비, 심토파쇄기 등 토양관리 시설·장비 ○ INM(병해충종합관리)·IPM(작물양분종합관리) 실천에 필요한 시설·장비 ○ 기타 농업환경 오염경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 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장비
다.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시설·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유통·제조·가공 시설·장비 -예냉시설, 선별기, 포장기, 집하장, 공동작업장, 제조·가공, 판매 시설 등 -기존 판매장 등에서 간단한 가공식품(팝콘 등)을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소형장비 -친환경농산물 소형 저온유통 차량 등(3.5톤 이하) 	* 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장비
라. 친환경농업 교육 체험시설·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 농업인 교육장, 기자재(PC 등) 등 -이용자 수요가 다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지구에 한함 -마을회관 신축, 휴·폐교 임대료 등은 제외 ○ 체험 : 체험학습장, 원두막 등 소비자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
마.기 타	○ 설계·감리비 등 부대비용	

- S/W : 역량강화, 상품화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강화에 소요비용

구 분	용 도
농업인 역량강화	○ 지역리더양성 교육·컨설팅 등
R&D	○ 현장애로해소 생산기술 개발, 상품개발 기술지원 등
산업화 등	○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등록, 공동 홍보·마케팅, 공동 브랜드 개발 및 관리, 산지유통조직 구축 등

3)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사업에 필요한 H/W 및 S/W 구축을 위해 사용
 - 기 지원된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판매시설 및 농업인 교육과 소비자 현장체험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확충 및 개보수
 - 6차산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 체험 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는 신규 추가 가능

마. 지원형태 및 한도액

1) 친환경농업지구

- 재원 : 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시설·장비 등의 추가지원 가능
- 사업기간 : 지역여건, 사업규모 및 계획에 따라 자율설정(1~2년)
 - 사업기간은 1년을 원칙 하되, 여건 등에 따라 1년 추가 가능
 - 1년사업 : 당해 연도 국고 100% 지원
 - 2년사업 : 1년차 국고 30%, 2년차 70% 지원
 - * 지구별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 연차별 지원액 조정 가능
- 사업의무량 : 사업기간 중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설·장비의 설계 및 설치 등 마무리
 - 2년차 사업은 1년차에 농업인조직화 등 역량강화,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중점하고, 2년차에 시설·장비 설치완료 후 지속관리

2)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 재원 : 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시설·장비 등의 추가지원 가능
- 사업기간 : 1년(당해연도 국고 100% 지원)
- 사업의무량 : 사업기간 중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설·장비의 설계 및 설치 등 마무리

3.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e-나라도움 시스템이 본격 도입되어 동 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관리, 중요재산 관리 등을 시행하게 됨

가.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전년도 12월)

시·도/시·군

- 시·도(시·군)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대상자 공개 모집을 실시하고 사업계획서를 접수(전년도 4월말까지)
 - 공모내용/기간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10일 이상
- 시·군은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시·군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을 시·도에 제출(전년도 5월말까지)
 - 사업계획서 검토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자격요건, 사업규모 적정여부 등 지침 준수여부 중점 검토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전년도 6월말까지)

관련기관 협조사항

- 시·군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 지역농협,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사업신청지구의 사업계획서의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 의견서(붙임 ⑤)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 관련 「별지 1호 서식」의 '농림축산식품 자율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동 규정 제29조제1항 관련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성검토서, 지침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군에 전년도 4. 30까지 제출

*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사업은 지침에 정한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

<친환경농업지구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① 사업자는 지역여건, 영농규모, 작목 등을 감안하여 총사업비 한도 내에서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역실정과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참여 농가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
- ②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무농약 이상)에 적합한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 투자계획을 적절히 수립 하여야 함.
-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시설·장비가 지원조직의 면적, 농가 수, 품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지원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지도
- ④ 토양개량과 농약·화학비료 감축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토양검정, 유기자재 사용 처방서, 윤작(녹비작물 포함), 저항성품종 재배, 천적, 물리적 방제, 유기농업 자재 등
- ⑤ 미생물 배양시설은 농촌진흥청이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한 시설을 우선 활용하여 친환경농업 관련 시설의 중복투자가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 ⑥ 상기 “지원 가능한 시설·장비 예시” 외에 시설·장비도 지역특성상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 가능. 또한, 예시 중 가~다 항목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되, 투자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음

- (i) 나 항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와 다 항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장비를 갖추 수 있도록 우선적 투자 계획
 - (ii) 가 항의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는 사업메뉴 나, 다 항의 시설·장비가 갖추어진 경우에 투자
 - (iii) 라 항의 친환경농업 교육시설·장비는 시·군 등 기존 교육 시설·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되 사업메뉴 가 ~ 다항이 갖추어진 경우에 투자
- ⑦ 농림축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 제조 시설 및 부대시설·장비는 지구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로 설치
- 지구 내 경지면적을 고려하여 필요량을 산출하여 적절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함
 - 퇴비 제조시설 설치 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퇴비 제조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기술 지도를 받을 것.

나.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도 단위 평가결과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예비사업자 선정(전년도 9월)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에 의한 평가 실시
 -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자체 1차 평가 결과의 타당성 등
 - * 평가계획은 별도 수립
- 시·도별 경지면적, 유기·무농약 인증면적, 지구사업 추진 성과, 사업 신청량, 과거 사업비의 이월·불용액 발생여부 등을 고려하여 예비사업자 선정 및 예산편성 추진
 - 사업 모니터링결과, 사업성과 부진지역은 3년간 지원이 제한됨.
- 지자체의 사업비 예산 계상을 위한 가 내시(전년도 10월)
 - 예산 가내시에 불구, 지자체의 본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지연이 초래될 경우에는 당해 지자체에 패널티* 부여
 - * 당해 시군은 2년간 지원 제한.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적용
- 당년 사업예산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되면 예비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사업 당년도 1월)

시·도/시·군

- 시·도는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득한 사업신청자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계획서, 검토의견서 등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3월말)
- 생산자협회,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가공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 지역의 친환경농업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지표(붙임⑥, ⑦)에 따라 심사
- 시도 평가기준 : 사업목표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재무구조의 건전성, 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하되, 현장실사를 병행할 것
- 사업자의 사전 사업 준비 상태, 산지유통주체로서 발전 가능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여 적극적인 사업자를 선정할 것
- 사군별 친환경농업 여건과 기 지원된 친환경농업지구의 사업성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

다.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사업자가 수립할 수 있도록 사업자 확정 통지(1월)

시·도/시·군

- 농림축산식품부의 확정된 예산과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및 사업시행(1월)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시 시설·장비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지구 내 참여농가의 적극적 참여 유도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농업환경 기초조사
 - 시장·군수(지도기관)는 사업 실시 전 아래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업예정지에 대하여 농업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기간 동안 환경변동실태조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토양기초조사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 농업용수 수질검사 : 도 농업기술원
 - 토양검정, 유기자재 사용 처방(유기·무농약 벼 재배시) 등 기타사항 : 사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계획 변경

- 기본원칙 :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불요한 사업계획 변경을 지양하고, 당초 사업계획대로 지체 없이 시설·장비 설치공사 완료. 다만, 사업주체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아래의 절차 등을 거쳐 변경 가능
- 변경 절차 : 시도 승인사항은 시장·군수의 검토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변경·승인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농식품부 승인사항은 시도에서 타당성, 당위성, 실효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에서 최종 검토·승인
- 시도 승인사항 : 세부 메뉴 사업의 시설·장비 규모, 규격, 단가 등의 증감으로 변경되는 사항, 시설·장비 설치공사 완료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 집행 잔액 등을 사업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등의 변경사항
 - * 당초 사업 계획 상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고,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 승인.
- 농식품부 승인사항 : 사업주체, 사업부지 및 사업구역 변경, 총 사업비의 30% 이상 항목 간 증감이 필요한 경우 등 중대한 변경사항
 - * 사업부지 변경 제한 : 사업자 선정 후 사업부지 변경은 불가함. 단, 당초 부지가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형질변경이 불가하거나, 시책사업(공단, 도로 등)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 허용되므로 사업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로 인한 사업취소 등 불이익은 사업자 귀책사유에 해당됨

○ 시공업체 선정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되, 농가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시설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가능

○ 설 계

- 설계도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시설은 개발된 설계도에 따르고, 유사모델이 없거나 고난도 시설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건설업 법상 유자격 업체가 작성한 설계서에 의해 시공
- 농가가 직접시공이 가능한 시설과 개발된 설계서의 규모를 현저히 늘리거나 변형시키기를 원할 경우에는 자체설계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 예냉 시설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설계도를 이용(한국식품연구원 등)

○ 공사 감리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유자격 감리업체와 사업 착수 전에 감리를 계약하여 철저한 감리로 부실공사 방지

다만, 표준설계도가 제작된 간이시설, 품질규격이 명확한 장비 등 시장·군수가 준공검사나 확인 등으로 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시설은 감리 생략가능

- 시공업체가 공사 감리를 할 수 없음.

○ 준공 검사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 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시장·군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지원을 받아 준공검사 실시

* 사업자는 사업내용 중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준공검사 신청

○ “지구(지역)” 개념에 충실하기 위하여 지구 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시설·장비의 설치는 지구(사업지)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다만, 부득이하게 지구 내에서 친환경농산물 가공품의 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구 외의 원료로 하여 친환경농산물 가공품 생산 및 간단한 가공식품(팝콘 등)을 제조·판매하는 소형 장비는 지구 외에 설치·운용 가능

시·도/시·군

○ 사업자 선정 후, 지구 내 참여 농업인은 친환경농업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게는 경영컨설팅 이수 의무가 부여됨.

- 농업인 교육 : 정부의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 농진청, 도 농업기술원,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친환경농업인 교육을 연 7시간 이상 이수
- 경영컨설팅 : 정부의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농진청, 지자체 등이 지원하는 경영컨설팅 사업을 통해 사업계획,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영개선, 브랜드 개발, 마케팅분야 등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사업자 선정 후 2년 이내 이수

라.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분기별 자금배정계획, 시·도의 자금배정 신청 등을 근거로 시·도별로 자금배정

시·도/시·군

- 시·도는 배정받은 국고보조금과 함께 시·도비를 확보하여 시·군에 배정
-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사업비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짐.
 - 시장·군수는 사업자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한 후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농가 직접 시공시는 농가)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정산 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와 농가 직접 시공 시는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지구 대표자 및 시공업체로부터 거래할 은행계좌를 신고 받아 정산 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비 정산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사업완료 다음년도 1월말까지)

마.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연 1회 이상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
 - 시설·장비 관리실태, 담보제공 여부, 지원 목적 외 사용여부, 양도·교환, 대여 등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보한 중요재산 관리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분기별 지원 시설·장비의 설계, 업체선정, 착공, 준공 등 설치상황 및 예산집행실태를 점검하여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필요시 수시, 별지1호 서식)

- 사업지구의 친환경농산물인증 실적·농가·면적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한 “친환경 농업이행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연 2회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매년도 6, 12월말 기준으로 조사하여, 당년 7월말과 익년 1월말까지)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친환경농업 이행상황을 평가·분석한 후, 대책 등을 포함하여 이행 보고서 작성·제출하고, 사후관리 및 사업지도에 철저
 - 시장·군수는 이행실적 부진지구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하여야 함.
 - 선정연도 기준 10년 동안 조사대상에 포함
 - 사업성과는 인센티브 및 페널티, 사업예산 배정 등 자료로 활용
- 시장·군수는 친환경농업지구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 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지도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 기계 및 장비 (축산분뇨처리 시설 포함)	구입일 또는 준공일	5년간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규정」 제32조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사업대표자는 친환경농업지구사업으로 지원된 장비와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지구별로 “공동이용시설장비 운영약관”을 만들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친환경농업지구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대상에 포함, 경영컨설팅이 실시되도록 추진
 - 시군별 기술센터, 친환경농업단체 등의 농업현장 기술지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농업기술센터소장(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환경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년도부터 3년간 지구내 농업환경변동실태(토양, 수질 등 성분분석)를 조사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농업기술센터소장(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직원을 기술지도 전담자로 지정하여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작물별 시비량, 유기자재 사용 처방서(유기·무농약 벼 재배에 한함)에 의한 적정한 유기물 투입, 종합농토배양 및 농산부산물 이용방법 등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현장 기술 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사무소장)은 사업추진년도부터 3년간 지구 내 생산물(벼 등 대표작물)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수확시기에 농약잔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사무소장)은 사업참여 농가에서 재배조건에 맞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함

참여농가

- 참여농가는 사업계획서의 지구 내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계획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함
- 참여농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제제 및 처벌》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당해 보조금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에는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바. 성과측정단계

< 평가지표 측정 >

- 지구별 친환경농업 이행실적 및 사업자의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을 평가

- 평가지표 : 유기·무농약 인증실적 및 사업주체의 취급실적
- 평가일정 : 매년 1월중
- 평가방법 : 전체 농산물 생산면적 대비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 비중 및 사업주체의 취급실적 대비 지구 내 생산량
- 평가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 및 지자체 행정조사자료 활용

< 자료제출 >

- 보조사업자는 시설·장비설치공사 완료 후 10년간 사업성과 제출 의무가 있으며, 지자체 행정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사.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친환경농업이행실적에 대한 성과 분석
 - 사·도별 사업지구의 인증면적 등을 관리하여 인센티브 부여

《환 류》

- 우수단지 및 지구에 한해 추가 시설장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친환경농업부문 포상대상자로 추천
-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사례에 소개하여 홍보
-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도(시군)는 사업지원 제한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4.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친환경농업지구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9.12월)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20.4.30.까지)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 아래의 구비서류 참조
- 시장·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20.5.31.까지)하고,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20.6.30.까지)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공통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성검토서(별지 제4호서식)
 -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지자체 포함)현황 (붙임①)
 - 사업참여농가 영농상황 (붙임②)
 -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붙임③)
 - 부지사용 승인서 (붙임④)
 - 지자체와 체결한 협약서(유통·소비중심형만 해당) (붙임⑤)
 - 사업대상지구 참여농경지 지적도(지번으로 집단화 여부를 판별이 가능한 것)

① 생산중심형

○ 사업내용

-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단, 엽근채류, 과채류 등은 2ha, 참여농가 5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유통하기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시설·장비, 역량강화 및 조직화 교육 등(가공시설·장비는 사업성 등이 검증 될 경우만 지원)
 - ※ 체험시설·장비, 홍보프로그램, 마케팅, 디자인·공동브랜드개발, 제품 및 기술 개발, 지적재산권 등록비는 지원 제외
 - ※※ 홍보프로그램, 마케팅, 디자인·공동브랜드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비는 사업종료 3년 후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보완사업으로 신청

○ 지원기준

- 시설·장비, S/W 지원을 위해 개소당 총사업비 20억 원까지 지원

② 6차산업형

○ 사업내용

- 이미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생산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생산자단체가 유통, 가공, 체험, 교육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장비 지원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유통, 가공, 교육·체험 시설·장비, 마케팅, 디자인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등
 - ※ 생산 시설·장비는 지원 제외

○ 지원기준

- 시설·장비, S/W 지원을 위해 개소당 총사업비 10억 원까지 지원

③ 협동조합형

○ 사업내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생산, 유통, 가공, 가공할 수 있는 시설·장비 지원
- 청년창업농을 육성하기 위해 선정년도 기준 구성원이 40세 미만인 조합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공동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시설·장비, 조직화 교육 등
 - ※ 교육·체험시설·장비, 홍보프로그램, 마케팅, 디자인·공동브랜드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비는 지원 제외
 - ※※ 홍보프로그램, 마케팅, 디자인·공동브랜드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비는 사업종료 3년 후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보완사업으로 신청

○ 지원기준

- 청년창업농들이 함께 설립한 생산자단체는 영농규모를 제한하지 않고, 5호 이상일 경우 지원
- 시설규모에 따라 개소당 총사업비 10억 원까지 지원

④ 유통·소비중심형

○ 사업내용

- 소비자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판매할 수 있는 시설·장비 구축비 지원
- 다양한 품목의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인접 시군과 연합하여 신청 가능
 - ※ 단, 판매시설은 반드시 지자체에서 건물 임차보증금을 확보되어야 하며, 친환경농산물 전용 판매장 설치비(내부 인테리어, 부대공사,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전용 판매장 설치비, 유통시설·장비

○ 지원기준

- 시설규모에 따라 개소당 총사업비 10억 원까지 지원

(별지 제1호서식)

사업 추진상황 보고

□ 지구명 : (주소 : 전화 :)

생산자단체명	대표자	사업 규모	참여 농가	주작목	자금집행상황		
					예산	집행	진도
		ha	명		천원		%

□ 세부사업계획 내역

구분	사업계획 및 내용	추진실적	진도 (%)	향후추진계획 (일정별)
합	계			
유기농업자재 생산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장 비	소 계			
친환경농업 교육. 체험 시설.장비	소 계			
기타(설계비 등)				
S/W	소 계			

□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구분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현재	
	농가수	면적(ha)	농가수	면적(ha)
유기 인증				
무농약인증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 현황

- 사업 유형 :
- 사업 개요
 - 사업신청자 :
 - 법인 설립연도 :
 -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 사업기간 : (년)
 - 사업구역 : ha
 - * 사업구역 면적은 실제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했거나, 전환하고자 하는 면적을 포함하고, 고령화 등 객관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이 어려운 농가의 면적은 포함하지 말 것
 - * 특히, 대표품목과 상관없는 인증품목을 사업구역에 포함 불가
 - 사업구역 내 품목별 인증면적

(단위 : ha)

품 목	유 기	무농약	계
계			

- 참여 농가수 : 명(인증농가수 : 명(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농가수 명))
- 사무실 소재지(전화) :
- 대 표 자 : (세). H.P :
 - 주 소 :
- 주요경력 :

2. 지구의 특징

가. 지리적·기후적 특징

- 지자체 전체적인 특징과 사업지구 내 특징을 구분하여 작성, 특히, 사업지구 내 특징을 상세히 작성

나. 지역 친환경농업 여건

- 지자체 전체적인 여건과 사업지구 내 여건을 구분하여 작성, 특히, 사업지구 내 여건을 상세히 작성
- * 주요 대표품목의 친환경농업 여건을 상세히 작성(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

다. 사업예정지 위치 : (상수원보호구역, 환경규제지역, 일반지역 내용 기재)

3.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공통)

나. 사업내용(공통)

- 작 목 :
- 농 법 : 사업지구 내에서 실천하고 있는 친환경농법을 상세히 작성하고, 토양개량과 농약·화학비료 감축을 위한 세부 계획 작성
- 시설·장비 활용계획 :
- 생산(유통)계획 등 :

다. 향후 10년간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면적 확대계획(공통)

- 사업지구 내 유기·무농약 인증면적 확대계획을 연도별, 품목별로 작성
- 사업주체의 구체적 역할
- * 확대계획은 근거에 기초한 면적을 작성

라. 친환경농산물 판매계획(공통)

- 사업주체의 농가와 계약재배, RPC 또는 APC와 연계한 공동출하 계획 등 지구내 생산 친환경농산물의 판매계획을 충실하게 작성

마. 가공상품 개발 및 판매계획(생산중심형, 6차산업형·협동조합형)

-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상품 개발 및 판매계획을 작성
- * 판매계획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업 계획 미승인

바. 교육·체험 운영 계획(6차산업형)

- 소비자, 도시민, 유치원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상세히 작성

사.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운영 계획(유통·소비중심형)

-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확보, 물류 방법, 운영주체 등 구체적 운영 방향 등

아. 공동생산·유통·가공 계획(협동조합형)

-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등 상세히 작성

4. 사업계획

가. 지구 내 시설·장비 운용계획

항 목	시설·장비	사업비	용도 및 필요성
1. 유기농업자재 생산시설·장비	○ ○ 소 계		* 별지 작성 가능
2.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	○ ○ 소 계		
3.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 시설·장비	○ ○ 소 계		
4.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장비	○ ○ 소 계		
5. 친환경농산물 판매시설	○ ○ 소 계		
6. 기타(설계비 등)	○ ○ 소 계		
7. S/W 사업비	○ ○ 소 계		
합계			

나.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 근거(규모, 단가 등을 명시)

* 지구 내 영농규모와 적정한 산출근거 작성

다. 자부담금(임차보증금) 및 운영자금 확보계획

라. 사업 추진일정(월·주간단위로 상세 계획)

마.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 역량강화 계획

바. 사업지원 시 기대효과

사. 사업구역 도면(지번별 면적, 지적도 등 농지구역 확인 자료)

5. 붙임자료

-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 ② 사업지구내 농가 영농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 ③ 사업참여 농가동의서 (사업신청자 작성)
- ④ 사업부지 확보 계획 (사업신청자 작성)
- ⑤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시·군, 시·도에서 작성)
- ⑥ 사업계획서 주요 검토사항(시·군, 시·도에서 작성)
- ⑦ 사업대상지구 평가표 (시·도에서 작성)
- ⑧ 사업참여농가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현황(시·군, 시·도에서 작성)
- ⑨ 지자체와 체결한 협약서(시·군에서 작성)

(붙임 ①)

시설보유현황 및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사업내용 (시설·장비명)	투 자 금 액 (백만원)					정부지원여부		용도
	계	국 고	용 자	지방비	자부담	사업명	사업년도	

(붙임 ②)

사업지구내 농가 영농현황

농가명(세) (H.P.☎)	지 번 (지번별로 작성)	경작 규모	친 환 경 인증현황	재배품목	판매방식	친환경의무 자조금납부 여부
홍길동(○○세) (010-111-1234)	○○리 ○○	ha	※없음,유기,무 농약으로 구 분 기재		※ 직 거 래 , 도매시장, 인터넷등	
계 (인증종류별계 및 총계)						

(붙임 ⑤)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개요

- 지 구 명 :
- 사업주체 :
- 소 재 지 :
- 사업구역 :
- 사업계획(요약) :

2. 검토의견

- * 시장·군수는 기술센터, 농관원, 농협 등 관련기관·단체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서 검토의뢰한 후 의견서를 제출받아 종합 검토의견서 작성
 - 농업기술센터 : 지역친환경농업여건(토양성분 등 포함), 참여농업인의 친환경농업 기술정도, 유기농업자재 생산 및 이용계획, 친환경농업실천정도 및 사업성, 관련시설·장비 보유상황 등
 - 농산물품질관리원 : 친환경인증 현황, 친환경농산물 생산여건,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능력 등
 - 농협 : 친환경농산물 유통·판매사업 실적 및 수행능력, 경영실적 및 재무구조 건전성 등
 -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 축산분뇨퇴비·액비화계획, 유기축산물(전환기유기축산물 포함)생산계획 등
-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유관기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검토의견서 작성(사업지구 조기 성과창출을 위한 지자체의 S/W 및 사업부지 인·허가 지원 계획 등을 포함)
- *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의 경우 사업성과가 우수한 사유를 개조식으로 명확히 작성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

직인

(붙임 ⑥)

사업계획서 주요 검토사항

연 번	검토 사항 < 대상 : 000지구 >	검토 결과 <small>(적/부선택)</small>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적합) 여부 ◦ 소비자단체(소비자협동조합법에 설립된 단체) 여부 <li style="padding-left: 20px;">*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포함 	예) 적정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지원 자격 요건 적정여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기본규정 제91조관련 [별표10] “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여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 사업규모(생산량 등)에 따라 신청한 시설·장비의 규모 및 사업량이 적정 한가 <li style="padding-left: 20px;">- 타 지원사업과 중복여부 포함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는 사업비 10%이내 여부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지역 해당 검토 여부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p>이행점검 조사 대상('08년 이후)에 있는 사업지구·단지 중에서 선정 후 3년간 사업성과 부진지구·단지의 관할 시·군에 대하여 3년간 지원 배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진지구 : 선정 후 3년간 사업구역 내 인증 재배면적이 선정연도말 기준 증가가 없는 지구·단지 ** 계속 사업일 경우 최종 년차를 선정연도로 함 </div>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에 지침 상 지원제외 항목 포함 여부 검토(부지매입비, 농기계 등)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주요 유의사항 검토 및 작성 여부 가. 시설, 장비가 지원조직의 면적, 농가수, 품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사업계획이 수립여부(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여부 등) 나.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시설·장비가 지원조직의 면적, 농가수, 품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지원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지도 다. 토양개량과 농약·화학비료 감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여부 라. 미생물 배양시설은 농촌진흥청이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한 시설을 우선 활용하여 친환경농업 관련 시설의 중복투자가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여부 	

(붙임 ⑦)

사업대상지구 평가표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	평가 근거
① 사업준비(25점)	㉑사업 추진의지(5점)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주체의 책임성 및 열의도 등 (5단계 평가)		
	㉒사업 참여농업인 역량(5점)	○참여 농업인의 친환경농업 교육 실적(산청전년도중) - 80%이상 이수 : 5점, 60~80%미만 : 4점, 40~60%미만 : 3점, 40%미만 : 0점		교육인원/ 참여인원 (/)
	㉓사업 조직의 역량(5점)	○사업조직의 친환경농업관련 활동실적 및 경영컨설팅 실적 등(5단계평가)		
	㉔사업주체의 역량강화 노력(10점)	○참여 농업인 교육, 설명회 등 향후계획의 적정성 등 (5단계평가) -특히, 사업완료 후 체계적인 농업인 역량강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및 적정성		
② 사업여건(20점)	㉕계획지구 내 관행농업 인의 호응도(10점)	○관행농업인의 친환경농업 실천협약(동의서) 실적 - 80%이상 참여 : 5점, 60~80%미만 참여 : 4점, 40~60%미만 참여 : 3점, 40%미만 참여 : 0점		협약관행농업 /관행농업인 (/)
	㉖사업구역 집단화(5점)	○사업구역(농지)의 집단화 정도(5단계평가)		
	㉗사업구역내 유기.무농약 인증면적 비율(5점)	○50%이상 : 5점, 40~50%미만 : 4점, 30~40%미만 : 3점, 30%미만 : 0점		인증면적 /사업구역 면적 (/)
③ 사업계획(55점)	㉘사업목표의 적정성(5점)	○사업목표의 적정성, 합리성 및 명확성(5단계평가) - 연차별 사업목표치 산출근거의 신빙성, 충실성		
	㉙사업계획의 적정성(10점)	○사업계획의 구체성, 충실성, 적정성 및 완성도 등 (5단계 평가)		
	㉚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10점)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의 구체성,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5단계 평가)		
	㉛마케팅 전략(10점)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계획의 적정성(5단계평가) -사업법인 명의로 대형유통업체, 농협, 학교급식 등에 납품, 판촉활동 등 구체적인 판매실적과 채널 확보 계획		
	㉜자부담 확보 계획(5점)	○재정확보 계획의 적정성 및 신빙성(5단계 평가)		
	㉝산지유통주체로 발전 가능성(5점)	○평가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업조직의 성과창출 가능성 등 (5단계평가)		
	㉞시설장비 관리계획(5점)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 운영관리계획의 구체성, 적정성 등(5단계평가)		
	㉟타 지구와 차별성(5점)	○벼외 율예, 과수, 특용작물 등 재배농가의 유기.무농약재배 전환계획 여부 및 실현가능성(5단계평가)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마케팅, 농업인 역량강화 방안 등의 차별화전략		
④ 가점 (+15점한도)	○푸드플랜 연계(5점)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지역 푸드플랜 계획 수립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 체결 여부		
	○쌀 생산 조정제 연계(5점)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논에 타작물 재배 여부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농가 인증비 지원(5점)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가에만 친환경 인증비 지원 여부		
⑤ 감 점(-20점한도)	○사업계획서 오류사실 발견	○건당 5점		
합 계				

* 5단계 평가 :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사업 계획서

I. 사업 개요

1. 단지 현황

- 사업단지·지구명 : ○○○○○(선정 연도 :)
- 사업주체 : ○○(대표자 : ○○○)
 - 참여법인, 참여단체 : ○○농협, ○○법인, ○○, ..
- 주소(사업주체 법인) :
- 참여 농가수 및 경지면적 : 호(ha)
- 단지내(지구) 주요작물별 재배면적 : 총 ha(벼 , 콩 , 고추 , 딸기 , ..)
 - 단지내 주요 축종별 두수 : 한우 두, 젓소 두, 돼지 두, 닭 수, ..
- 단지내(지구) 친환경농산물 인증 : 총 ha(유기 : 벼 , 콩 , 고추 , 딸기 , .., 무농약 : 벼 , 콩 , 고추 , 딸기 , ..)
- 단지내(지구) 친환경축산물 인증 : 총 두(유기 : 한우 , 젓소 , 돼지 , 닭 , .., 무항생제 : 한우 , 젓소 , 돼지 , 닭 ..)

2. 친환경농업 이행실적

구분	단지(지구)내 전체 참여농가, 경지 면적 변동 추이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친환경축산물 인증현황		
	농가수	경지면적	인증농가수			인증면적			인증축산 농가수	유기	무항생제
			유기	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계			
	호	ha	호	호	호	ha	ha	ha	호	두	두
사업추진 전년도									소 돼지 ·		
사업추진년도									”		
2년차(년)									”		
3년차(년)									”		
4년차(년)									”		
5년차(년)									”		
6년차(년)									”		
...									”		

3. 사업주체의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

(단위 : 톤, 백만원)

구분	취급실적						취급액					
	전체 생산량			사업주체 취급물량			전체 생산액			사업주체 취급액		
	계	유기	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사업추진 전년도												
사업추진년도	비 공 ...											
2년차(년)												
3년차(년)												
4년차(년)												
5년차(년)												
6년차(년)												
...												

* 주요 생산품목별 작성

4. 세부 사업내역

○ 기존 시설.장비

구분	시설.장비명	사업량	단가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장비	소 계						
...	소 계						

○ 추가 지원시설.장비

구분	시설.장비명	사업량	단가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	소 계						

II. 사업계획서

※ 아래 작성항목의 내용이 포함되게 작성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항목 추가, 작성내용 순서 변경, 작성항목의 제목(문구) 변경 등 가능

1.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기존 사업성과가 우수한 사항 포함 작성

2. 광역단지(지구)사업 추진현황

- 기존시설의 경영수지
- 광역단지(지구) 내 농업인 교육실적
- 단지(지구) 경영컨설팅 결과
- 농가 계약재배 및 마케팅실적 등

* 사업주체의 역할과 단지(지구)내 친환경농업 확산 기여도 등 기술

3. 사업 세부추진계획

- 추가 시설·장비별 운용계획(규모, 용도, 단가, 필요성 등)
 - 시설별 운영 및 수익창출 계획 포함
 - 지역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등 여건을 분석, 운용계획 수립
- 재원(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계획, 사업 운영비 확보계획 등
- 사업부지 확보 여부 및 인허가 등 제한여부
-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계획
- 향후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마케팅 전략

4. 기대효과

5. 붙임자료

-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 ② 사업지구내 농가 영농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 ③ 사업참여 농가동의서 (사업신청자 작성)
- ④ 사업부지 확보 계획 (사업신청자 작성)
- ⑤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시·군, 시·도에서 작성)
- ⑥ 사업계획서 주요 검토사항(시·군, 시·도에서 작성)
- ⑦ 사업참여농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현황(시·군, 시·도에서 작성)
- ⑧ 사업대상지구 평가표 (시·도에서 작성)

※ ①~⑦은 신규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 서식에 따라 작성

(붙임 ①)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사업 대상자 선정 평가표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	평가 근거
①사업여건(25점)	㉑친환경인증 면적 증가율(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농약이상 친환경인증면적 증가율(선정 연도 말 기준 최근 연도 말 증가율) - 10% 이상 : 10점, 8% 이상 : 8점, 6% 이상 : 6점, 4% 이상 : 4점, 2%이상 : 2점 * 계속사업일 경우 최종 연차를 선정 연도로 함 		최근 연도말 면적/ 선정 연도말 면적 (/)
	㉒친환경농산물 취급 비율(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의 무농약이상 친환경인증농산물 취급 비율 (최근 연도말 기준) - 80% 이상 : 10점, 70% 이상 : 8점, 60% 이상 : 6점, 50% 이상 : 4점, 40%이상 : 2점 		인증품 취급량/ 인증품 생산량 (/)
②사업계획(75점)	㉓사업계획의 적정성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추가시설 보완, 설치) 필요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충실성,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5단계 평가) 		
	㉔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계획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계획의 적정성 (5단계 평가) 		
	㉕재원 확보 계획(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확보(지방비 및 자부담) 계획의 적정성 및 신빙성, 실현가능성(5단계 평가) 		
	㉖산지유통주체로 발전 가능성(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업조직의 성과 창출 가능성, 산지유통주체로 발전할 가능성 등(5단계 평가) 		
	㉗추가시설 운용 계획(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시설과의 연계,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 운영관리계획의 구체성, 적정성 등(5단계 평가) 		
	㉘교육 계획(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5단계 평가) 		
	㉙마케팅 전략(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계획의 적정성 - 대형유통업체, 학교급식 등에 납품, 판촉활동 등 구체적인 판매실적과 채널확보 계획(5단계 평가) 		
	㉚친환경농산물 확대계획(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확대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실현가능성 (5단계 평가) 		
⑤ 감점(-20점한도)	○ 사업계획서 오류 사실 발견	○ 건당 5점		
합 계				

* 5단계 평가 :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목 적

- 벼 위주의 친환경농업에서 과수·채소 중심의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를 위한 친환경전문 과수·채소 생산단지·유통시설 지원
- 친환경 과채류 육묘장 구축으로 친환경 모종의 안정적인 공급 및 고품질 모종 공급을 통한 우수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2.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친환경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3.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량	총사업비	재 원 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4개소	2,000,000 (100%)	420,000 (21%)	980,000 (49%)	600,000 (30%)

※ 개소 당 사업비 : 500,000천원 한도(도비 105,000 시군비 245,000 자부담 150,000)

4. 사업추진

가.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추진 기간 : 2020. 1. ~ 12.

다. 사업대상자 : 공모선정

라. 사업내용

- (사업 ① : 전문단지) 친환경 과수·채소의 인증면적 확대 및 단지집단화를 위한 생산·유통관리 시설·장비 등 지원
 - 생산관리 시설·장비 : 생산시설(하우스), 공동 방제장비, 미생물배양시설, 관배수장비 등
 - 유통관리 시설·장비 : 저온저장시설, 집하장, 선별기, 포장기 등

※ 생산시설(온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 2016-180호)에 따름.
- (사업 ② : 육묘장) 친환경 과채류 전문육묘시설 구축에 필요한 육묘생산 시설·장비 지원

- 시설분야 : 생산시설(하우스), 병해충 차단시설, 시설분리, 발아실, 활착·접목실, 관수시설 등
- 장비분야 : 친환경 육묘전용 포장기, 자동육묘기, 환경조절 장치 등
- ※ 친환경 과채류 전문육묘시설은 육묘장 주변 영농현황 및 친환경육묘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를 종합하여 평가 후 지원내역 확정

○ 지원제외

- 기반조성 : 부지매입비, 임차료, 인허가 비용, 진입로 및 농로 확포장 등
- 농 기 계 : 농기계와 차량구입비. 단, 사업계획과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는 지원 가능
- 농 자 재 : 개별농가단위의 생산재 구입비(비료, 미생물제제, 종자 등 농업용 자재)
- 흥 보 비 : 생산물의 포장재, 포장디자인, 홍보·마케팅 비용
- 기타사항 : 인건비 등 단순 사업운영비, 컨설팅, 차량구입비, 농업인 교육비용 등

마. 신청자격

○ (사업 ① : 전문단지) 친환경농경지 1ha이상을 보유하고, 친환경 과수·채소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계획이 있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 (사업 ② : 육묘장) 채소분야 육묘업을 등록하고, 육묘생산실적이 3년 이상인 법인

- 채소분야 육묘생산실적 증빙은 생산 및 판매대장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시군에서 확인
- 친환경 또는 일반육묘의 생산실적이 있는 법인 포함

○ 사업대상자 선정 우대조건

- 사업신청 대표품목의 친환경인증 실적 및 확대계획이 우수한 농업인·생산자 단체
- 사업주체가 직접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거나, 계약재배, 계통판매 등을 통한 공동출하 등 판매실적 및 계획이 충실한 농업인·생산자 단체
- 친환경 과수·채소 생산을 위해 논에 타작물을 재배(쌀 생산 조정제)를 실천하는 경우
- 친환경생산단지의 집단화·집적화가 우수한 농업인·생산자 단체
- 사업 참여농가 전체가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인·생산자 단체
-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와 계약재배 및 출하약정을 맺거나 호남권 물류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생산자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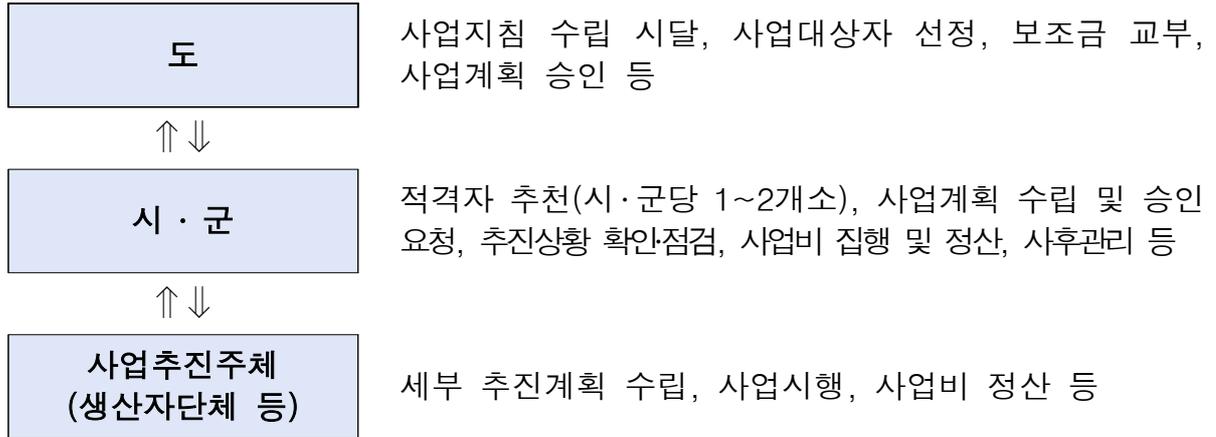
<대상자 추천 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 가능 작물의 범위 : 농업통계조사 규칙 별표 1. 작물의 분류 중 과수, 채소 및 이와 상응하는 작물전체
- 생산자단체의 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2019.2.8.)

-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 방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

바. 추진과정 및 체계

○ 사업추진 체계



- 사업희망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 제출(사업대상자→시군)
 -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자 지원요건 확인서 작성 제출(서식 1-8, 서식 2-6)
 - ** 사업 대상부지에 대한 관련법 검토의견서 제출(서식 1-9, 서식 2-7)
- 사업계획서 검토 후 적격자 도에 추천(시군→도)
-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 최종 결정(도)
 - ※ 사업적격자가 많지 않을 경우 전문가 평가를 도 자체 평가로 대체
-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 성과분석(시군)
 - 사업 착수 전 세부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도 승인을 득한 후 착공하고, 사업 승인 후 사업계획 변경필요시 그 사유를 검토하여 시·군 자체승인 또는 도에 변경승인 요청
 - 도 승인사항 : 사업예정지 변경, 보조사업자 변경, 총 사업비의 10% 이상 증감이 필요한 경우 등 중대한 변경사항
 - 시군 승인사항 : 도에서 승인한 사업내역 중 일부 사업 제외, 공사 완료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 집행잔액 등을 사업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등 경미한 변경사항

사.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 시장·군수는 민간보조사업자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 ② 조달청장에게 위탁, ③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을 하도록 한다.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

-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 이용
 - 단, 자체 설계서를 이용할 경우 공사착수 전에 시·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단, 부득이한 경우 일반면허 보유자 참여 허용)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저온저장고, 예냉시설의 경우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업체

아. 준공검사 및 등기 등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후 검사 실시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은 부기등기 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 * 시설·장비 등 자산취득성 사업 등의 사유화 방지 지도·점검 철저

자.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시·군)

1)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적정 배분
- 기준 규격 이상 시설·장비 구입 등은 이면계약 방지를 위해 시·군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투명성 확보
 - 시공·공급업체 선정, 계약 체결 및 사업자 자부담 포함 사업예산 집행(사업예산 절감 및 시설, 장비의 사유화 방지)
- 자부담 집행 및 정산자료 검증 강화
 - 자부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2에 따라 집행토록 조치
 - 사업 정산시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자필서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자료 검정 이행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규정 준수

2)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여 사후 지도관리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재산처분의 제한조치
 -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등기 의무화
- 시설·장비 등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및 수시 확인·점검(관리·운영실태, 등기부 열람 등)
-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세부사업별 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 투입된 사업의 건축물, 공작물 등 시설·장비는 보조지원 사업임을 알 수 있는 안내판 설치

5. 행정사항

- 분기별 사업추진현황 제출: 매 분기 말 다음 달 5일까지
 - ※ 서식 추후 별도 시달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2021. 1. 31. 까지

< 서식 1-1 >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사업계획서

□ 일반현황

- 신청자 : 00영농조합(대표 ☎)
- 위치 :
- 설립연도 :
- 조직원수 : 명(인증농가수 : 명)
- 품목 및 면적 :
 - 품목별, 인증단계별 면적 :
- 생산량 : 톤
- 연간 매출액 : 백만원
- 주 판매처 등 유통현황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등
- 사업계획
 - 사업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사업예정지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m ²)	지목	비고(소유자)

- 세부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단가 (천원)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집하장	000m ² /1동					
포장기기	0대					

- 운영관리계획
 - 세부사업 내역의 세부사업별 사용계획, 필요성 등 작성
- 공정별 추진일정

세부공정별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 추진계획

- 친환경인증면적 확대계획(향후 3년 이상)
 - 주요 품목위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및 인증단계 상향계획을 작성
- 친환경농업단지 운영계획(생산·유통·기술교육 등)
- 친환경농산물 판매 및 출하방법
- 장기적 도달 목표 및 비전
 - 예) 향후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

< 발전지표 예시> - 가능한 항목만 지표설정

발전 지표	연차별 성과			비 고
	2019	2020	2021	
1. 개인·법인(단체) 생산·매출액(백만원)				
2. 참여농가 소득증가(백만원)				
3. 일자리 창출(명)				
4. 수출(백만원)				

□ 기대효과

-
-

※ 관련서류 첨부

-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 ② 조직체 내 농가 영농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 ③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 (사업신청자 작성)
- ④ 부지사용승인서 (사업신청자 작성)
- ⑤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시·군에서 작성)
- ⑥ 사업대상자 평가표(시·군에서 작성)
- ⑦ 농업법인 신청사업자 지원 자격요건 점검확인서 (시·군에서 작성)
- ⑧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의견서 (시·군에서 작성)

< 서식 1-2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시설· 장비명)	투 자 금 액 (백만원)					소 유· 수혜자
			계	국 고	용 자	지방비	자부담	

< 서식 1-4 >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

○ 조 직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ha

○ 사업대표자 : 외 명

○ 주요시설·장비설치계획

○ 내 용

(사업계획서와 인증면적 확대를 위한 사업참여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 서식 1-5 >

부지사용 승인서

○ 지 번 :

○ 지 적 :

상기 토지 m^2 중 m^2 를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육묘장 조성
지원사업」의 ○○○ 시설·장비 부지사용을 승인합니다.

○ 주 소 :

○ 생년월일 :

○ 승낙자(토지소유자) : (인)

* 인감증명서 및 토지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년 월 일

○ ○ 시장·군 수 귀하

< 서식 1-6 >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개요

- 조직명 :
- 소재지 :
- 경지면적 :
- 대표농가 : (참여농가 : 호)
- 투자계획 :

2. 검토의견

* 사업자 영농현황 및 본 사업을 통해 사업자에게 기대되는 파급효과 등을 작성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사업대상자 평가표

□ 생산자단체명 :

평가요소	평가항목	등 급 심 사 기 준	점수
1. 지역농업 여건 및 사업참여 상황 등 (25)	1-1. 사업장 부지확보 여부(10)	○ 사업신청자(법인은 법인 명의) 소유 부지확보 : 10 ○ 부지사용 승인 : 5 ○ 부지 미확보 : 0	
	1-2. 농경지 면적(5)	○ 5ha이상 : 5, 3ha이상 : 3, 1ha이상 : 1	
	1-3. 친환경인증비율 (5)	○ 50% 이상 : 5, 30%이상 : 3, 10%이상 : 1 * 참여 농가의 경작농지에 대한 친환경 인증 면적비율(증빙 자료 첨부)	
	1-4. 사업참여 농경지 집단화 정도(5)	○ 70%이상 집단화 : 5 ○ 50%이상 집단화 : 3 ○ 30%미만 : 1	
2.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30)	2-1. 사업목표의 명확성 (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농업 경영규모 등 대비 사업목표가 명확한가?(관련 자료 첨부)	
	2-2. 사업계획 적정성 (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사업 적정성	
	2-3. 자부담 확보계획(10)	○ 확보 : 10, 확보계획 수립 : 5, 미수립 : 0 *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 잔액증명서 확인 등	
	2-4. 시설장비 투자 및 운영관리 적정성(5)	○ 배점 : 5~1 (우수 5~미흡 1) * 시설·장비 확보 및 활용 방안 계획은 적정한가?	
	2-5. 인증확대계획 (5)	○ 배점 : 5~1 (우수 5~미흡 1)	
3. 사업수행 능력의 적정성 (25)	3-1. 조직과 인력구성의 적정성(5)	○ 배점 : 5~1점 (적정 5~미흡 1) * 참여재(농가)간 생산유통가공 연계가 가능하도록 역할분담 등이 잘 갖춰져 있는가?	
	3-2. 참여자(농업인) 교육실적(10)	○ 년 5회 이상 : 10, 년 3회 이상 : 5, 년 2회 이하 : 1 * 공모일로 부터 1년간 실적 인정	
	3-3. 추진전략의 적정성(5)	○ 배점 : 1~5점 * 규모화, 기제화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가?	
	3-4. 추진의지 정도(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대표자의 친환경농업 관련 활동 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4. 생산·유통 계획의 적정성 (20)	4-1. 친환경 농산물 생산 계획 적정성(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인증면적 확대 등) 구체적이며 적정한가?	
	4-2. 친환경농산물 판매 계획(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법인(브랜드) 명칭으로 유통업체와 직거래, 판촉활동 등 구체적인 판매실적 및 계획수립 여부?	
	4-3. 출하형태(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공동 마케팅을 위한 자체규약 유무 및 공동출하공동생산 실적 또는 계획 수립여부?(증빙 자료 첨부)	
	4-4. 성공 가능성(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차별화된 전략 및 으로 성공(발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5. 가점 (10)		○ 건당 3점(총 10점 한도) * 논 타작물,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호남권물류센터 연계 등	
합 계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검토자(담당 팀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식 1-8 >

농업법인 신청 사업자 지원요건 점검 확인서

□ 신청시군 :

□ 신청자 :

항 목	내 용	예	아니요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여부 (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 5명 이상 농업인 여부		
사업부지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		
	법인명의 소유권 등기 여부		
	사업관련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지목 : 00)		
사업계획서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지 여부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지원제한 기준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신청철회 또는 포기한 적이 있는지 여부		
	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양도.교환.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 법인등기부, 통장사본, 재무제표, 토지등기부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위와 같이 점검한 결과 지원요건에 충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검토자(담당 팀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식 1-9 >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의견서

- 적 요 :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
- 목 적 : 사업계획서 검토 및 가능여부 판단
- 협의요청부서(기관) :
- 사업시행자 :
- 신청내역

(단위 : m²)

위 치	지 목	지 적	전용면적	전용목적	용도지역	비 고

- 관련법규 검토(협의)

대상법규	검토(협의)의견	검토결과 (가·부)	검토자		비 고
			직	성명	
건축법					
농지법					
산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관련법					
도로법					
기타 관련법					

붙임 : 관련부서 사전 협의 회신 공문

친환경육묘장 사업계획서

□ 일반현황

- 단 체 명 : 00영농조합(대표 ☎)
- 위 치 :
- 면 적 :
- 설립연도 :
- 종사인원 : 명(정규직 : 명, 기간제 : 명) ※ 신청일 기준
- 육묘관련자격 보유현황 : 개
 - 내 역 :
- 품목 및 면적 :
 - 주요 생산품목 :
- 생 산 량 : 주
 - 일 반 :
 - 친 환 경 :
- 년간 매출액 : 백만원
- 주요 시설·장비 :
 - 육묘장 형태 : 비닐온실, 유리온실, P.C온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등
- 사업계획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사업예정지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m ²)	지목	비 고(소유자)

○ 세부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단가 (천원)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육묘생산시설	000m ² /1동					
포장기기	0대					

○ 운영관리계획

- 세부사업별 사용계획, 필요성 등 작성

○ 공정별 추진일정

세부공정별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 추진계획

○ 친환경육묘 생산계획

- 종자확보, 육묘방법, 친환경농자재 사용계획, 일반육묘와 구분생산 방법 등
- 육묘로 인한 민원발생 시 조치계획, 농가피해 최소화 대책 등

○ 친환경육묘 홍보·판매계획

- 주요 생산 작목별 친환경육묘 판매 예상가격 등

○ 장기적 도달 목표 및 비전

예) 향후 일자리 및 부가가치를 창출 등

<발전지표 예시> - 친환경육묘와 관련한 사항으로 지표작성

발전 지표	연차별 성과			비 고
	2018	2019	2020	
1. 법인(단체) 생산량(주)				
2. 참여농가 소득증가(백만원)				
3. 매출액(백만원)				

□ 기대효과

-
-

※ 관련서류 첨부

-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 ② 최근 3년간 과채류 육묘 생산실적 현황(사업신청자 작성)
- ③ 부지사용승인서 (사업신청자 작성)
- ④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시·군에서 작성)
- ⑤ 사업대상자 평가표(시·군에서 작성)
- ⑥ 농업법인 신청사업자 지원자격요건 점검확인서(시·군에서 작성)

< 서식 2-2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시설· 장비명)	투 자 금 액 (백만원)					소 유· 수혜자
			계	국 고	용 자	지방비	자부담	

< 서식 2-4 >

부지사용 승인서

지 번 :

지 적 :

상기 토지 m² 중 m²를 「친환경 과수·채소류 전문단지 조성(전문
육묘)사업」의 ○○○ 시설·장비 부지사용을 승인합니다.

주 소 :

주민번호 :

승낙자(토지소유자) : (인) * 인감증명서 첨부

년 월 일

○ ○ 시장·군수 귀하

< 서식 2-5 >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개요

- 조 직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 법인명칭 :
- 투자계획 :

2. 검토의견

* 사업자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을 통해 사업자에게 기대되는 파급효과 등을 작성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 서식 2-6 >

농업법인 신청 사업자 지원요건 점검 확인서

□ 신청시군 :

□ 신청자 :

항 목	내 용	예	아니요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여부 (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 5명 이상 농업인 여부		
사업부지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		
	법인명의 소유권 등기 여부		
	사업관련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지목 : 00)		
사업계획서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지 여부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지원제한 기준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신청철회 또는 포기한 적이 있는지 여부		
	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양도.교환.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 법인등기부, 통장사본, 재무제표, 토지등기부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위와 같이 점검한 결과 지원요건에 충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검토자(담당 팀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식 2-7 >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의견서

- 적 요 : 친환경 육묘장 조성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
- 목 적 : 사업계획서 검토 및 가능여부 판단
- 협의요청부서(기관) :
- 사업시행자 :
- 신청내역

(단위 : m²)

위 치	지 목	지 적	전용면적	전용목적	용도지역	비 고

관련법규 검토(협의)

대상법규	검토(협의)의견	검토결과 (가·부)	검토자		비 고
			직	성명	
건축법					
농지법					
산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관련법					
도로법					
기타 관련법					

붙임 : 관련부서 사전 협의 회신 공문

< 서식 2-8 >

친환경육묘장 사업대상자 평가표

□ 생산자단체명 :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 준	배점	평점	비 고
신청 기준	육묘업 등록	종자산업법에 따른 육묘업 등록여부	여/부		육묘업 등록증
	육묘장 운영실적	최근 1년간 과채류분야 육묘공급업체	여/부		운영실적 증빙서
	친환경육묘	친환경육묘를 위한 시설차폐 가능 여부	여/부		시군 현장실사
시설 · 장비 · 인력	종사인원 (신청일기준)	① 21인 이상	10		정규직 및 기간제포함
		② 11인 ~ 20인	7		
		③ 5인 ~ 10인	5		
	육묘관련자격 보유현황	① 2개이상	10		종자관리사 및 동등자격
		② 1개	5		
	친환경전용 가능 육묘동 시설면적	① 2,000㎡이상(10점) (200㎡ 당 1점씩, 최대 2,000㎡)	10		건축물 대장 확인
친환경전용 접목활착실여부	① 별도시설 보유	10		시설현황 점검	
	② 별도시설 미보유	0			
육묘장 소유형태	① 법인소유	10		증빙자료 제출	
	② 임대토지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시)	5			
친 환 경 육 묘 운 영 계 획	친환경육묘 세부추진계획	- 종자확보 방법, 시설차폐 계획, 생산관리 방법 등(미흡 0 ~ 우수 10)	10		신청서 평 가
	시설구분 방법	① 별도의 친환경전용 육묘동 운영	10		
		② 기존 일반육묘동내 시설차폐 운영	5		
	작업동선 및 장비의 오염 안전성	① 작업동선 및 장비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안전성 평가 (평가방법 : 우려 0점 ~ 적정 10점)	10		
	육묘 생산가능 품목 수	① 육묘장 생산실적 점검 (불가품목 : 10개이상 0점 ~ 0개 10점)	10		도 친환경 채소 상위 20품목
친환경육묘분야 전문성	- 친환경육묘 추진실적 및 육묘로 인한 농가 인증취소 판정시 대책(미흡 0 ~ 우수 10)	10			
점수 합계			100		

Ⅲ. 시군별 사업내역

1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단위 : 천원)

시 군	사 업 량 (ha)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계	6,500	650,000	195,000	455,000	
목포시	-	-	-	-	
여수시	82	4,710	1,413	3,297	
순천시	481	21,140	6,342	14,798	
나주시	120	35,500	10,650	24,850	
광양시	533	26,000	7,800	18,200	
담양군	138	19,180	5,754	13,426	
곡성군	358	16,000	4,800	11,200	
구례군	144	1,500	450	1,050	
고흥군	83	16,520	4,956	11,564	
보성군	224	93,020	27,906	65,114	
화순군	95	2,300	690	1,610	
장흥군	516	29,000	8,700	20,300	
강진군	83	15,000	4,500	10,500	
해남군	483	54,000	16,200	37,800	
영암군	858	93,800	28,140	65,660	
무안군	199	21,400	6,420	14,980	
함평군	456	68,900	20,670	48,230	
영광군	275	15,920	4,776	11,144	
장성군	90	4,480	1,344	3,136	
완도군	22	3,210	963	2,247	
진도군	255	28,420	8,526	19,894	
신안군	1,005	80,000	24,000	56,000	

2 친환경농산물 전사·홍보 지원

(단위 : 천원)

시 군	사 업 량 (회/부스)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계	28	84,000	42,000	42,000	
목포시	-				
여수시	1	3,000	1,500	1,500	
순천시	1	3,000	1,500	1,500	
나주시	2	6,000	3,000	3,000	
광양시	1	3,000	1,500	1,500	
담양군	2	6,000	3,000	3,000	
곡성군	2	6,000	3,000	3,000	
구례군	1	3,000	1,500	1,500	
고흥군	1	3,000	1,500	1,500	
보성군	2	6,000	3,000	3,000	
화순군	2	6,000	3,000	3,000	
장흥군	1	3,000	1,500	1,500	
강진군	2	6,000	3,000	3,000	
해남군	2	6,000	3,000	3,000	
영암군	1	3,000	1,500	1,500	
무안군	1	3,000	1,500	1,500	
함평군	-				
영광군	2	6,000	3,000	3,000	
장성군	1	3,000	1,500	1,500	
완도군	1	3,000	1,500	1,500	
진도군	1	3,000	1,500	1,500	
신안군	1	3,000	1,500	1,500	

3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운 조성

(단위 : 천원)

시 군	사 업 량 (식)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계	1	3,802,000	1,901,000	228,120	532,280	1,140,6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1	3,802,000	1,901,000	228,120	532,280	1,140,600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4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단위 : 천원)

시 군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1	150,000	75,000	22,500	52,500	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1	150,000	75,000	22,500	52,500	0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5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단위 : 천원)

시 군	사업량 (명)	사 업 비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4,127	1,981,085	792,433	-	792,433	396,219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1,928	925,508	370,203	-	370,203	185,102	
나주시	995	477,803	191,121	-	191,121	95,561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597	286,468	114,587		114,587	57,294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385	184,888	73,955	-	73,955	36,978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222	106,418	42,567	-	42,567	21,284	

6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단위 : 천원)

시 군	사 업 량 (건)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계	18,000	11,700,000		2,340,000	8,190,000	1,170,000
목포시	12	7,800		1,560	5,460	780
여수시	386	250,900		50,180	175,630	25,090
순천시	863	560,950		112,190	392,665	56,095
나주시	509	330,850		66,170	231,595	33,085
광양시	1,307	849,550		169,910	594,685	84,955
담양군	1,005	653,250		130,650	457,275	65,325
곡성군	863	560,950		112,190	392,665	56,095
구례군	548	356,200		71,240	249,340	35,620
고흥군	950	617,500		123,500	432,250	61,750
보성군	780	507,000		101,400	354,900	50,700
화순군	1,111	722,150		144,430	505,505	72,215
장흥군	1,081	702,650		140,530	491,855	70,265
강진군	571	371,150		74,230	259,805	37,115
해남군	1,422	924,300		184,860	647,010	92,430
영암군	1,249	811,850		162,370	568,295	81,185
무안군	754	490,100		98,020	343,070	49,010
함평군	884	574,600		114,920	402,220	57,460
영광군	783	508,950		101,790	356,265	50,895
장성군	294	191,100		38,220	133,770	19,110
완도군	373	242,450		48,490	169,715	24,245
진도군	1,000	650,000		130,000	455,000	65,000
신안군	1,255	815,750		163,150	571,025	81,575

7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단위 : 천원)

시 군	사 업 량 (ha)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계	18,000	4,285,000		857,000	3,428,000	
목포시	4	952		190	762	
여수시	237	56,418		11,284	45,134	
순천시	976	232,337		46,467	185,870	
나주시	345	82,127		16,425	65,702	
광양시	1,308	426,369		85,274	341,095	
담양군	399	94,982		18,996	75,986	
곡성군	939	223,528		44,706	178,822	
구례군	629	226,822		45,364	181,458	
고흥군	734	144,729		28,946	115,783	
보성군	583	140,783		28,157	112,626	
화순군	602	187,306		37,461	149,845	
장흥군	1,418	337,555		67,511	270,044	
강진군	507	120,691		24,138	96,553	
해남군	1,658	364,690		72,938	291,752	
영암군	1,544	299,549		59,910	239,639	
무안군	651	154,980		30,996	123,984	
함평군	1,111	264,474		52,895	211,579	
영광군	990	235,670		47,134	188,536	
장성군	243	57,846		11,569	46,277	
완도군	253	80,227		16,045	64,182	
진도군	1,009	240,192		48,038	192,154	
신안군	1,860	312,773		62,555	250,218	

8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

(단위 : 천원)

시 군	사 업 량 (건)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계	2,000	560,000		168,000	392,000	
목포시						
여수시	10	2,800		840	1,960	
순천시	87	24,360		7,308	17,052	
나주시	148	41,440		12,432	29,008	
광양시	95	26,600		7,980	18,620	
담양군	56	15,680		4,704	10,976	
곡성군	147	41,160		12,348	28,812	
구례군	48	13,440		4,032	9,408	
고흥군	80	22,400		6,720	15,680	
보성군	65	18,200		5,460	12,740	
화순군	93	26,040		7,812	18,228	
장흥군	34	9,520		2,856	6,664	
강진군	50	14,000		4,200	9,800	
해남군	291	81,480		24,444	57,036	
영암군	143	40,040		12,012	28,028	
무안군	92	25,760		7,728	18,032	
함평군	74	20,720		6,216	14,504	
영광군	161	45,080		13,524	31,556	
장성군	35	9,800		2,940	6,860	
완도군	28	7,840		2,352	5,488	
진도군	133	37,240		11,172	26,068	
신안군	130	36,400		10,920	25,480	

9]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

(단위 : 천원)

시 군	사 업 량 (ha)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계	65,000	7,800,000		780,000	6,240,000	780,000
목포시						
여수시	759	91,080		9,108	72,864	9,108
순천시	1,498	179,760		17,976	143,808	17,976
나주시	3,620	434,400		43,440	347,520	43,440
광양시	371	44,520		4,452	35,616	4,452
담양군	1,738	208,560		20,856	166,848	20,856
곡성군	1,705	204,600		20,460	163,680	20,460
구례군	313	37,560		3,756	30,048	3,756
고흥군	3,259	391,080		39,108	312,864	39,108
보성군	4,363	523,560		52,356	418,848	52,356
화순군	2,661	319,320		31,932	255,456	31,932
장흥군	4,185	502,200		50,220	401,760	50,220
강진군	4,167	500,040		50,004	400,032	50,004
해남군	5,476	657,120		65,712	525,696	65,712
영암군	7,274	872,880		87,288	698,304	87,288
무안군	1,432	171,840		17,184	137,472	17,184
함평군	4,099	491,880		49,188	393,504	49,188
영광군	6,982	837,840		83,784	670,272	83,784
장성군	2,350	282,000		28,200	225,600	28,200
완도군	1,103	132,360		13,236	105,888	13,236
진도군	2,700	324,000		32,400	259,200	32,400
신안군	4,945	593,400		59,340	474,720	59,340

10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단위 : 천원)

시 군	사 업 량 (ha)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계	22,150	14,800,905	14,800,905			
목포시	5	4,972	4,972			
여수시	272	178,406	178,406			
순천시	1,420	1,479,469	1,479,469			
나주시	450	305,385	305,385			
광양시	1,413	1,072,927	1,072,927			
담양군	490	318,902	318,902			
곡성군	994	647,613	647,613			
구례군	464	367,936	367,936			
고흥군	1,124	827,814	827,814			
보성군	719	556,171	556,171			
화순군	488	322,412	322,412			
장흥군	1,859	1,200,787	1,200,787			
강진군	625	396,517	396,517			
해남군	1,765	1,014,840	1,014,840			
영암군	2,501	1,499,280	1,499,280			
무안군	820	547,448	547,448			
함평군	1,208	760,410	760,410			
영광군	1,207	718,850	718,850			
장성군	346	226,172	226,172			
완도군	237	156,088	156,088			
진도군	1,258	940,943	940,943			
신안군	2,481	1,257,563	1,257,563			

11 유기질비료 지원

(단위 : 천원)

시 군	사 업 량 (톤)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516,000	27,648,000	27,648,000			
목포시	1,429	76,463	76,463			
여수시	14,005	754,679	754,679			
순천시	42,558	2,174,490	2,174,490			
나주시	42,198	2,139,858	2,139,858			
광양시	20,613	1,108,245	1,108,245			
담양군	14,315	755,620	755,620			
곡성군	18,281	961,100	961,100			
구례군	10,078	543,539	543,539			
고흥군	50,688	2,504,786	2,504,786			
보성군	33,115	1,676,562	1,676,562			
화순군	21,352	1,056,355	1,056,355			
장흥군	31,087	1,498,542	1,498,542			
강진군	11,131	664,241	664,241			
해남군	38,903	2,336,579	2,336,579			
영암군	23,205	1,343,514	1,343,514			
무안군	36,813	1,910,962	1,910,962			
함평군	19,230	1,033,984	1,033,984			
영광군	21,676	1,085,860	1,085,860			
장성군	18,700	958,525	958,525			
완도군	9,842	484,256	484,256			
진도군	17,971	1,020,595	1,020,595			
신안군	28,807	1,559,243	1,559,243			

12 토양개량제 지원

(단위 : 천원)

시 군	사 업 량 (톤)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105,443	18,175,896	11,606,202	3,284,847	3,284,847	
목포시	53	11,900	7,599	2,151	2,151	
여수시	1,145	209,190	133,578	37,806	37,806	
순천시	1,869	368,463	235,282	66,591	66,591	
나주시	8,039	1,536,270	980,984	277,643	277,643	
광양시	955	180,998	115,576	32,711	32,711	
담양군	3,414	649,903	414,995	117,454	117,454	
곡성군	2,458	473,010	302,040	85,485	85,485	
구례군	1,344	242,404	154,787	43,808	43,808	
고흥군	6,895	1,263,765	806,976	228,394	228,394	
보성군	4,283	821,098	524,311	148,393	148,393	
화순군	2,707	507,813	324,263	91,775	91,775	
장흥군	4,521	845,755	540,056	152,850	152,850	
강진군	3,887	728,705	465,314	131,696	131,696	
해남군	14,613	2,726,166	1,740,791	492,688	492,688	
영암군	10,100	1,886,867	1,204,857	341,005	341,005	
무안군	5,523	1,050,371	670,713	189,829	189,829	
함평군	2,862	554,804	354,270	100,267	100,267	
영광군	6,195	1,195,073	763,113	215,980	215,980	
장성군	3,727	716,974	457,823	129,575	129,575	
완도군	1,207	235,395	150,311	42,542	42,542	
진도군	13,905	907,969	579,783	164,093	164,093	
신안군	5,742	1,063,002	678,779	192,112	192,112	

13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단위 : 천원)

시 군	사 업 량 (개소)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계	2	553,000	110,600		110,600	331,8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1	500,000	100,000		100,000	300,000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1	53,000	10,600		10,600	31,800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4 친환경 농자재(유기농업자재) 지원

(단위 : 천원)

시 군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계	8,508	5,571,701	1,114,338	501,454	1,170,055	2,785,851
목포시	-	-	-	-	-	-
여수시	180	117,872	23,574	10,609	24,753	58,936
순천시	229	81,708	16,342	7,354	17,159	40,854
나주시	140	102,157	20,431	9,194	21,453	51,078
광양시	237	132,665	26,533	11,940	27,860	66,333
담양군	111	76,572	15,314	6,891	16,080	38,286
곡성군	311	275,507	55,101	24,796	57,856	137,753
구례군	119	61,764	12,353	5,559	12,970	30,882
고흥군	423	303,803	60,761	27,342	63,799	151,902
보성군	773	557,102	111,420	50,139	116,991	278,551
화순군	1,377	875,877	175,175	78,829	183,934	437,939
장흥군	478	301,008	60,202	27,091	63,212	150,504
강진군	166	84,910	16,982	7,642	17,831	42,455
해남군	685	516,392	103,278	46,475	108,442	258,196
영암군	935	609,959	121,992	54,896	128,091	304,980
무안군	233	176,125	35,225	15,851	36,986	88,063
함평군	135	61,438	12,288	5,529	12,902	30,719
영광군	872	647,340	129,468	58,261	135,941	323,670
장성군	687	295,662	59,132	26,610	62,089	147,831
완도군	47	10,927	2,185	983	2,295	5,463
진도군	336	273,406	54,681	24,607	57,415	136,703
신안군	34	9,507	1,901	856	1,996	4,753

15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단위 : 천원)

시 군	사 업 량 (ha)	사 업 비				
		계 (100%)	국 비 (0%)	도 비 (20%)	시군비 (80%)	기 타 (0%)
계	45,700	35,000,000	0	7,000,000	28,000,000	0
목포시	14	11,800		2,360	9,440	
여수시	549	440,500		88,100	352,400	
순천시	1,893	1,789,900		357,980	1,431,920	
나주시	852	663,400		132,680	530,720	
광양시	2,401	2,277,800		455,560	1,822,240	
담양군	1,045	828,000		165,600	662,400	
곡성군	1,674	1,468,400		293,680	1,174,720	
구례군	1,085	805,600		161,120	644,480	
고흥군	3,385	1,914,900		382,980	1,531,920	
보성군	1,394	1,111,500		222,300	889,200	
화순군	1,575	1,009,300		201,860	807,440	
장흥군	3,133	2,468,700		493,740	1,974,960	
강진군	1,831	1,077,800		215,560	862,240	
해남군	5,240	3,623,300		724,660	2,898,640	
영암군	3,534	3,285,600		657,120	2,628,480	
무안군	2,432	1,710,600		342,120	1,368,480	
함평군	2,013	1,824,500		364,900	1,459,600	
영광군	2,396	1,684,500		336,900	1,347,600	
장성군	592	474,700		94,940	379,760	
완도군	915	519,900		103,980	415,920	
진도군	3,598	2,252,000		450,400	1,801,600	
신안군	4,149	3,757,300		751,460	3,005,840	

16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단위 : 천원)

시 군	사 업 량 (개소)	사 업 비				
		계 (100%)	국 비 (0%)	도 비 (45%)	시군비 (15%)	기 타 (40%)
계	2	1,000,000	0	450,000	150,000	40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1	500,000		225,000	75,000	200,000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1	500,000		225,000	75,000	200,000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7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

(단위 : 천원)

시 군	사 업 량 (개소)	사 업 비				
		계 (100%)	국 비 (0%)	도 비 (45%)	시군비 (45%)	기 타 (10%)
계	2	1,000,000	0	450,000	450,000	10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1	500,000		225,000	225,000	50,000
무안군						
함평군	1	500,000		225,000	225,000	50,000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8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사업

(단위 : 천원)

시 군	사 업 량 (㎡)	사 업 비				
		계 (100%)	국 비 (0%)	도 비 (20%)	시군비 (50%)	기 타 (30%)
계	25,400	560,000	0	112,000	280,000	168,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2,970	65,480		13,096	32,740	19,644
광양시						
담양군	1,320	29,102		5,820	14,551	8,731
곡성군	1,980	43,654		8,731	21,827	13,096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1,980	43,654		8,731	21,827	13,096
화순군	4,280	94,362		18,873	47,180	28,309
장흥군	1,650	36,378		7,276	18,189	10,913
강진군	660	14,551		2,910	7,276	4,365
해남군	2,310	50,930		10,186	25,465	15,279
영암군	1,980	43,654		8,731	21,827	13,096
무안군						
함평군	2,310	50,930		10,186	25,465	15,279
영광군	660	14,551		2,910	7,276	4,365
장성군	1,320	29,102		5,820	14,551	8,731
완도군	990	21,826		4,365	10,913	6,548
진도군						
신안군	990	21,826		4,365	10,913	6,548

19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단위 : 천원)

시 군	사 업 량 (개소)	사 업 비				
		계 (100%)	국 비 (30%)	도 비 (25%)	시군비 (25%)	기 타 (20%)
계	6	4,699,000	1,409,000	1,174,750	1,174,750	940,5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1	687,000	206,000	171,750	171,750	137,500
구례군						
고흥군	1	1,144,000	343,000	286,000	286,000	229,000
보성군						
화순군	1	674,000	202,000	168,500	168,500	135,000
장흥군						
강진군	1	820,000	246,000	205,000	205,000	164,000
해남군						
영암군	1	674,000	202,000	168,500	168,500	135,000
무안군						
함평군	1	700,000	210,000	175,000	175,000	140,000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20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단위 : 천원)

시 군	사 업 량 (개소)	사 업 비				
		계 (100%)	국 비 (0%)	도 비 (21%)	시군비 (49%)	기 타 (30%)
계	6	2,000,000	0	420,000	980,000	600,000
道유보	1	361,000		75,810	176,890	108,3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1	199,000		41,790	97,510	59,700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1	110,000		23,100	53,900	33,000
해남군	1	450,000		94,500	220,500	135,000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2	880,000		184,800	431,200	264,000
신안군						